

발간등록번호 : 11-1543000-000754-10

# 2019년도 가축개량지원 사업 시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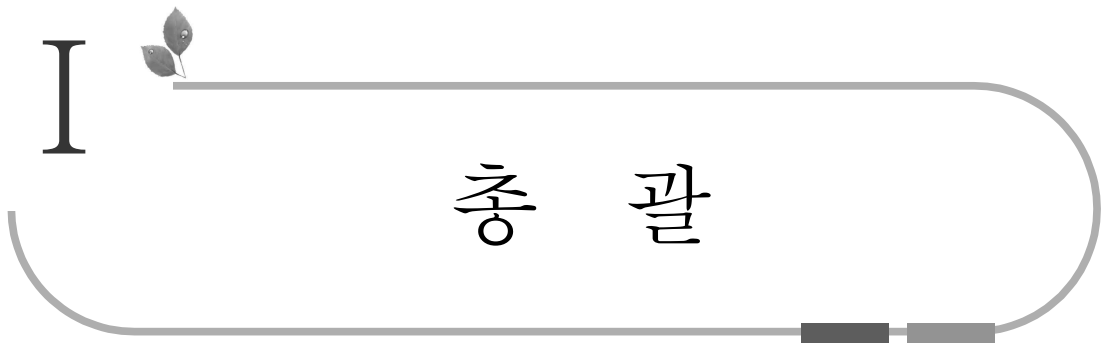
2019. 1.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경 영 과

# 목 차

<b>I . 총괄</b> .....	<b>1</b>
1. 사업주관기관 .....	2
2. 근거법령 .....	3
3. 성과지표 및 기타 .....	4
<b>II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b> .....	<b>7</b>
<b>&lt;한우개량&gt;</b>	
1. 한우(씨수소)개량사업 지원 .....	9
2. 한우암소검정사업 .....	41
3. 한우육종농가사업 .....	114
4. 한우 고능력 수정란 생산·활용 .....	140
5.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 .....	157
<b>&lt;젖소개량&gt;</b>	
6. 젖소(씨수소)개량사업 지원 .....	175
7.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188
8. 젖소육종농가사업 .....	207
<b>&lt;종돈개량&gt;</b>	
9. 종돈농장검정사업 .....	222
10.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232
<b>&lt;기타가축개량&gt;</b>	
11. 흑염소 개량지원사업 .....	260
<b>&lt;공통&gt;</b>	
12. 종축등록사업(한우선형심사) .....	275
13. 가축개량기술교육 .....	281
14. 한국홀스타인품평회 .....	289
15. 한국형젖소 이상모델 구축사업 .....	292



# I. 총괄

## 1. 사업주관기관

사업명	사업주관기관		
	기관명(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1. 한우(씨수소) 개량 사업 지원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이성수
2. 한우암소검정사업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이성수
3. 한우육종농가사업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이성수
4. 한우 수정란 생산·공급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90	부장 임연수
5.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축산지원부)	02-2080-6553	단장 박철진
6. 젖소(씨수소) 개량 사업 지원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젖소개량사업소)	031-929-1004	부장 이정훈
7.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젖소개량사업소)	031-929-1004	부장 이정훈
8. 젖소육종농가사업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젖소개량사업소)	031-929-1004	부장 이정훈
9. 종돈농장검정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02-588-9301	부장 김성수
10.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10	과장 김시동
11. 흑염소개량지원	경기도축산진흥센터	031-8008-6339	팀장 전영표
12. 종축등록사업지원 (한우선형심사)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유우개량부)	02-588-9301	부장 김병숙
13. 가축개량기술교육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가축개량원)	041-661-4660	부장 차의수
14. 한국홀스타인품평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	02-588-9301	부장 윤현상
15. 젖소이상모델구축 사업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	02-588-9301	부장 윤현상

## 2. 근거법령(축산법)

###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인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가축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 (기금의 용도) ①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 3.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19			
젖소 산유량 (kg/두/년)	9,103	9,142	9,298	9,269	9,208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결과 자료를 토대로 분석, 기준 산유량을 추정	검정참여 농가의 검정우 1산차 연간 두당 산유량 측정	농협(젖소개량사업소) 검정자료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67.9	69.3	72.0	72.7	72.8	- 한우암소검정사업 및 한우능력검정사업을 토대로 기준 년도 근내지방도 및 1등급 이상 출현율을 근거로 산정	1등급이상 한우 두수 / 한우 등급판정 두수 × 100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통계자료 활용
돼지 생존산자수 (두)	11.6	11.8	12.2	12.7	12.6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의한 농장검정 참여 종돈장의 검정성적을 기준으로 기준 년도 산자수로 산정	농장검정 참여 종돈장 검정성적 기준	한국축육개량협회 검정자료

### 4. 기타

#### □ 자금배정·집행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 보조금 지원시 가격적절성 비교 의무

○ 보조사업자가 거래처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보조금 최종 수령자(농가 등)가 직접 거래한 내용을 근거로 최종수령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최종 수령자가 거래처와 거래한 재화·

용역의 가격이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가격적절성 유무 판단은 조달청 및 한국물가정보 홈페이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보조금 지출증빙서류 작성시 첨부하여야 한다.
-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사유를 조사·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적절성 유무 판단을 위하여 매년 말 지출증빙 서류 및 사유서에 대한 별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지침해석

- 사업지침 해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3)

## II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II.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주관	'18년도		'19년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b>I. 한우 개량</b>			<b>39,707</b>		<b>39,282</b>	
1. 한우(씨수소) 개량 사업 지원	농 협	1개	22,272	1개	25,280	
	지자체	4개소	200	4개소	200	암소축군
	지자체	3개소	90	3개소	90	희소한우
2. 한우암소검정사업	농 협	8.5천호 (60개소)	3,124	8.3천호 (60개소)	3,124	관리두수 200천두
	농 협	1개소	562	1개소	100	인공수정 전산화
3. 한우육종농가사업	농 협	104호	2,908	103호	2,937	
	지자체	2개소	120	2개소	120	
4. 한우 수정란 생산 공급	농 협	1개소	(400)	1개소	(400)	한우(씨수소) 개량사업 포함
	지자체	9개소	1,431	9개소	1,431	
5.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농협	3개소	9,000	2개소	6,000	용자 사업
<b>II. 젖소 개량</b>			<b>10,114</b>		<b>10,085</b>	
1. 젖소(씨수소) 개량 사업 지원	농 협	1개소	8,035	1개소	8,006	
2.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농 협	110천두	2,079	110천두	2,079	
3. 젖소육종농가	농 협	16호	(1,586)	16호	(1,586)	젖소(씨수소) 개량사업 포함
<b>III. 돼지 개량</b>			<b>2,903</b>		<b>1,503</b>	
2. 종돈농장검정	종개협	62.4천두	200	62.4천두	200	
3.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축산원	-	1,303	-	1,303	
(우수종돈농가보급지원)	지자체	10개소	(250)	10개소	(250)	
<b>V. 기타가축개량지원</b>			<b>650</b>		<b>900</b>	
1. 신품종별 지원사업	지자체	13개소	150	13개소	150	
2. 우수여왕별 육종 사업	지자체	-	-	-	250	
3. 흑염소개량지원	지자체	1개소	500	1개소	500	미정
<b>VI. 공통사업</b>			<b>325</b>		<b>599</b>	
1. 종축등록(선형심사)	종개협	30천두	150	30천두	150	
2. 가축개량기술교육	농 협	6개과정	145	7개과정	145	20% 자담
3. 능력평가대회(한우/젖소)	종개협	1회	30	1회	30	별도 시행
4. 젖소이상모델 구축	종개협	-	-	-	274	
<b>합 계</b>			<b>53,699</b>		<b>52,369</b>	

# 한 우 개 량

# 1 한우(씨수소)개량사업 지원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한우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더욱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으로 개량하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우량정액을 농가에 생산·공급하여 한우능력을 향상
- FTA 확대 등 대외변화에 대응하여 한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사업기간 : 계속사업('83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28,171	23,316	24,272	27,430	27,430
- 보조	27,104	21,118	22,272	25,280	25,280
- 용 자					
- 지방비					
- 자부담	1,067	2,198	2,000	2,150	2,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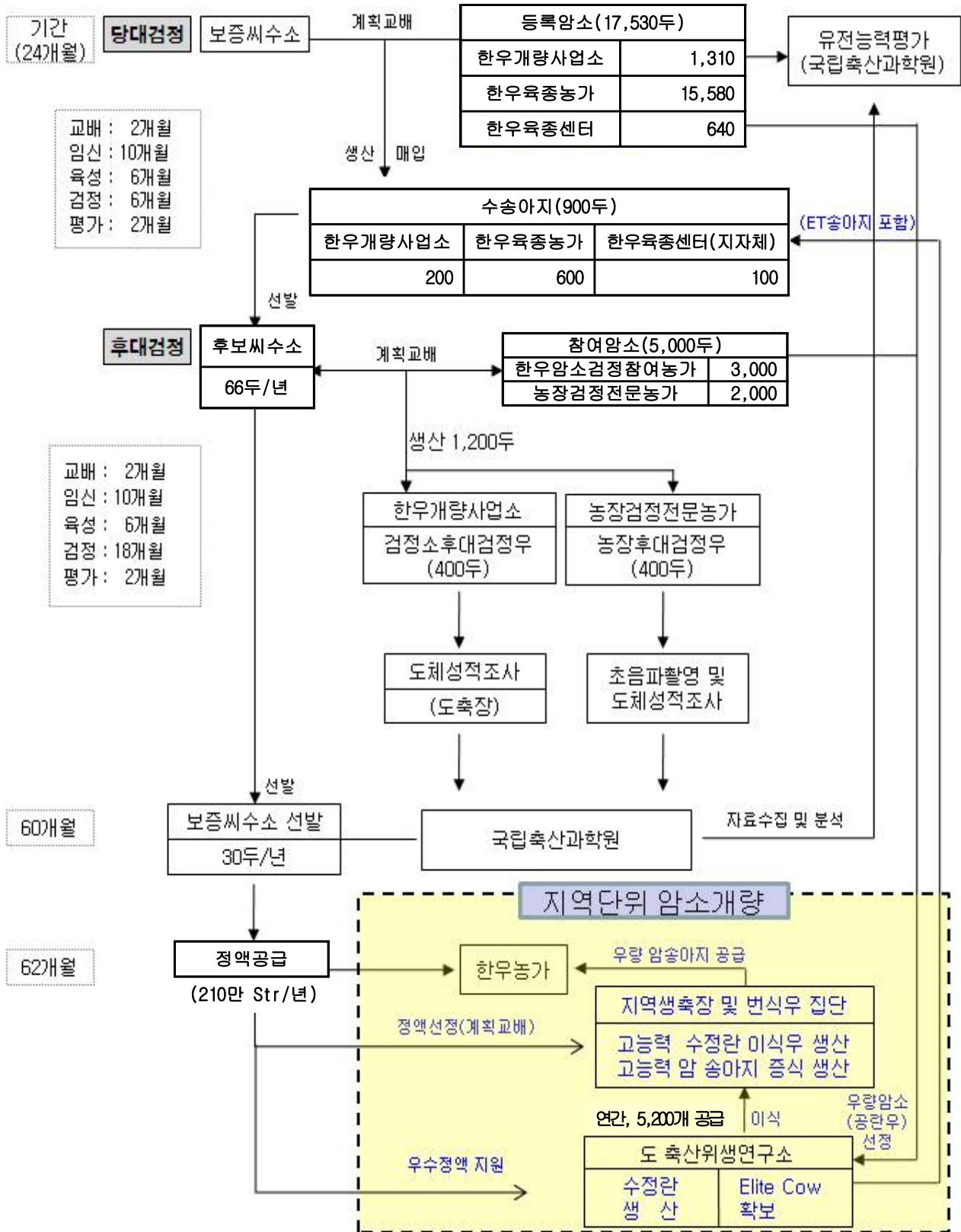
\* 자부담은 농협 인건비 부담액으로 경영여건에 의해 변동이 가능함

\*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포함임

###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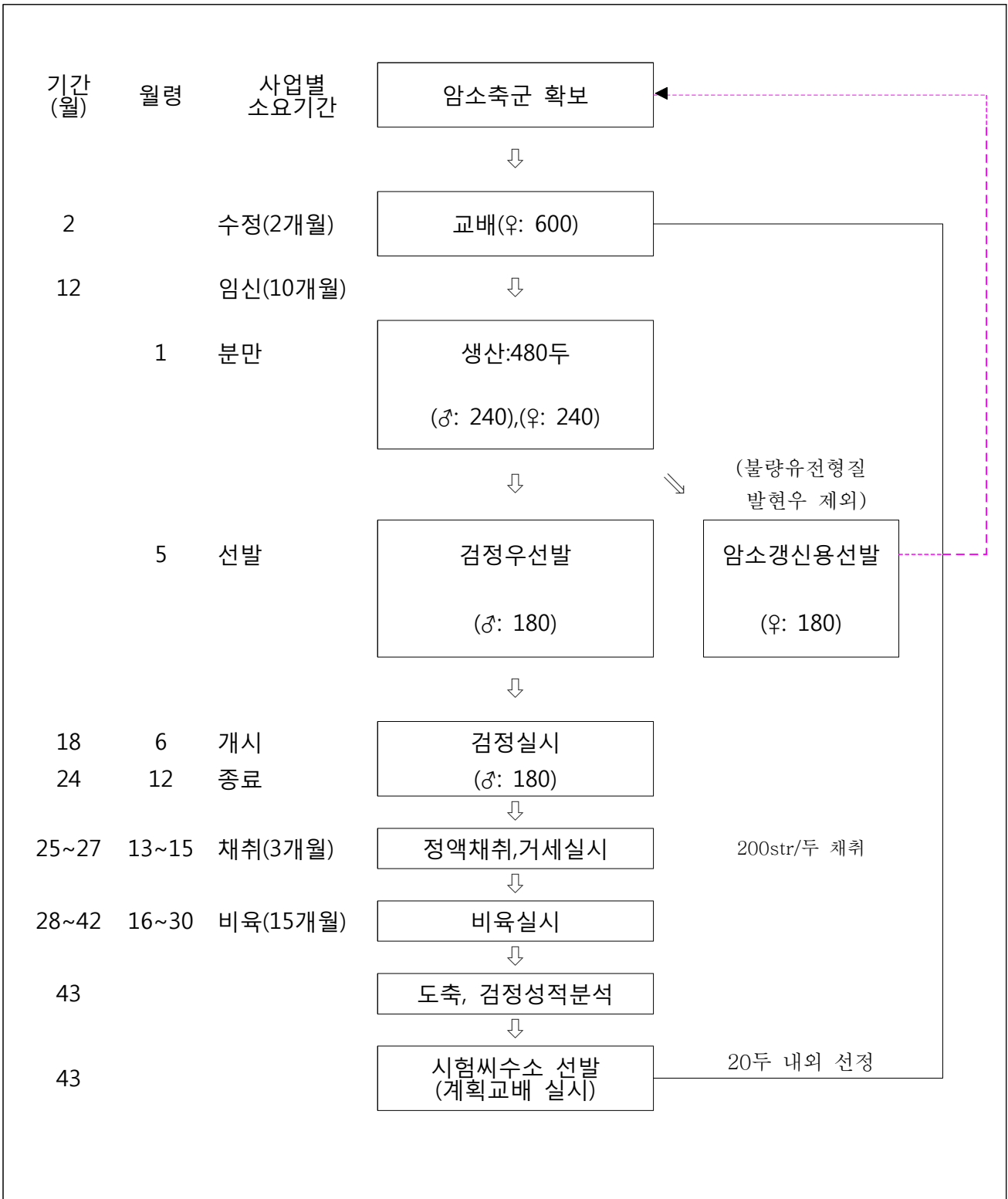
## 마. 사업추진체계

### □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체계



\* 당대·후대검정우, 보증·후보씨수소 두수는 유전능력 평가결과나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 업무흐름도**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①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공급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우 종축검정 및 개량을 수행하는 기관

□ 지원요건 :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한우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선발된 보증씨수소에서 정액을 생산·공급

####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씨수소 선발을 위한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지원

\* 당·후대 검정우 매입 및 농가를 지원하는 검정자료 조사비 포함

#### 다.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형태 : 정액 보조

□ 사업 내용

#### < 당대검정 >

- 사업량 : 당대검정 900두(한우육종센터 100두 포함)

- 사업비 : 3,861백만원(검정우 매입비, 사료비 등)

- 계획교배로 생산된 당대검정우를 검정하여 후보씨수소 선발

- 검정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육종센터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직접 당대검정 실시 가능

- 검정두수 : 당대검정 900두 내외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800두, 한우육종센터 100두

- 당대검정우 확보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자체 생산 및 한우 육종농가에서 매입
  - 보증씨수소 및 씨암소의 유전능력과 유전적 근친도를 고려하여 확보
  - 검정우 매입 : 등록우 경매시장 평균시세의 130%이내에서 매입
    - \* 전국 경매시장 중 25두 이상 출품 지역의 평균시세를 기준
    - \*\* 당대검정우 매입 시 확보두수가 부족하더라도 가축질병, 혈통정보의 정확성을 고려 일반농가에서 매입하지 않고 당대검정 실시
  - 유전체기술을 활용한 당대검정 대상우 선정
    - \* 한우개량사업소 및 한우육종농가(도센터포함) 생산 수송아지에 대해 유전체 육종가를 바탕으로 당대검정우 선정
    - \*\* 유전체분석 두수 : 1,800두/년(사업소 400, 도센터 200, 육종농가 1,200)
- 검정방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 한우육종센터(도 축산관련연구기관)는 자체 생산한 송아지로 당대검정우를 선정하고, 직접 당대검정 추진
- 후보씨수소 선발 : 연간 66두 내외
  -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개량사업소가 제공한 당대검정 성적을 분석(유전능력평가)하고, 가축개량협의회 협의를 거쳐 후보씨수소를 선발
    - \* 한우육종센터는 검정완료 시 개체별 검정성적을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통보하고,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이를 취합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수소 중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연2두 내외 선발 가능
  - 한우육종센터가 생산·검정한 당대검정우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해당 소를 매입(산지평균시세의 130% 이내)
  - 선발지수 가중치 : 12개월령 체중(2) + 근내지방도(1)
  - 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후보씨수소 선발
  - 한우개량사업소는 친자감정을 위하여 후보씨수소의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국립축산과학원 및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교차 검증)하고 정보공개

## 〈 후대검정 〉

- 사업량 : 검정소 후대검정 400두
- 사업비 : 2,340백만원(검정우 매입비, 사료비 등)
  - \* 농장후대검정(400두)는 별도 사업비 확보 : 200백만원
- 후보씨수소의 정액을 혈통등록 이상 암소에 계획교배하고, 생산된 자손(후대)의 능력검정을 통해 보증씨수소를 선발
- 검정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검정소 후대검정\*과 농장 후대검정\*\*을 병행하여 실시
    - \* 후보씨수소의 자손을 검정기관이 매입하여 검정소에서 18개월간 동일 조건으로 사육하면서 검정
    - \*\* 후보씨수소의 자손을 생산한 농장이 직접 사육하는 상태에서 체중조사와 초음파촬영(24개월령)을 실시
- 검정목표 : 800두 내외(검정소 400두, 농장 400두)
- 후대검정용 수송아지(후대검정우) 확보
  - 검정소 후대검정우
    - 검정기관은 사전에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후보씨수소 정액사용 및 후대검정우 생산 신청을 받아 50개소(암소 기준 3,000두) 내외를 선정
    - 사업참여 조합(소속농가)의 암소별로 후보씨수소 계획교배를 실시하고 생산된 수송아지를 검정우로 매입
      - \* 도별 일반시장 평균시세의 130% 이내에서 매입하고, 도별 일반시장 평균시세가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전국 평균시세의 130% 이내로 매입
  - 농장 후대검정우
    -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혹은 한우육종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장 후대검정 참여농가를 선정
    - 농장후대검정 참여농가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를 해당 농가에서 사육(검정소후대검정 시기와 동일)
      - \* 농장후대검정 농가에서 검정자료 제출시 자료조사비 지급



- 검정방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후대검정 실시
  - 월령별 체중측정, 사료섭취량, 초음파생체단층촬영, 도체성적 조사
  - 후대검정우 도체성적 조사는 도체의 등급판정 항목별 성적을 활용하고 검정소 후대검정은 일반성분, 지방산 조성, 전단력 및 부위별 수율조사 실시
- 보증 씨수소 선발 : 연간 30두 내외
  - 선발지수 가중치 : 도체중(1), 등심단면적(1), 등지방두께(-1), 근내지방도(6)

<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운영 >

- 한우 보증씨수소의 선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문농가를 선정하여 농장 후대검정 실시
- 일반 한우사육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40호 내외로 유지하고 교배 및 검정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
  - 12개월령 이상인 혈통등록 이상 교배대상 암소를 연간 호당 40두 이상 선정 하고, 후보씨수소 정액으로 계획교배 실시(교배기간 : 1~2월, 7~8월)
  - 검정방법은 가축검정기준에 의하여 실시
- 신규 전문농가는 검정자료 조사를 위한 우형기(보정틀 및 유도로 포함) 설치 시 최대 8,200천원/호 지원
- 농장후대검정 참여로 생산된 수송아지의 이유자료(생시·이유 혹은 3개월령 체중) 조사·제출 시 100천원/두, 발육자료 조사·제출 시(6·12·18·24개월령 체중측정 및 24개월령 초음파 촬영) 400천원/두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실시
- 지역별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현황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합계
농가(호)	3	5	3	2	2	10	3	2	7	37

- 유전체기술을 활용한 보증씨수소 선발

## 〈 정액생산 및 공급 〉

- 사업량 : 약 2,100천str/년
- 사업비 : 15,135백만원(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
- 후보씨수소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씨수소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감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매월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증·후보씨수소 정액생산·공급
  - 정액 생산·공급용 후보·보증씨수소는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급된 정액은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 방지

## 〈 기 타 〉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구체적인 검정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한우 정액공급 실적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씨수소의 친자감정용 유전자 마커를 검사하여 공개
- 한우육종센터가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대검정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검정방법, 생산된 자료의 수집·평가방법 등을 국립축산과학원과 사전 협의

##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연도 가축개량지원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 2019년 한우(씨수소) 개량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보조	자부담	합계
	합 계	25,280	2,150	27,430
민간경상보조	<input type="checkbox"/> 한우개량	21,336	2,150	23,486
	○ 인 건 비	6,491	2,150	8,641
	○ 운 영 비	14,845	-	14,845
	-급 식 비	17	-	17
	-피 복 비	17	-	17
	-수 용 비	3,648	-	3,648
	-여 비	117	-	117
	-시설장비 유지비	656	-	656
	-재 료 비	8,855	-	8,855
	-업무추진비	70	-	70
	-회의진행비	37	-	37
	-제세공과비 등	739	-	739
	-인건비성복리후생비	689	-	689
	시설비	<input type="checkbox"/> 한우개량	3,039	-
자산취득비	<input type="checkbox"/> 한우개량	905	-	905
	○ 기계장치	227	-	227
	○ 차량운반구	259	-	259
	○ 공구기구비품	419	-	419

○ 2019년 주요가축 매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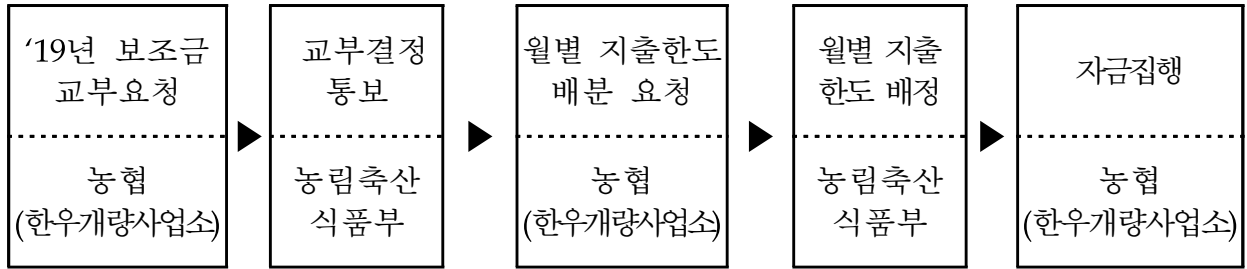
구분	사업물량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당대검정용 송아지 매입비	600두	3,300x1.3	2,574
후대검정용 송아지 매입비	400두	3,000x1.3	1,560
후보씨수소 매입비	12두	4,000x1.3	62
육종농가 고능력 암소매입비(공란우)	6두	8,000x1.3	62
ET 암송아지 매입비	10두	3,000x1.3	39

(주) 사업비는 한우<씨수소>개량사업비에 포함

##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 자금배정·집행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출한도 배정을 받고,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사후관리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씨수소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공급으로 농가 서비스 강화
  - 지역별 사육두수, 농가 수요 등을 감안해 투명한 정액 공급체계 구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한우능력검정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고 사항	보고 기 한	서 식
○ '19년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1>
○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 3. 기타사항

#### □ 사업평가

- 한우개량추세조사를 통하여 한우개량 성과를 평가

#### □ 사업환류

- 한우개량추세조사 분석을 통한 한우개량 시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
- 한우개량추세조사(정기추세조사) 결과를 한우관련기관과 농가에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② 한우고능력씨암소축군구성

###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 추진배경

- 한우의 개량속도 향상을 위하여 후대검정 없이 우수 씨수소의 형질을 받은 암소축군 조성 필요
- 보증씨수소의 유전적개량량 향상을 위하여 유전능력이 검증된 씨수소 생산용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 자신의 능력을 검정하여 우수 씨수소의 형질을 받은 암소축군 조성 필요
    - \* 세대간격 단축 교배를 통해 단기적으로 유전적 개량량 증대, Elite Cow 수정란 대량 추출(OPU) 이식 및 모니터링

#### □ 사업목적

- 한우 씨수소 선발 세대간격 단축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검정하고 검정 완료된 씨수소의 정액을 통한 고능력 우량 암소 축군 조성
  - 씨수소 세대간격 : (현재)5~6년 → (개선)3.3년 (40개월)
    - \* 후대검정 없이 자신의 도체형질을 조사하여 세대간격을 단축(13개월령에 정액 채취 후 30개월령에 자신의 도체성적 조사)

### 나.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 사업대상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우 종축검정 및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 \*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도 축산관련연구기관('15~'16 선정)

#### □ 지원요건

- 씨수소를 생산하는 육종용 암소집단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에 정액(定額)으로 지원

##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19) : 고능력암소 사양비 등

- 사업량 : 고능력 송아지 생산 280두(암 140, 수 140)
- 사업비 : 200백만원(사업참여 지자체 지원)

## 라.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형태 : 정액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내용

- 한우개량사업소 및 도 축산연구소 보유 암소(약 600두) 활용
- 생산된 송아지를 당대 검정(12개월)한 후 정액을 생산(약 200str)하고 그 개체를 거세하여 비육하여(30개월) 도체성적을 비교한 후 우수한 개체만 씨수소로 사용하여 후대생산(약 3년 소요)
  - 당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씨수소의 경제형질 유전능력을 암소에 전달하는 과정을 3세대(10년) 동안 반복하여 단기간에 암소의 유전능력을 향상
  - 사업종료 후 조성된 고능력 암소축군은 후보씨수소 생산을 위한 육종용 암소집단으로 사용
- 암소 축군 규모 : 600두
  - 사업대상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4개소)
  - 농협 : 200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400두
    - \* 지자체는 4개소×100두로 조성(세부적인 두수는 참여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
- 사업기간 : 10년(3세대 : 1세대 검정기간 약 40개월)
  - \* 현재 검정체계는 6년 소요(당/후대검정)

## < 사업추진체계 >

- 당대검정만으로 우수 씨수소를 조기선발하고, 선발된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암소집단에 전달하는 과정을 3세대간 계속적으로 실시
  - 당대검정우는 정액을 채취한 후 거세·비육(30개월령까지)하고, 도축 성적 등의 경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평가결과를 암소집단에 사용
    - \* 정액채취 불가우는 가능한 경우 정소상체에서 정액채취 가능
  - 우량 유전능력을 받고 태어난 암소는 당대검정(증체, 외모심사, 초음파)과 유전능력평가를 거쳐 우수 암소를 선발하고 기존 암소집단을 대체

### < 씨수소 선발 및 사업수행 체계 >



\* 정액선택에 40개월 소요(교배→수송아지육성→도체성적분석→정액선택)

- 검정우 확보 후 24개월 이내에 씨수소 선발 및 정액 이용
  - 씨수소는 20두/년 내외 선발(연간 180두에서 20두 선발)
    - \* 인공수정(2~3개월) → 임신·분만(10개월) → 송아지육성(6개월)
    - \* 시험검정우 확보(6개월령) → 당대검정(6~12개월령) → 정액채취(13~14개월령) → 거세·비육(15~30개월령) → 도축(30개월령)·선발 → 정액이용



- 각 사업기관은 교배계획을 작성하여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정액을 신청하고, 한우개량사업소는 사업참여 지자체에 정액 공급
  - 증체, 도체성적 및 유전능력평가를 거쳐 정액공여 씨수소 연간 20두 내외 선발(사업활성화 후 '19년 사업수행 기준)
- 사업참여 기관(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지자체)은 보유 암소에 1세대 정액을 계획교배한 후 태어난 수송아지를 30개월령까지 검정 실시
  - (친자감정) 친자감정 및 유전체자료 수집
  - (예비검정) 태어난 소의 유전적 질병을 고려하여 전체의 80% 수준을 시험검정으로 선발
  - (당대검정) 체중측정(6개월령, 9개월령, 12개월령), 초음파촬영 및 판독/외모심사(12개월령), 사료요구율 등 검정
  - (정액생산) 13~14개월령이내에 정액생산(저능력,정액생산 불가우도 비육검정 포함)
    - \* 한우 외모심사 기준에 어긋나는 개체의 경우 정액생산 제외
  - (거 세) 15개월령에 거세 실시
  - (비육기간) 15~30개월령까지 비육(비육기간 내 동기우 그룹유지)
  - (비육검정) 체중측정(18개월령, 24개월령, 30개월령),초음파촬영 및 판독(24개월령), 사료요구율, 도축성적 등 검정
  - (유전평가) 도축 후 도체성적 및 검정성적, 혈통정보를 바탕으로 유전능력평가(국립축산과학원)
- 암송아지는 12개월령까지 당대검정을 실시하고 기존 암소와 함께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축을 선발, 기존 암소를 대체
  - (당대검정) 유전적 질병, 모색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12개월령까지 체중, 외모심사, 초음파검사를 실시
  - (평가·교체) 기존 암소와 함께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저능력우 도태
    - \* ex) 기존 100두 암소와 당대검정이 끝난 30두의 암소를 함께 유전능력평가 한 후, 능력이 낮은 30두는 도태하고 새롭게 조성된 100두에 계획교배

###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연도 가축개량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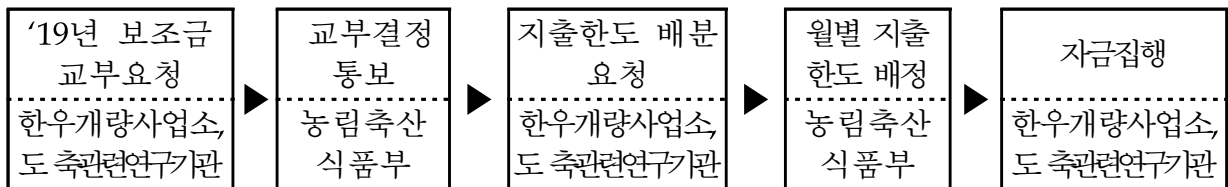
구분	사업물량	단가(백만원)	사업비(백만원)
고능력씨암소 축군 조성(지자체)	4개소	50	200

- 재원 : 축산발전기금(국고 2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시·도비) 50%로 지원

###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 자금배정·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 자금집행 단계



###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사후관리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사업시행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또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기술지원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국립 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고 사항	보고 기 한	서 식
○ 사업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자체서식
○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 ③ 희소한우(최소, 흑우) 개량지원

#### 가. 사업목적

- 희소한우(최소, 흑우) 개량기반을 구축하고, 수소 검정을 통하여 우량 씨수소를 선발하고, 최소 농가에 정액 공급
  - 우량 씨수소 정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희소한우 두수 확대
- 혈통 및 모색 조사를 통하여 희소한우의 관리 기반 구축

#### 나. 사업대상 및 선정

##### □ 사업대상자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희소한우 개량을 시행하는 기관 중 희소한우 가임암소 20두 이상 보유하고 선정된 지자체

##### □ 사업신청 자격

- 우사 : 암소 우사(분만우사 포함), 육성우사, 단방식 당대 검정우사 (10두 이상), 거세우 비육우사 보유(또는 보유 계획 제출)
- 검정시설 : 체중측정(유도로 포함) 및 초음파 촬영 시설, 사료 섭취량 조사 시설 등 보유(또는 보유 계획 제출)
- 정액제조 시설 : 정액채취 및 인공수정용 정액 제조 시설
- 번식관리 : 암소 전 두수 계절번식
- 질병관리 : 기관 보유 12개월령 이상 전 두수 소 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 음성
  - \* 보유축 5대 질병 검진결과(소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 요네병, 구제역) 단, 구제역은 NSP검사 결과 첨부

○ 농가보유 희소한우 혈통 및 모색 조사

□ 시행기관 선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중 사육시설, 검정우사 보유 여부, 인력 등 사업시행 여건을 평가하여 선정

- 사업을 희망하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은 신청서(서식 2)와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18.2월)

\* ①사업 신청서, ②사업 참여 암소 보유 내역서 및 종축등록증 사본(또는 보유 계획), ③축산업 허가(등록)증, ④시설보유 내역 및 사진(또는 보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에 대상자 평가 의뢰

- 국립축산과학원은 시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현장심사 후 신청기관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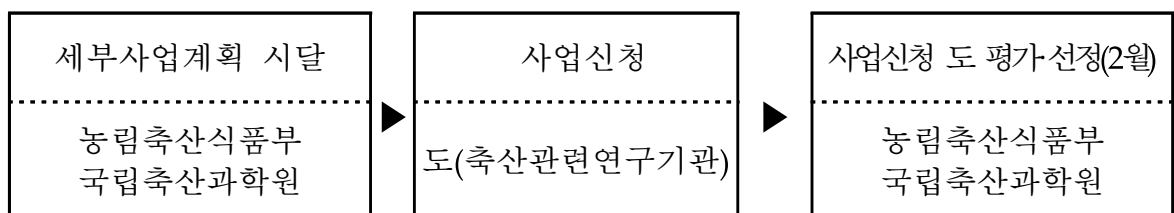
\* 심사위원회 : 농식품부, 축산원, 농협, 종개협 등

· 서류 심사 : “희소한우개량지원 사업대상 선정기준”(참고)에 따라 신청자격 확보 여부를 심사

· 현장심사 : 서류 심사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의 사실 여부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 선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평가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9.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신청 도(축산관련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19년 시행기관을 선정(19.2월)



#### 다.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형태 : 정액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내용

○ 희소한우 개량 축군 조성 : 가임암소 150두

- 각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이 가임암소 30두를 확보, 개량기반 마련

○ 능력 검정을 통한 씨수소 선발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별로 수송아지 10두 이상을 검정

-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사업에 준하는 능력 검정 실시

○ 축산 농가 서비스 : 희소한우 정액 공급, 혈통 및 모색 조사

○ 희소한우(최소, 흑우) 정액 공급

-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기관(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 종축개량협회 등)과 협력하여 희소한우 보유농가에 정액을 시범적으로 공급,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 90백만원(축산발전기금/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비 용도 : 희소한우 사양비, 재료비 등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연도 가축개량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구분	사업물량	단가(백만원)	사업비(백만원)
희소한우(최소, 흑우) 개량지원	3개소	30	90

## 라. 기관별 역할

### □ 사업총괄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지원

### □ 사업주관 : 가축개량총괄기관(국립축산과학원)

- 사업 신청기관 평가(선정 위원회를 구성, 현지심사)
- 사업 참여 희소한우(수소, 암소) 유전능력평가 및 씨수소 선발
- 사업 추진 매뉴얼 마련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사업관리
  - \* 사업추진기관 현지점검 및 필요시 기술지원

### □ 사업시행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개량축군, 검정시설, 정액처리시설, 인력 등 개량기반 확보
- 계획교배, 암소 및 수소에 대한 검정 실시 및 도축후 도체정보 수집
- 선발 씨수소 정액 생산·교환·공급, 혈통 및 모색 조사

## 마. 사업 세부추진계획

### □ 개량 축군 조성

- 암소매입 또는 수정란 이식을 통해 12개월령 이상 암소 30두 조성
- 전두수 계절번식을 실시하고, 20두 이상의 송아지 생산
-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 매년 적정두수의 농가 유전자원 도입

### □ 번식우 관리 및 계획교배

- 사업참여 암소는 상반기(5~6월) 번식과 하반기(11~12월)번식으로 구분하여 전 두수 계절번식
  - 30두의 암소를 상반기 번식용 15두와 하반기 번식용 15두로 구분

- 사업시행기관은 보유 암소의 유전능력과 씨수소의 유전능력 및 근친정도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계획교배를 실시
  - 동일 암소에 대하여 해당 번식기간 동안 동일한 씨수소 정액 사용
- 사업기간 동안 태어난 모든 암송아지는 6~12개월령까지 당대검정(증체, 외모심사, 초음파)을 실시

#### □ 당대검정

- 당대검정 전 : 생시, 이유시(90일 전후) 체중 측정
- 예비검정 : 태어난 수송아지의 유전적 질병, 모색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두 이상을 당대검정우로 선발
- 당대검정 실시
  - 예비검정을 마친 수송아지 전두수를 단방우사에서 검정
  - 검정항목 : 체중측정(6, 9, 12개월령) 및 초음파생체단층촬영(12개월령)
    -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촬영. 단, 초음파판독은 농협에서 실시 후 각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12개월령 체척 측정 및 외모심사는 전문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의뢰

#### □ 정액 생산

- 당대검정 후 13~15개월령에 각 수소별 1천개 정액(스트로) 생산·보관
- 가축검정기준의 “정액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및 정액 제조

#### □ 거세 : 정액 생산 후 거세(유혈 및 무혈)

#### □ 비육우 검정

- 검정기간내 동기우 그룹 유지
  - 우방을 바꾸지 아니하고, 같은 우방에 있는 비육우들을 같은 날 출하
- 검정항목 : 체중 측정(18, 24, 30개월령) 및 초음파생체단층 촬영(24개월령)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촬영, 단, 초음파판독은 농협에서 실시 후 각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30개월령에 도축 후 도체 자료 수집

- 자료수집 항목 : 냉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

○ 외모심사 : 한우외모심사 기준에 의거 실시

□ 씨수소 선발

○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능력 평가 및 외모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 지수에 따라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별 씨수소 2두를 선발(3월, 9월)

- 유전능력평가는 모든 시행기관의 수소에 대해 반기별로 공동 평가

- 선발결과를 사업참여 기관에 통보

○ 선발된 씨수소의 정액을 다른 기관과 교환

□ 암소검정

○ 암소검정을 통하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저능력우를 도태

○ 검정항목 : 생시, 이유시(90일 전후), 6개월령, 9개월령, 12개월령 체중 측정 및 12개월령 초음파생체단층 촬영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촬영. 단, 초음파판독은 농협에서 실시 후 각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혈통관리

○ 본 사업에서 생산되어 생시체중을 측정한 모든 한우의 혈통관리 실시

\* 생시체중 측정 후 이유 전에 폐사한 경우라도 혈통 관리

○ 정확한 혈통관리를 위해 검사기관에 분만우의 친자감정을 의뢰

□ 질병관리

○ 12개월령 이상 전체 보유축에 대한 질병검사 실시(연 1회)

- 질병검진 항목 : 소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 요네병, 구제역(구제역은 NSP 검사 결과 포함)

### □ 자료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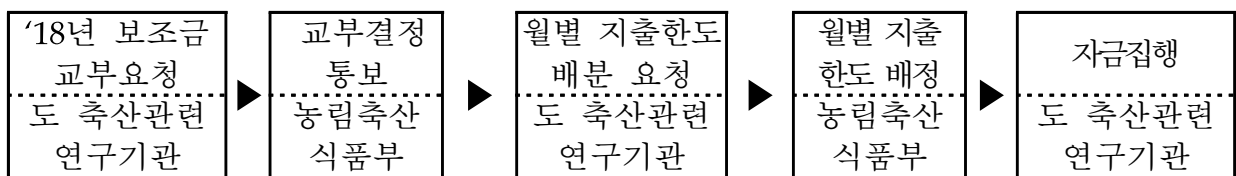
- 시행기관은 개체정보, 번식정보, 능력검정정보, 도체정보, 유전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농가의 희소한우 혈통 및 모색 조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마. 사업 지원 및 사업비 관리

### □ 자금배정·집행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점검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사업시행기관이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기술지원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 사업비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기관에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고 사항	보고 기 한	서 식
○ 사업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자체서식
○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바. 사업평가

□ 평가목적

- 희소한우 개량사업 성과를 높이고, 사업시행기관 간 유전자원 공유, 우량소 공동선발 등 상호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평가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평가대상 : 시행기관(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평가항목 : 암소 두수, 당대검정두수, 송아지생산두수, 정액생산, 검정참여율(능력검정실적), 친자일치율 등
  - 평가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별도 마련

□ 평가에 따른 조치

- 실적이 저조한 시행기관은 사업비 삭감 및 제외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제재
70점 이하	경고 및 사업비 20% 삭감
71-80점	주의

\*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

\* “경고”와 조치와 함께 사업비 삭감 → 2차 경고시 1년간 사업비 지원 제한

\* “경고” 조치 후 익년에 “주의” 이하 평가 시 사업비 삭감

○ 도 시행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 향후 국가 가축개량지원사업 참여 제한

<서식 1>

##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 1.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	단위	평가구분	연 간 계획(A)	(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당대검정		사업량					
○ 교 배(사업소)	두						
○ 수송아지 확보	두						
- 사업소(선발)	두						
- 개량농가(매입)	두						
- 육종농가(매입)	두						
○ 검정개시	두						
○ 후보씨수소 선발	두						
- 사업소분	두						
- 지자체(매입)	두						
나. 후대검정							
○ 농장후대 전문농가	호						
○ 교 배	두						
- 검정소	두						
- 농장	두						
○ 검정대상축 생산	두						
- 검정소	두						
- 농장	두						
○ 검정개시	두						
- 검정소	두						
- 농장	두						
○ 보증씨수소 선발	두						
다. 정액생산공급							
○ 씨수소사육	두						
- 보증씨수소	두						
- 후보씨수소	두						
○ 정액생산							
- 보증씨수소	천str						
- 후보씨수소	천str						
○ 정액공급	천str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보 조 금( /4분기까지 실적)								
	축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합 계									
○ 한우개량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서식 2>

## 최소 개량 사업 참여 신청서

1. 사업자(도 기관명) : (인)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사업담당	기관장	부서장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2. 사업추진기관 현황

#### 가. 일반현황

- 조직 및 인력 :
- 주요 업무 :
- 토지, 건물, 가축 등 보유현황 :

#### 나. 시설 보유 현황

- 사업참여 압소 :
- 우사 :
- 검정시설 및 장비 :
- 정액제조 시설 :
  - \* 해당여부 및 간략한 현황을 기재, 증빙자료 첨부

#### 다. 최소 압소 보유 현황

구 분		계	성우	육성우	송아지
압	3대 이상				
	2대				
	당대				
수					
합 계					

라. 우사현황

시 설 명	동수	면적(m <sup>2</sup> )	적정사육 두수	내 용
번식우사				
육성우사				
검정우사				* 단방식 검정우사
비육우사				
소 계				

마.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위·직급	학위	전 공	담 당 업 무	비고

바. 정액채취 및 제조시설

- 정책 채취시설 규모(주요 장비) :
- 정액제조 장비 및 기자재 현황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규격(ℓ)	주용도	보존능력 (수량)
액체질소탱크					
스트로프린터					
실링&필링					
항온실					
이미지분석장치					
...					

사. 검정시설 및 장비

시설·장비명	개수	규격	주용도	설치(구입) 년도
초음파 및 체형측정실				
능력검정 유도로				
초음파영상진단기				
사료섭취량 측정기				

### 3. 사업추진 계획

#### 가. 사업운영 계획

##### ○ 사업비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기관 총사업비						
한우개량 분야 사업비						
최소 개량 사업비	자체					
	국고					

##### ○ 인력운영 계획

- 최소 개량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분야(가축개량 및 번식 등) 연구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나. 암소 추가 도입 및 관리계획

##### ○ 추가입식 계획

구 분	'17년	'18년	'19년
두 수			

- 구입, 수정란 이식 등 최소 확보 방안

##### ○ 번식관리 : 상·하반기 암소 계절번식(5-6월, 11-12월) 계획

- 계절번식 계획교배 참여 두수, 세부 일정 등

##### ○ 질병관리 : 기관 보유 12개월령 이상 전 소에 대한 질병관리 관리

- 소 류코시스,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 음성 등

#### 다. 시설보완 계획

##### ○ 우사, 검정시설, 정액제조 시설 등 최소 개량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추가 확보·보수계획을 기재

- 시설설치 세부내역 :



- 부지 및 예산 확보 :
  -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등 내역 포함

- 사업추진 일정 :

#### 라. 장비확보 계획

- 검정 및 정액제조 장비, 사료섭취량 측정기, 초음파 진단기 등 최소 개량사업 추진과 관련된 장비 구입 및 확보계획을 기재

- 장비 세부내역 :

- 장비구입 예산 확보 :

-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등 내역 포함

- 사업추진 일정 :

#### 마. 기타

- 기관별 자체 추진계획 등

### 4. 최소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가. 최소 농가 지원

- 수정란 이식, 보조금, 정액 공급 등

#### 나. 최소 씨수소 관련

- 최소 씨수소 보유 두수, 최소 씨수소 정액 생산,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간 최소 정액 교환, 농가 최소 정액 공급 등

# 참고

## 희소한우 개량지원 사업대상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점	비고
기반 여건 (40)	가임두수(1세 이상) 두수	30	10두 이상(30점)/7~9두(25점)/4~6두 (20점)/ 1~3두(15점)/0두(0점)		
	최소 씨수소 보유 두수	10	5두 이상(10점)/2~4두(8점)/1두(5점)/ 0 두 미만(0점)		
인력 구성 (10)	육종학 석·박사	6	2명 이상(6점)/1명(4점)/0명(0점)		*연구인력
	기타 석·박사 인원수	4	2명 이상(4점)/1명(2점)/0명(0점)		*연구인력
사업 환경 (20)	최소 분만우사 보유 여부	5	보유(5점) /보수 후 사용 가(3점) 미확보(0점)		
	최소 비육우사 보유 여부	5	보유(5점) /보수 후 사용 가(3점) 미확보(0점)		
	우형기 및 유도로 보유 여부	5	보유(5점)/보수 후 사용 가(3점)/미확보(0점)		
	냉동정액 생산시설 보유 여부	5	보유(5점)/보수 후 사용 가(3점)/미확보(0점)		정액생산 기자재 보유
최소 사업 추진 (20)	최소 정액 생산	10	생산(10)/보완 후 생산 가능(7)/생산 불가능(0)		2016년
	최소 정액 교환	5	교환(5)/보완 후 교환 가능(3)/교환 불가능(0)		2016년
	최소 정액 공급	5	공급(5)/보완 후 공급 가능(3)/공급 불가능(0)		2016년
기초 자료 관리 (10)	개체관리기록부	5	양호(5점)/보통(3점)/미흡(0점)		
	인공수정기록부	3	양호(3점)/보통(2점)/미흡(0점)		
	송아지 생산 기록부	2	양호(2점)/보통(1점)/미흡(0점)		
사업 수행 의지 (10)	사업수행 지속성	5	양호(5점)/보통(3점)/미흡(1점)		
	사업수행 의지	5	양호(5점)/보통(3점)/미흡(1점)		
<b>합 계</b>		<b>110</b>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농가의 암소개량을 촉진
  - 암소별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고능력우의 다산 및 저능력우의 조기도태를 유도하고 맞춤형 씨수소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단위 암소개량을 지원
- 씨수소를 통한 개량과 함께 농가 암소개량을 촉진하여 한우 비육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지원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13,862	3,903	3,375	3,686	3,224	3,224
- 보조	13,862	3,903	3,375	3,686	3,224	3,224
- 융 자	-	-	-	-	-	-
- 지방비	-	-	-	-	-	-
- 자부담	-	-	-	-	-	-

\* 총사업비에 인공수정 전산화 사업(100백만원) 포함

## 라. 사업추진체계

### □ 가축개량총괄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개량건설팅기관 유전능력평가에 대한 표준화
- 유전자분석 친자감정 기관에 대한 자격기준 및 분석방법 제시

### □ 사업주관기관 :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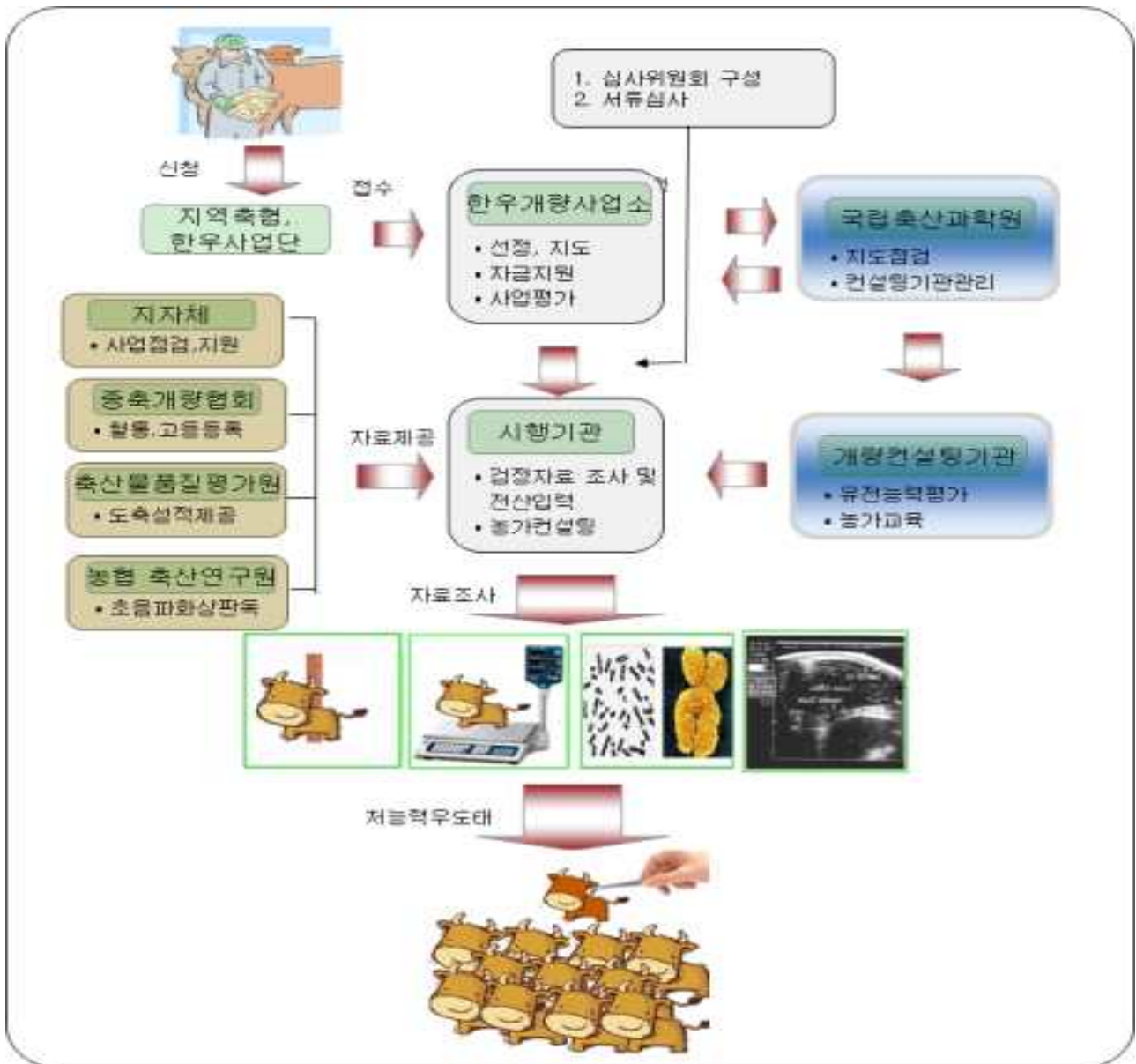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을 선정하고 암소검정사업에 대하여 지도·관리 및 사업비 지원

### □ 시행기관 : 지역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등

- 사업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암소검정사업을 추진
- 개량건설팅기관에서 분석한 유전능력평가에 따른 농가지도

2018년 도별 시행기관		
경기	가평축협, 경기한우협동조합, 양평축협, 포천축협	4
강원	동해삼척대백축협, 속초양양축협, 원주축협, 춘천축협, 춘천축협 양구지점, 평창영월정선축협, 평창영월정선축협 영월지점, 평창영월정선축협 정선지점, 홍천축협, 횡성축협	10
충북	괴산증평축협, 제천단양축산농협, (청주축산농협), 충주축산농협	4(1)
충남	당진축산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서산축협, 서천축협, 천안축산업협동조합, 홍성축협	6
전북	고창부안축협, 남원축협,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장수지점, (무진장축협 무주지점), 순정축협,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임실축협, 전북한우협동조합, 전주김제완주축협,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점, 정읍한우협회	13(2)
전남	고흥축산농협, (장흥축산업협동조합)	2(1)
경북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경산축산농협, 경주축협, 군위축협, 대구축산농협 검단<취>,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영주축산농협, (포항축산농협)	8(2)
경남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김해축산업협동조합, 남해축협, 밀양축산농협, 사천축산업협동조합, 울산축산농협, 의령축협, 창녕축협, 창원시축산농협, 하동축협, 함안축산업협동조합, 함양산청축협, 합천축협	14(1)
제주	제주축협	1
합계		62(7)

\* ( )는 조건부 시행기관 및 조건부 시행기관수



## □ 협조기관

### ○ 개량컨설팅기관(대학 및 개량기관)

- 컨설팅기관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 표준화 작업을 완료한 기관
- 시행기관에 대한 지역단위 한우암소유전능력평가 및 개량컨설팅

개량컨설팅기관(10개 기관)
한경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순천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축산연구원

- 초음파촬영기관(시행기관 및 시행기관에서 정한 위탁기관)
- 초음파 판독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연구원 및 한우개량사업소)
- 친자감정기관 : 소이력제 생산단계 DNA 검사기관 및 한우개량사업  
소에서 암소검정농가 송아지 친자감정 실시

친자감정기관(10개 기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한경대학교,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 GTNR유전자원연구소,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miDNA유전체연구소, 순천대학교, (주)참품한우, 경상대학교 GAST,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혈통등록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도체등급판정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 사업대상

- 시행기관 : 지역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등(이하 '조합')
- 운영계획 : 58개소(조건부 시행기관 포함) 내외

- 운영기준 : 농가 지도비 자부담 납부 농가가 50호 이상이고, 12개월령 이상 기초등록이상 암소 1,000두 이상 보유
- 조건부 시행기관 : 기존 시행기관 중 실적 부진기관 및 신규 참여 기관
- 한우암소검정농가 : 시행기관이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령 이상 혈통등록이상 암소를 5두 이상 사육하고 농가 자부담비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 농가(이하 '암소검정농가')
- ☞ 전산시스템에 이력제 농장식별번호가 입력된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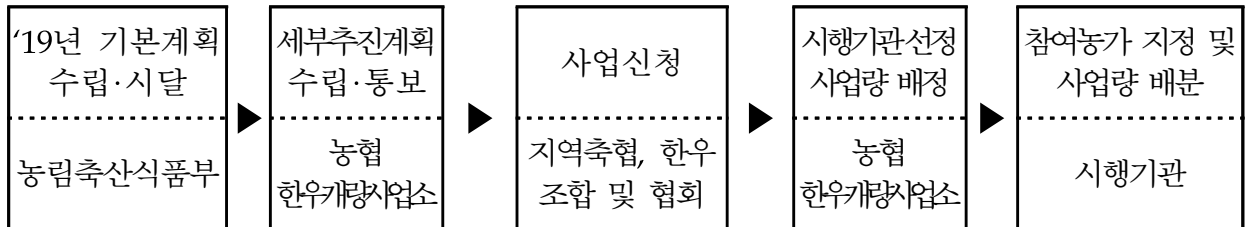
## □ 지원조건

- 사업시행기관 농가 지도비
  - 암소검정농가별로 인공수정, 송아지분만 및 암소검정(체중, 흉위, 초음파촬영)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농협 전산시스템(암소검정사업 관리)을 통해 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대상우의 친자감정을 수행
- 개량컨설팅비
  -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정한 개량컨설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단위 유전평가에 따른 시행기관 및 농가 컨설팅 수행
- 농가 암소 개량지원비
  - 고능력암소로 지정되어 당해 연도에 4~7산차 송아지를 생산하거나, 저능력암소로 지정된 2산차 이하 1,648일령 이하의 암소를 도태
  - 보조금의 승계는 축주 사망 시에만 가족관계 증명서에 포함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원

##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 사업대상자 선정

#### < 암소검정사업 >



#### ○ 사업신청(사업시행기관)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 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 암소검정사업 신청 전 절차 >

- 시행기관은 지자체 및 개량컨설팅기관 등과 협의하여 암소검정사업계획 수립
- 시행기관은 암소검정사업 참여 대상농가에게 암소검정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사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참여 신청서를 접수

#### ○ 시행기관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5인 이상의 시행기관 선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운영계획상의 시행기관수를 고려하여 시행기관을 선정(전년도 12월)
- 전년도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사업계속 참여여부를 결정(사업실적 부진조합은 선정에서 제외)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상위 90%인 시행기관은 자동선정



- 시범사업 시행기관은 선정 후 3년간 연속 참여
- 사업실적 평가결과 하위 10%이내인 시행기관은 신규 신청기관과 평가 후 사업참여 여부 결정
- 전년도 친자감정결과 일치율 70%이하인 시행기관은 차년도 사업제외

#### ○ 사업량 배정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실적에 따라 시행기관의 사업량 및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통지하되 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건과 의무사항을 반드시 통지(1월)

#### ○ 참여농가 지정

- 시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농가 지도비 중 자부담금을 납부한 농가를 대상으로 암소검정농가로 지정·통지
  - ☞ 사업참여 농가의 지속 참여유도 : 2년 연속 참여 농가 비율을 사업실적 평가에 반영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의 참여농가 지정결과에 따라 시행기관 지정 및 사업량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월)

#### ○ 관리대상우 지정

- 지정대상 : 참여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기초등록 이상 암소 전두수

### 다. 지원자금의 용도

- 농가 지도비는 시행기관의 규정 및 예산계획에 따라 농가지도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수용비 및 지도수당 등)로 집행

- 초음파촬영비(암소검정비)는 초음파촬영, 판독수수료 및 담당직원의 위생 및 안전관리비 등으로 지급
- 친자감정비는 친자감정기관에 분석비, 담당직원의 위생 및 안전관리비 등으로 지급
- 개량건설탕비는 시행기관-개량건설탕기관 간 체결 용역비 등으로 활용
-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는 고능력암소의 송아지 분만 시 해당 고능력암소 사육농가에 지원
-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비는 저능력암소를 조기 도태하는 농가에 지원

##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 농가 지도비

- 지원기준 : 시행기관의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호당 지급액을 차등 지원
  - 촉발기금 지원(호당 130천원/년) 이외의 부족분은 농가에서 부담
  - \* 단, 농가 지도비 농가 부담분은 지자체 및 시행기관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으며, 촉발기금 지원은 농가에서 자부담할 경우 지원
  - \* 연간 사업실적에 따라 농가지도비 차등 지원(우선 80천원/호 지원, 사업실적에 따라 상위 10개소 80천원/호, 하위 10개소 20천원/호, 그 외 50천원/호)
- 사업량 : 8,223호
- 사업비 : 1,069백만원(호당 약 130천원, 차등지급)
- 사업의무
  - <한우암소검정농가>
    - 정확한 혈통관리를 위해 인공수정 후 30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

- 하고, 시행기관은 인공수정 자료를 5일 이내에 전산입력 관리
- 농가방문시 인공수정 여부를 확인(인공수정 수정일, 암소 귀표 번호, 정액번호, 수정횟수 및 수정사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 인공수정 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후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이력시스템 대행기관에도 신고)하고, 시행기관은 송아지 분만자료를 전산관리하며 농가방문 시 분만여부를 확인
  - 시행기관은 암소검정농가에게 보유 암소의 생시, 이유시(3개월령) 및 6~9개월령 체중측정(또는 흉위)을 지도하고, 농가에서 측정한 자료를 전산관리(권장사항)
  - 암소검정농가는 관리암소를 계속 사육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출하 시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하고 시행기관은 이를 전산처리

#### <시행기관>

- 암소검정농가에게 12~15개월령 체중 또는 흉위 측정을 지도하고, 농가와 함께 측정한 후 자료관리
  - 12~15개월령 또는 18~30개월령 암소 초음파촬영을 지도하고, 촬영 자료를 판독기관에 송부
  - 친자감정용 시료를 채취하여 친자감정기관에 송부
  - 암소검정농가의 지도·교육(컨설팅)을 실시
  - 개량컨설팅기관이 제공한 교배조합에 의거 정액소요량을 조사하여 사업주관기관에 배정 요청
  - 사업주관기관에서 공급한 정액을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 내역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 정액 선정, 공급시 1군 1그룹은 공급내역에서 제외

- 사업주관기관은 농가별 정액공급 및 인공수정 내역을 모니터링

## □ 초음파촬영비(암소검정비)

### ○ 지원기준

- 암소검정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12~15개월령, 또는 18~30개월령 관리대상 암소 초음파촬영 및 화상 판독시 15천원/두 지원
- 초음파촬영 및 화상판독시 50%(15천원/두)를 시행기관에 지원하고 축발기금 지원 이외의 부족분(15천원/두)은 농가 및 지자체 부담으로 충당

○ 사업량 : 12,000두(12~15개월령 1,000두, 18~30개월령 11,000두)

○ 사업비 : 195백만원(12~15개월령 두당 30천원, 18~30개월령 두당 15천원)

- 사업담당자와 초음파촬영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비(초음파촬영비의 10% 이상) 및 화상판독비(5천원) 포함

○ 사업량 배정 : 사업 신청량 및 전년도 초음파촬영 실적에 따라 배정

- 12~15개월령 초음파촬영 기기(Medison(R3, U6), Pie Medical (Aquila)를 보유하고, 촬영이 가능한 기관에 집중 배정

### ○ 사업의무

#### <시행기관>

- 초음파촬영 대상우를 한우암소검정농가에 통보하고, 농가 요청 시 초음파촬영자에 의뢰하여 촬영
- 초음파촬영 시 자료 조사 항목 : 신체충실지수(BCS)

#### <초음파 판독기관>

-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판독결과를 시행기관(초음파촬영자)에 통보

\* 시행기관은 초음파촬영자 명단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 친자감정비

### ○ 지원기준

- 사업주관기관이 정한 친자감정 대상우의 친자분석을 완료한 경우 조당(어미소 및 송아지) 31,400원을 시행기관에 지원(단, 어미소의 기 분석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조당 15,700원)

\* 타기관의 분석자료 최대활용 : 한국종축개량협회, 지자체, 대학 등

※ 시행기관 담당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비 두당 700원 포함

- 시행기관은 두당 15천원 이내에서 친자감정기관과 협의한 금액을 분석기관에 지급
- 친자감정 대상우는 사업주관기관에서 150%범위에서 임의 지정 통보

○ 사업량 : 13,400조

○ 사업비 : 421백만원(두당분석비 15,000원, 두당안전관리비 700원)

### ○ 물량배정

- 관련기관의 어미의 기 분석자료의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비(15,000조 내외) 범위에서 시행기관별 관리암소 두수에 준하여 사업량을 고려하여 배정
- 친자감정 대상우는 시행기관별로 무작위로 선정하며, 대상우는 가급적 농가별 관리하고 있는 송아지 전체두수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농가별 친자일치율을 산정하여 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친자일치율이 낮은 농가 지도 관리

### ○ 사업의무

<시행기관>

- 친자감정 대상우의 시료를 채취하여 사업주관기관에서 선정한

친자감정기관에 혈통정보와 함께 송부

<친자감정기관>

- 친자감정결과를 사업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통보

## □ 개량건설팅비

### ○ 지원기준

- 시행기관이 개량건설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단위 유전 능력 평가 및 개량관련 컨설팅 수행 시 지원

○ 사업량 : 58개소 내외(조건부 시행기관 포함)

○ 사업비 : 555백만원(시행기관당 10백만원, 조건부기관 5백만원)

### ○ 사업의무

<시행기관>

- 혈통자료, 발육자료, 초음파자료 및 도체자료 등 암소유전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개량건설팅기관에 제공

<개량건설팅기관>

- 시행기관 및 농가에 대해 아래 사항을 수행

- 시행기관별 개량방향 제시
- 암소검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혈통정보 등을 통해 작성한 교배 조합을 농가에게 연 2~4회 제공
- 시행기관 담당자 및 농가교육 등 개량건설팅을 연 2~4회 수행 하여 농가가 계획교배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해야 한다.

\* 컨설팅기관은 가급적 시행기관과 함께 농가에 대한 방문지도 실시

## <2018년 개량건설팅기관별 시행기관 건설팅 현황>

개량건설팅기관	시행기관
강원대학교(6개소)	춘천축산농협, 춘천축산농협 양구지점,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영월지점,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정선지점, 홍천축산업협동조합
경북도립대학교 (8개소)	경산축산농협, 경주축협, 군위축협, 대구축산농협 검단<취>, 영덕울진축협, 영주축산농협, 제천단양축산농협, 포항축산농협
경상대학교(6개소)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고성축협, 사천축산업협동조합, 의령축협, 하동축협, 함양산청축협
부산대학교(5개소)	남해축협, 밀양축산농협, 창녕축협, 창원시축산농협, 함안축산업협동조합
순천대학교(2개소)	고흥축산농협, 남원축협
전북대학교(5개소)	고창부안축협,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임실축협, 전북한우협동조합, 정읍한우협회
충남대학교(5개소)	괴산증평축협, 당진축산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서산축협, 서천축협
한경대학교(2개소)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충주축산농협
농협 축산연구원 (7개소)	동해삼척태백축협, 속초양양축협, 순정축협, 장흥축협, 제주축협, 청주축협, 홍성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 (16개소)	가평축협, 경기한우협동조합,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김해축산업협동조합,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장수지점, 무진장축협 무주지점,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 양평축산업협동조합, 울산축산농협, 원주축산농협, 전주김제완주축협,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점, 포천축협, 합천축협, 횡성축산업협동조합

## □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 대상우 : 암소검정농가의 관리대상우 중 3산차 이상 암소
  - \* 산차 기준은 축산경제통합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의 전산입력 자료를 근거로 함
- 지원기준 : 참여농가 관리우 중 분만 산차가 3~6산차이고 유전능력 상위 10% 이내인 암소 중 지정
  - 고능력암소로 지정되어 그 암소가 당해 연도에 4~7산차 송아지를 생산하면 암소 사육농가에 개량지원비 지급(200천원/두)
    - \* 전년도 고능력암소로 선정된 개체 중 12월에 송아지를 생산하고 개량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금년도 사업비 중 일부를 별도로 배정하여 지급하고, 고능력암소 지정은 당해 연도 기준에 따라 신규로 지정받아야 함
- 사업량 : 1,740두(지정두수 2,500두 내외)
- 사업비 : 348백만원(두당 200천원)
-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량 배정 : 시행기관별 관리암소두수에 준하여 차등 배정
  - 대상우 선정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별 혈통 및 번식자료와 시행기관별 도체등급판정 자료를 개량컨설팅기관에 제공하고, 개량컨설팅기관에 유전능력평가 요청
    - 시행기관과 개량컨설팅기관은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능력암소 지정기준 마련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대상우 중 분만산차가 3~6산차이고 유전능력 상위 10% 이내인 암소를 현지심사 대상으로 지정
    - 시행기관은 현지심사 대상우를 쇠고기이력제정보(농가정보 및



개체정보)를 확인하고 농가 방문 심사 후 배정받은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2월)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에서 등록한 전산시스템의 심사결과에 의거 최종 선정

## ○ 의무사항

### <시행기관>

- 시행기관은 인공수정으로 고능력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이 등록될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하고, 당해 연도에 계속 사육할 수 있도록 지도

## □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암소검정농가 관리암소 중 유전능력이 낮은 암소
- 지원기준 : 유전능력이 낮은 것으로 통보받은 암소를 조기에 도태 (2산 이하, 1,648일령 이내 비육출하)하는 경우 사육농가에 인센티브 지급(150천원/두)

\* 전년도 지정우 중 전년도 12월에 도태된 개체중 개량지원비를 받지 못한 경우 금년 사업비 중 일부를 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량 : 2,900두(지정두수 11,000두 이상)
- 사업비 : 435백만원(두당 150천원)
-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량 배정 : 시행기관별 관리두수 기준으로 배정
  - 선정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별 혈통 및 번식자료와 시행기관별 도체 등급관정자료를 개량건설팅기관에 제공하고, 개량건설팅기관에 유전능력평가 요청

- 시행기관과 개량컨설팅기관은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능력암소 지정기준 마련
- 전년도 지정우 중 도태기준에 적합한 개체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개체를 현지심사 없이 지정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
- 대상우 선정통보 : 시행기관은 해당 암소 사육농가에 유전능력평가 결과와 2산 이하 조기 도태 시 인센티브 지원 대상임을 통보

○ 의무사항

<시행기관>

- 소속 농가의 저능력암소 도태 인센티브 지원 대상 암소의 출하 근거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2019년 한우암소검정사업 시범사업 >

※ 하단에 표기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한우암소검정사업을 준용

□ 사업목적

- 참여농가의 관리암소 전두수의 혈통정립 및 검정자료(12~15개월령 발육조사) 조사, 농가지도 및 컨설팅 강화로 농가 참여의욕 증진
- 기존 한우암소검정사업과 비교하여 한우 암소검정사업의 추진 방향 재검토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에 대하여 지도·관리, 시행기관과 참여농가 교육·컨설팅 및 사업비 지원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사업계획에 의거 암소검정사업 시범사업을 추진
- 검정자료(흉위)를 수집·관리
- 개량건설팅기관에서 분석한 유전능력평가에 따른 농가지도

□ 2019년 시범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시행기관 : 2018년도 시행기관
  - 운영계획 : 2개소
  - 사업내용 : 농가지도비 등 6개 사업
  - 사업비 : 101백만원
  - 운영기준 : 농가 지도비 자부담 납부 농가가 30~50호,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등록 이상 대상암소 1,000두 내외 보유
- 한우암소검정농가 :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등록암소 20~100두 사육하고 친자감정 일치율 75%이상인 농가 중 농가 자부담비를 납부한 농가(이하 '암소검정농가')

☞ 전산시스템에 이력제 농장식별번호가 입력된 농가

- 지원조건

- 사업시행기관 농가 지도비
  - \* 암소검정농가별로 인공수정, 송아지분만 및 암소검정(흉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농협 전산시스템(암소검정사업관리)을 통해 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 관리우에서 태어난 송아지 전두수 친자감정을 수행
- 개량건설팅비

- \*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정한 개량컨설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단위 유전평가에 따른 시행기관 및 농가 컨설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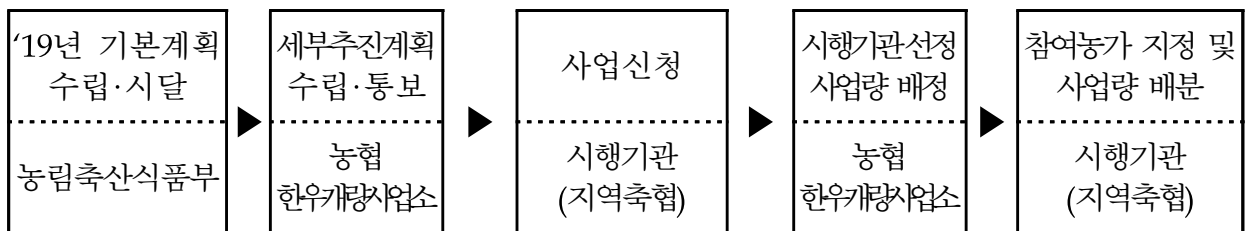
· 농가 암소 개량지원비

- \* 고능력암소로 지정된 암소가 4~7산차 송아지 분만
- \* 저능력암소로 지정된 2산차 이하 1,648일령 이하의 암소를 도태
- \* 보조금의 승계는 축주 사망 시에만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원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 암소검정사업 >



- 사업신청(사업시행기관)

-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 시범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시행기관 선정

- \* 사업주관기관은 5인 이상의 시행기관 선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서식13>에 따라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시행기관을 선정(1월)

※ 단,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관기관 인근 시행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량 배정

-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기관의 사업량 및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통지하되 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건과 의무사항을 반드시 통지(1월)

· 참여농가 선정 : 시행기관당 30~50호(1월)

- \* 선정방법 : 사업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의 농가 평가기준 <서식14>에 따라 선정

-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의 참여농가 지정결과에 따라 시행기관 지정 및 사업량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월)

· 관리대상우 지정

- \* 지정대상 : 참여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혈통·고 등등록이상 암소 전두수(친자불일치 개체는 제외)

○ 지원자금의 용도

- 농가 지도비는 시행기관의 규정 및 예산계획에 따라 농가지도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수용비 및 지도수당 등)로 집행
- 친자감정비는 친자감정기관에 분석비로 지급
- 개량건설팅비는 시행기관-개량건설팅기관 간 체결 용역비 등으로 활용
-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는 고능력암소의 분만시 농가에 지원
-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비는 저능력암소를 조기 도태하는 농가에 지원

□ 시범사업 세부사업내역(암소검정사업 항목과 동일)

○ 농가 지도비

- 지원기준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별 평균금액 지원
- 사업량 : 100호 내외(시행기관당 30~50호)

- 사업비 : 36백만원(시행기관당 18백만원 내외 지급)

- 사업의무

<한우암소검정농가>

- \* 관리대상우 및 관리대상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의 모근을 농가가 직접 채취하여 시행기관에 친자감정 의뢰
- \* 정확한 혈통관리를 위해 인공수정 후 30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하고, 시행기관은 인공수정 자료를 5일 이내에 전산입력 관리
- \* 농가방문시 인공수정 여부를 확인(인공수정 수정일, 암소 귀표번호, 정액번호, 수정횟수 및 수정사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 \* 인공수정 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후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이력시스템 대행기관에도 신고)하고, 시행기관은 송아지분만자료를 전산관리하며 농가방문 시 분만여부를 확인
- \* 시행기관은 암소검정농가에게 보유 암소의 생시체중 측정을 지도하고 농가에서 측정한 자료를 전산관리
- \* 암소검정농가는 관리암소를 계속 사육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출하 시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하고 시행기관은 이를 전산처리

<시행기관>

- \* 암소검정농가에게 12~15개월령 흉위 측정을 지도하고, 농가와 함께 측정한 후 자료관리
- \* 농가에서 친자감정용 시료를 직접 채취하도록 지도하고 시료를 분석기관에 송부
- \* 암소검정농가의 지도·교육(컨설팅)을 실시

- \* 개량컨설팅기관이 제공한 교배조합에 의거 농가의 정액 신청량을 조사하여 사업주관기관에 배정 요청
- \* 사업주관기관은 정액공급이 가능한 씨수소 정액으로 계획교배용 정액공급(연간 관리두수의 1.5배 이내)
  - \* 농가별 정액공급 및 계획교배 실시내역을 모니터링
- \* 사업주관기관에서 공급한 정액을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내역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 사업주관기관은 농가별 정액공급 및 인공수정 내역을 모니터링

○ 친자감정비

- 지원기준

- \* 사업주관기관이 정한 친자감정 대상우의 친자분석을 완료한 경우 두당 15,000원을 시행기관에 지원

- 사업량 : 1,200두

- 사업비 : 18백만원(두당분석비 15,000)

- 물량배정 : 시행기관당 600두

- 대상우 : 관리대상우에서 분만한 송아지 전두수

- 사업의무

<참여농가>

- \* 관리대상우에서 분만한 송아지 전두수 친자감정용 시료를 농가가 직접 채취하여 시행기관에 제공

<시행기관>

- \* 농가에서 제공받은 시료를 사업주관기관에서 선정한 친자감정기관에 혈통정보와 함께 송부

<친자감정기관>

- \* 친자감정결과를 사업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통보

○ 개량컨설팅비

- 지원기준

- \* 시행기관이 개량컨설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 및 개량관련 컨설팅 수행 시 지원

- \* 시행기관당 10,000천원

- 사업량 : 2개소

- 사업비 : 20백만원

- 사업의무

<시행기관>

- \* 혈통자료, 발육자료 및 도체자료 등 암소유전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개량컨설팅기관에 제공

<개량컨설팅기관>

- \* 시행기관의 개량방향 제시
- \* 암소검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혈통정보 등을 통해 작성한 교배조합을 농가에게 연 2~4회 제공
- \* 시행기관 담당자 및 농가교육 등 개량컨설팅을 연 2~4회 수행하여 농가에게 계획교배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 \* 시행기관에서 조사한 검정자료를 활용하여 암소의 유전능력평가 실시
- \* 유전능력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암소를 고능력암소로 지정하여 다산을 유도하고, 유전능력 하위 개체는 저능력암소로 지정하여 조기 도태 유도



- \* 유전능력평가결과에 따른 관리우의 계획교배 자료를 참여농가에 제공(관리우당 3두 내와)
- \* 사업주관기관과 개량건설팅기관은 유전능력평가 결과 및 계획교배 작성에 관한 내용을 농가별 개별 컨설팅 실시(연2회)

○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 지원대상 : 암소검정농가의 관리대상우 중 3산차이상 암소
- 지원기준 : 참여농가 관리우 중 분만 산차가 3~6산차이고 유전능력 상위 10% 이내인 암소 중 지정
- 사업량 : 60두(지정두수 80두 이상)
- 사업비 : 12백만원(두당 200천원)
- 선정방법 및 절차
  - \* 사업량 배정 : 시행기관별 30두 배정
  - \* 선정방법
    -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별 혈통, 번식자료, 도체등급판정 자료를 개량건설팅기관에 제공하고, 개량건설팅기관에 유전능력평가 요청
    - ☞ 시행기관과 개량건설팅기관은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능력암소 지정기준 마련
    - ☞ 사업주관기관은 대상우 중 분만 산차가 3~6산차이고 유전능력 상위 10%이내인 암소를 현지심사 대상으로 지정
    - ☞ 시행기관은 현지심사 대상우를 농가 방문 심사 후 배정받은 사업량 범위에서 심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 \* 대상우 선정통보 : 시행기관은 해당 암소 사육농가에 유전

능력평가 결과와 송아지 분만시 개량지원비를 지원하는 지정 통보서를 발송

- 의무사항

<시행기관>

- \* 시행기관은 인공수정으로 고능력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이 등록될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하고, 계속 사육할 수 있도록 지도

○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암소검정농가 관리암소 중 유전능력이 낮은 암소
- 지원기준 : 유전능력이 낮은 것으로 통보받은 암소를 조기에 도태(2산 이하, 1,648일령 이내 비육출하)하는 경우 사육농가에 인센티브 지급(150천원/두)
- 사업량 : 100두(지정두수 300두 이상)
- 사업비 : 15백만원(두당 150천원)
- 선정방법 및 절차
  - \* 사업량 배정 : 시행기관별 50두 배정
  - \* 선정방법
    -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별 혈통, 번식자료, 도체등급판정 자료를 개량컨설팅기관에 제공하고, 개량컨설팅기관에 유전능력평가 요청
    - ☞ 시행기관과 개량컨설팅기관은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능력암소 지정기준 마련
    -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개체를 현지심사 없이 지정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

- \* 대상우 선정통보 : 시행기관은 해당 암소 사육농가에 유전능력평가 결과와 2산 이하 조기 도태 시 인센티브 지원하는 지정 통보서를 발송

- 의무사항

<시행기관>

- \* 지정농가의 저능력암소 도태 인센티브 지원 대상 암소의 출하 근거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가축인공수정 정보 전산화 사업지원

○ 목 적

- 정확한 인공수정 자료 수집, 친자 불일치 해소, 소 이력정보 정확도 증대, 농가별 계획교배 기반 확보, 생산된 정액의 투명한 관리 및 한우정액 유통현황 파악 등
- 한우 암소개량 촉진과 안정적 송아지 수급관리를 지원 할 수 있는 한우 인공수정DB 및 정보 활용

○ 시행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사업비 : 100백만원

○ 자금용도 :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자료조사 운영비 지원

○ 지원금액 : 실적에 따라 최대 100백만원(기존 프로그램 자료도 분시스템과 자료 호환시 실적으로 인정)

<예시>

(단위 : 천두, 백만원)

정보수집 두 수	20초과 ~ 40이하	40초과 ~ 80이하	80초과 ~ 120이하	120초과 ~ 160이하	160초과 ~
지원금액	20	40	60	8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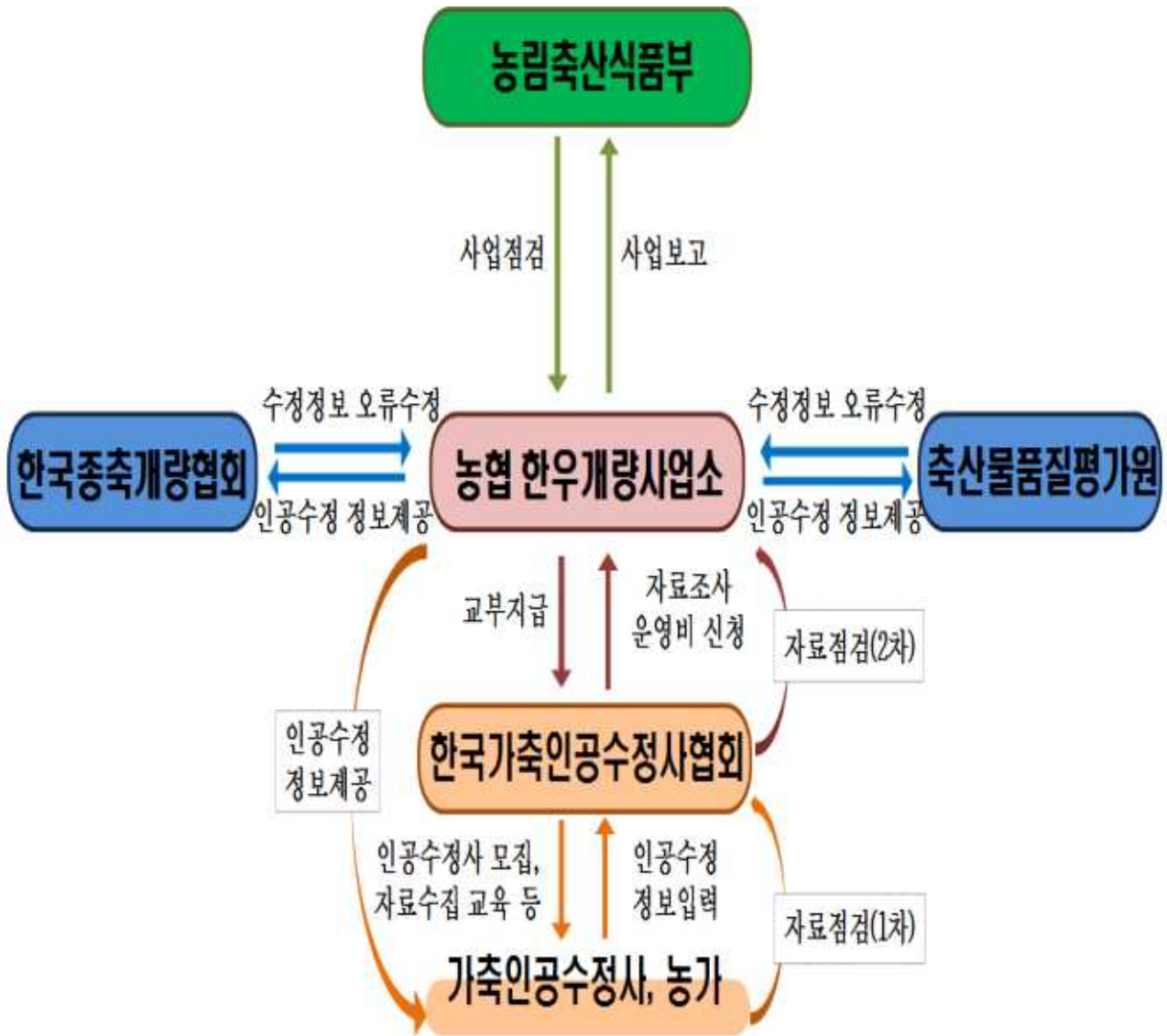
- \* 정보수집은 최대한 확보하며, 실행 1년차(2019년)는 시범활용이므로 사업부진시 정보수집두수에 따른 지원금액 조정 가능

## ○ 지원방법

- 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인공수정사 모집, 자료수집 교육 및 인공수정 자료 오류검증 등을 통해 정확한 인공수정 정보 수집
- 한우개량사업소로 지출증빙과 함께 11월 30일까지 자료조사 운영비 신청
- 한우개량사업소는 인공수정 전산화시스템 상의 개체별 입력자료 확인 후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지정계좌로 자료조사 운영비 입금

## ○ 사업내용

- 시스템 관리 및 운용
  - 인공수정시 실시간 입력 프로그램(PC 및 모바일 용) 운용 및 인공수정기록정보 관리
    - \* 기존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인공수정 정보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
  - 일련번호가 포함된 정액 바코드 스트로우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
    - \* 생산방법 : KPN 번호 4자리 및 일련번호 6자리(생애정액생산량)가 포함된 총 10자리 정액 바코드 스트로우 생산
    - \* 구축내용 : 일련번호가 포함된 정액 생산·재고 관리 및 공급 시스템 구축
    - \* 수집정보 : 씨수소별 정액생산 및 공급량, 지역별·농가별·인공수정사별 정액사용 및 재고량 등
- 인공수정 정보수집 방법 및 내용
  - 자료수집(필수) : 교배대상 암소개체, 정액정보, 수정일자, 수정한 자
  - 농장현장에서 인공수정과 동시에 자료수집(농가 또는 수정사)
    - \* 기존 시스템 및 구축된 인공수정 전산화 시스템(앱) 활용



< 인공수정 전산화 사업 추진 체계도 >

- 농가 또는 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후 인공수정 전산화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인공수정정보 입력(전송)
- 수집된 자료에 대한 오류 확인 및 검증(가축인공수정사협회)
- 인공수정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담당
- 인공수정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 (국립축산과학원)
- 인공수정 정보 관련기관에 실시간 제공(농협 가축개량원)

## ○ 의무사항

### <시행기관(농협)>

- 전산으로 수집된 인공수정 기록의 오류를 보정하고 DB구축
- 지역별, 정액별, 인공수정사별 정액 사용량 수집
- 기존 인공수정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료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이력관리 자료와 비교하여 출생일, 친자 등의 오류 검증 및 통보
  - \* 인공수정사협회에서 제공된 인공수정 자료를 2차적으로 검증 및 수정
- 수집된 인공수정 정보를 개량관련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 <인공수정사협회>

- 인공수정사 모집, 자료수집 교육, 인공수정사 및 농가 자료수집지원, 인공수정 자료 1차 오류검증
  - \*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인공수정 정보는 개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 <축산물 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 제공받은 인공수정 자료를 분석후 각 기관의 이력정보, 등록정보와 비교하여 인공수정기록의 오류사항은 시행기관에 통보
  - \*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인공수정 정보는 개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지원한도액 기준

사업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단가(천원)	사업비 (백만원)	
한우암소검정사업	농가 지도비	8,223호	130	1,069	
	초음파촬영비	18~30개월령	11,000두	15	165
		12~15개월령	1,000두	30	30
	친자감정비	13,400조	31.4	421	
	개량컨설팅비 <sup>주1)</sup>	58개소	10,000	555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1,740두	200	348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인센티브 지원	2,900두	150	435	
	가축인공수정 전산화 사업	1개소	-	100	
	소 계				3,123
시범사업	농가 지도비 <sup>주2)</sup>	2개소	18,000	36	
	친자확인비	1,200두	15	18	
	개량컨설팅비	2개소	10,000	20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60두	200	12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인센티브 지원	100두	150	15	
	소 계				101
합 계				3,224	

주1) 조건부 시행기관 5개소 : 5,000천원 지원

주2) 시범사업 시행기관 : 시행기관 평균 금액 정액 지원

##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 자금배정

- 사업주관기관은 매월 전산시스템 암소검정실적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분기별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자금배정신청을 근거로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 배정

### □ 자금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실적에 따른 농가 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및 개량컨설팅비 등을 사업주관기관에 반기별로 지급요청
- 사업주관기관은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시행기관에 지급
  - 시행기관 지정계좌로 입금
  - 사업주관기관은 연도 말에 시행기관과 사업비 정산 실시
- 시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기타예수금으로 기표한 후 농가지도비와 암소검정비(초음파촬영비)는 해당 과목으로 처리하고, 기타 비용은 해당 기관에 무통장 입금

##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및 보조금집행 현황 등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
  - 점검대상 : 최근 3년간 점검 미실시 기관 중 10호 내외 선정
  - 점검방법 : 현지방문 조사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점검항목 : 사육현황, 암소검정현황 및 개량컨설팅 추진실적 등

## □ 사후관리

### ○ 시행기관 교육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검정원을 대상으로 검정원 개량기술 교육 및 세부추진계획 교육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개량컨설팅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정보교환을 위한 교육실시
- 시행기관의 검정원 교체 등 요청 시 사업교육 실시

###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 폐쇄,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기관의 사업물량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해당 시행기관 및 시·도, 시·군에 알림
- 시행기관은 지정농가가 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보고

##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암소검정사업의 분기별 사업실적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19년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1월)

## 3. 기타사항

###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사업종합평가

- 평가 시기 : 시행기관의 전산자료에 따라 연도 말 실시(11월)

- 평가방법 및 배점 : 사업주관기관이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시달
- 평가에 따른 환류 : 다음 연도 시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차등 지원에 활용

#### □ 한우암소검정농가 만족도 조사

- 암소검정농가의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 등에 자료로 활용
  - 조사시기 : 하반기 중 실시
  - 조사대상 : 암소검정농가에 대하여 시행기관별 3~5호 조사
  - 조사방법 : 조사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 \* 대상선정, 설문조사 항목 등의 조사계획은 사업주관기관 자체 수립·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만족도 조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9.12월)

#### □ 종합유전능력분석 실시

- 평가시기 : 시행기관의 전산자료에 의거 다음 연도 중 1회 실시
- 평가방법 : 국립축산과학원은 평가팀을 구성하여 유전능력평가 실시
- 평가에 따른 환류 : 개량건설팅기관 표준화(고능력·저능력암소 선정) 등에 활용

#### □ 2020년 사업 추가예정 항목

- “암소선형 심사사업” 추가 예정

[붙임 1] 한우암소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

시기	사업주관기관	시행기관	협력기관	비고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추진계획수립</li> <li>- 사업평가 및 보조금 지급</li> <li>- 시행기관신청접수</li> </ul>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참여 신청접수</li> <li>- 사업계획 작성</li> <li>- 사업신청</li> </ul>	<친자감정기관> - 신청용 친자감정 실시 <개량컨설팅기관> - 사업계획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지침시달 (농림축산식품부)</li> <li>- 개량컨설팅기관 표준화작업완료 (국립축산과학원)</li> </ul>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기관지정통보</li> <li>- 사업물량 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대검정 교배</li> <li>- 당대검정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 기술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농가 지정통보</li> </ul>	<개량컨설팅기관> - 검정자료분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능력암소 선정</li> <li>- 저능력암소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육성적조사</li> <li>- 초음파촬영</li> <li>- 고능력암소 현지심사</li> </ul>	<초음파판독기관> - 초음파판독	
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분기사업마감·평가</li> </ul>		<초음파판독기관> - 초음파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대검정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음파촬영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자감정 시료채취</li> </ul>	<친자감정기관> - 친자감정 실시 <개량컨설팅기관> - 검정자료분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육조사</li> <li>- 초음파촬영</li> </ul>	<초음파판독기관> - 초음파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량컨설팅기관 워크숍 (국립축산과학원)</li> </ul>
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분기사업마감·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음파촬영</li> </ul>	<개량컨설팅기관> - 하반기유전능력평가 및 추천씨수소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대검정교배</li> <li>- 당대검정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자감정시료채취</li> </ul>	<친자감정기관> - 친자감정 실시 <개량컨설팅기관> - 검정자료분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육조사</li> <li>- 초음파촬영</li> </ul>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분기사업마감·평가</li> </ul>		<초음파판독기관> - 초음파 판독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대검정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종합평가</li> <li>- 사업만족도조사 실시·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육조사</li> <li>- 초음파촬영</li> </ul>	<개량컨설팅기관> - 검정자료분석·교육	

\* 시행기관은 매월 혈통관리, 발육조사, 도체성적조사 및 농가지도 실시

[붙임 1- 1] 한우암소검정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시기	사업 추진 내용	해당기관
1월	• 시범사업 설명	• 사업주관기관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요청	• 사업주관기관
	• 시행기관 참여농가 모집 - 12개월이상 혈통등록 이상 암소 친자 감정 실시 및 확인서 징구	• 시행기관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시범사업 시행기관 선정 및 교육 - 시범사업 설명 및 향후 일정 협의	• 사업주관기관
	• 개량컨설팅기관과 협약체결	• 시행기관
2월	• 시범사업 참여농가 선정	• 사업주관기관(주관) • 시행기관
	• 시범사업 관리우 지정	• 사업주관기관
	• 시범사업 참여농가 집합교육 - 시범사업 설명	• 개량컨설팅기관(주관) • 사업주관기관 • 시행기관
	• 관리우 유전능력 평가	• 개량컨설팅기관
	• 시행기관별 개량방향 및 개량목표 설정	• 개량컨설팅기관(주관) • 사업주관기관 • 시행기관
	• 관리우별 계획교배용 씨수소 추천 (3두 내외)	• 개량컨설팅기관
	• 사업주관기관에 상반기 계획교배용 정액신청	• 시행기관
• 계획교배용 정액 취합 및 판매부서에 신청	• 사업주관기관	
3월	• 상반기 계획교배용 정액 시행기관에 공급	• 사업주관기관
	• 발육(흉위) 성적 조사 : 12~15개월령	• 시행기관
4월	• 유전능력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농가 교육· 컨설팅 자료 작성	• 개량컨설팅기관(주관)
	• 고능력암소 및 저능력암소 선정·통보	• 사업주관기관

구 분	사업 추진 내용	해당기관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전능력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농가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량컨설팅기관(주관)</li> <li>사업주관기관</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계획교배용 정액 공급내역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관기관</li> <li>시행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육(흉위) 성적 조사 : 12~15개월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기관</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 유전능력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량컨설팅기관(주관)</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우별 계획교배용 씨수소 추천 (3두 내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량컨설팅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관기관에 2차 계획교배용 정액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교배용 정액 취합 및 판매부서에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관기관</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 계획교배용 정액 시행기관에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관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 계획교배용 정액 참여농가에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육(흉위) 성적 조사 : 12~15개월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기관</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전능력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농가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량컨설팅기관(주관)</li> <li>사업주관기관</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농가 만족도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관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범사업 사업실적 보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량컨설팅기관(주관)</li> <li>사업주관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도 시범사업 시행지침 및 세부추진 계획 (안)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관기관</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도 시범사업 시행지침 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림축산식품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도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관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도 시범사업 설명회 - 대상기관 : 시범사업 시행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관기관</li> </ul>

[붙임 2]

‘18년 시행기관별 개량목표

(단위 : %, kg, cm<sup>2</sup>, mm, 점)

도	시행기관	개량건설당기관	번식형질		개량목표(거세우)			
			분만율	수태율	거세우 도체중	거세우 등심척 단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지 방도
경기	가평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			450	90	13	6.5
	경기한우협동조합	한국종축개량협회			440	95		7.0
	양평축산업협동조합	한국종축개량협회	85	85	435	91		
	포천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	75		420			
강원	동해삼척태백축협	농협 축산연구원	90	90	450	98		
	속초양양축협	농협 축산연구원			432	92	12.5	5.7
	원주축산농협	한국종축개량협회	87	87	475	97		
	춘천축산농협	강원대학교	87		450			
	춘천축산농협 양구지점	강원대학교	87		450			
	평창영월정선축산농 협	강원대학교	85					
	평창영월정선축산농 협 영월지점	강원대학교	80					
	평창영월정선축산농 협 정선지점	강원대학교	85					
	홍천축산업협동조합	강원대학교			438	90	13	6.5
	횡성축산업협동조합	한국종축개량협회	70	70	450	96		
충북	괴산증평축협	충남대학교	70	75	445	85		5.5
	제천단양축산농협	경북도립대학교	82	82	445	93		
	청주축협	농협 축산연구원			433	93	13	
	충주축산농협	한경대학교	76	80	425	91		
충남	당진축산업협동조합	충남대학교			430		11.5	
	대전세종충남한우협 동조합	충남대학교			430	90		5.75
	서산축협	충남대학교			425	92		5.65
	서천축협	충남대학교	95					
	천안축산업협동조합	한경대학교	85	87	440	92		
	홍성축협	농협 축산연구원			435	92.5	12	
전북	고창부안축협	전북대학교			440	93.5		5.8
	남원축협	순천대학교					13	
	무진장축산업협동조 합	한국종축개량협회						
	무진장축산업협동조 합 강수지점	한국종축개량협회			432	93.1		6.1
	무진장축협 무주지점	한국종축개량협회	85	90	450	90		

도	시행기관	개량건설팅기관	번식형질		개량목표(거세우)			
			분만율	수태율	거세우 도체중	거세우 등단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지 방도
	순정축협	농협 축산연구원	80	85	435	92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	한국종축개량협회			442	92	13	6.0
	익산군산축산업협동 조합	전북대학교	85	70	440	95		
	임실축협	전북대학교			440	93		5.7
	전북한우협동조합	전북대학교			440	93.5		5.9
	전주김제완주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	62		435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점	한국종축개량협회	64	69	431	92		
	정읍한우협회	전북대학교			457	97.6	14.5	6.5
전남	고흥축산농협	순천대학교	75	78				
	장흥축산농협	농협 축산연구원			442.5	94	14.0	6.0
경북	경북대구한우협동조 합	한국종축개량협회			453	93.5	12.7	6.2
	경산축산농협	경북도립대학교	82	82	440	93		
	경주축협	경북도립대학교	85		450			
경북	군위축협	경북도립대학교	85	88	450	93		
	대구축산농협 검단<취>	경북도립대학교	83	83	450	94		
	영덕울진축협	경북도립대학교	73	75	430	90		
	영주축산농협	경북도립대학교			435	92	12.9	5.9
	포항축산농협	경북도립대학교	72	77	445	94	13	5.7
경남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경상대학교	66				12	
	김해축산업협동조합	한국종축개량협회	60	63	460	93.6		
	남해축협	부산대학교	75	80	465	93		
	밀양축산농협	부산대학교	85	80	465	95		
	사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대학교	66	70				
	울산축산농협	한국종축개량협회			449	91	15	6.0
	의령축협	경상대학교	65			94		5.8
	고성축산농협	경상대학교						
	창녕축협	부산대학교	85	80	465	95		
	창원시축산농협	부산대학교	85	85	465	95		
	하동축협	경상대학교	53	60				5.8
	함안축산업협동조합	부산대학교	70	75	480	95		
	함양산청축협	경상대학교	55	56				
합천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			443.5	92.5	13.2	5.6	
제주	제주축협	농협 축산연구원	87	89				

[붙임 3]

‘18년 시행기관별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지급 현황(3분기까지)

(단위 : 천원)

도별	시행기관	사업실적			보조금 지급내역				
		참여 농가	초음파 촬영 (두)	친자 감정 (조)	농 가 지도비	초음파 촬영비	친 자 감정비	개 량 컨설팅비	합 계
경기	가평축협	92	-	142	7,200	-	3,815.1	5,000	16,015.1
	경기한우협동조합	50	115	77	3,920	1,725	2,292.2	5,000	12,937.2
	양평축산업협동조합	70	70	-	5,440	1,050	-	5,000	11,490
	포천축협	50	-	51	3,920	-	1,240.3	5,000	10,160.3
강원	동해삼척태백축협	110	-	62	8,560	-	1,789.8	5,000	15,349.8
	속초양양축협	90	82	65	7,040	1,230	1,774.1	5,000	15,044.1
	원주축산농협	80	-	-	6,240	-	-	5,000	11,240
	춘천축산농협	290	417	178	22,640	6,255	4,317.5	5,000	38,212.5
	춘천축산농협 양구지점	155	-	72	12,080	-	2,213.7	5,000	19,293.7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150	139	220	11,760	2,085	6,248.6	5,000	25,093.6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영월지점	100	85	77	7,840	1,275	1,774.1	5,000	15,889.1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정선지점	92	52	110	7,200	780	2,747.5	5,000	15,727.5
	홍천축산업협동조합	249	210	264	19,520	3,150	7,426.1	5,000	35,096.1
	횡성축산업협동조합	440	405	328	34,320	6,075	9,121.7	5,000	54,516.7
충북	괴산증평축협	80	138	-	6,240	2,070	-	5,000	13,310
	제천단양축산농협	50	-	112	3,920	-	3,281.3	5,000	12,201.3
	(청주축산농협)	81	-	176	6,480	-	5,526.4	2,500	14,506.4
	충주축산농협	95	521	-	7,520	7,815	-	5,000	20,335
충남	당진축산업협동조합	99	99	78	7,840	1,485	2,260.8	5,000	16,585.8
	대전세종충남 한우협동조합	105	291	116	8,240	4,365	3,501.1	5,000	21,106.1
	서산축협	56	-	-	4,400	-	-	5,000	9,400



도별	시행기관	사업실적			보조금 지급내역				
		참여 농가	초음파 촬영 (두)	친자 감정 (조)	농 가 지도비	초음파 촬영비	친 자 감정비	개 량 컨설팅비	합 계
	서천축협	100	105	96	7,840	1,575	2,731.8	5,000	17,146.8
	천안축산업협동조합	61	30	58	4,880	450	1,742.7	5,000	12,072.7
	홍성축협	148	-	228	11,760	-	6,185.8	5,000	22,945.8
	고창부안축협	99	-	293	7,840	-	5,542.1	5,000	18,382.1
전북	남원축협	130	85	204	10,160	1,275	4,867.0	5,000	21,302
	(무진장축산농협)	50	-	51	3,920	-	1,601.4	2,500	8,021.4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장수지점	92	123	183	7,200	1,845	5,024.0	5,000	19,069
	(무진장축협 무주지점)	56	45	120	4,400	675	3,501.1	2,500	11,076.1
	순정축협	50	44	-	3,920	660	-	5,000	9,580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	167	-	224	13,120	-	7,033.6	5,000	25,153.6
	익산군산축산업 협동조합	170	-	135	13,280	-	3,312.7	5,000	21,592.7
	임실축협	65	-	-	5,120	-	-	5,000	10,120
	전북한우협동조합	189	577	203	14,880	8,655	5,149.6	5,000	33,684.6
	전주김제완주축협	80	316	130	6,240	4,740	3,595.3	5,000	19,575.3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점	90	374	190	7,040	5,610	3,799.4	5,000	21,449.4
정읍한우협회	349	-	379	27,360	-	10,566.1	5,000	42,926.1	
전남	고흥축산농협	337	246	290	26,560	3,690	8,211.1	5,000	43,461.1
	장흥축산농협	50	-	-	3,920	-	-	2,500	6,420
경북	경북대구한우 협동조합	101	127	-	7,920	1,905	-	5,000	14,825
	경산축산농협	90	-	83	7,200	-	2,339.3	5,000	14,539.3
	경주축협	302	-	391	23,600	-	9,577.0	5,000	38,177
	군위축협	70	47	111	5,440	705	2,983.0	5,000	14,128
	대구축산농협검단 <취>	75	-	-	5,840	-	-	5,000	10,840
	(영덕울진축협)	57	-	44	4,560	-	1,381.6	2,500	8,441.6

도별	시행기관	사업실적			보조금 지급내역				
		참여 농가	초음파 촬영 (두)	친자 감정 (조)	농 가 지도비	초음파 촬영비	친 자 감정비	개 량 컨설팅비	합 계
	영주축산농협	118	-	-	9,280	-	-	5,000	14,280
	(포항축산농협)	53	-	78	4,240	-	2,025.3	2,500	8,765.3
경남	거창축산업협동조합	321	136	469	25,680	2,040	13,062.4	5,000	45,782.4
	(고성축산농협)	55	-	32	4,320	-	1,004.8	2,500	7,824.8
	김해축산업협동조합	112	161	205	8,720	2,415	6,154.4	5,000	22,289.4
	남해축협	183	-	-	14,320	-	-	5,000	19,320
	밀양축산농협	92	39	111	7,200	585	3,344.1	5,000	16,129.1
	사천축산업협동조합	197	152	74	15,360	2,280	1,805.5	5,000	24,445.5
	울산축산농협	439	538	-	34,320	8,070	-	5,000	47,390
	의령축협	300	89	397	23,440	1,335	9,938.1	5,000	39,713.1
	창녕축협	135	-	195	10,560	-	5,400.8	5,000	20,960.8
	창원시축산농협	90	-	117	7,200	-	3,391.2	5,000	15,591.2
	하동축협	182	-	230	14,320	-	5,966.0	5,000	25,286
	함안축산업협동조합	200	2	-	15,600	30	-	5,000	20,630
	함양산청축협	182	123	57	14,320	1,845	1,271.7	5,000	22,436.7
	합천축협	320	-	231	25,040	-	6,641.1	5,000	36,681.1
제주	제주축협	108	136	155	8,560	2,040	4,443.1	5,000	20,043.1
합 계		8,649	6,119	7,892	678,800	91,785	212,923.4	292,500	1,276,008.4

□ 시행기관별 고능력암소 및 저능력암소 지원현황(2018년 3분기)

(단위 : 두, 천원)

도	시행기관	고능력암소 지원		저능력암소 지원	
		지급두수	지급액	지급두수	지급액
경기	가평축협	14	2,800	8	1,200
	경기한우협동조합	10	2,000	13	1,950
	양평축산업협동조합	7	1,400	7	1,050
	포천축협	11	2,200	8	1,200
강원	동해삼척태백축협	21	4,200	8	1,200
	속초양양축협	19	3,800	3	450
	원주축산농협	14	2,800	9	1,350
	춘천축산농협	41	8,200	35	5,250
	춘천축산농협 양구지점	22	4,400	24	3,600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30	6,000	17	2,550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영월지점	14	2,800	24	3,600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정선지점	23	4,600	1	150
	홍천축산업협동조합	22	4,400	29	4,350
	횡성축산업협동조합	51	10,200	61	9,150
충북	괴산증평축협	21	4,200	7	1,050
	제천단양축산농협	8	1,600	17	2,550
	청주축산농협	10	2,000	11	1,650
	충주축산농협	19	3,800	21	3,150
충남	당진축산업협동조합	18	3,600	17	2,550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17	3,400	21	3,150
	서산축협	7	1,400	14	2,100
	서천축협	17	3,400	20	3,000
	천안축산업협동조합	15	3,000	3	450
	홍성축협	33	6,600	17	2,550
전북	고창부안축협	45	9,000	32	4,800
	남원축협	33	6,600	15	2,250
	무진장축산농협	7	1,400	1	150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장수지점	19	3,800	20	3,000
	무진장축협 무주지점	6	1,200	5	750
	순정축협	10	2,000	4	600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	49	9,800	41	6,150

도	시행기관	고능력암소 지원		저능력암소 지원	
		지급두수	지급액	지급두수	지급액
전북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44	8,800	17	2,550
	임실축협	11	2,200	11	1,650
	전북한우협동조합	24	4,800	27	4,050
	전주김제완주축협	20	4,000	34	5,100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점	21	4,200	24	3,600
	정읍한우협회	55	11,000	49	7,350
전남	고흥축산농협	55	11,000	28	4,200
	장흥축산농협	3	600	2	300
경북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37	7,400	34	5,100
	경산축산농협	14	2,800	29	4,350
	경주축협	59	11,800	80	12,000
	군위축협	17	3,400	17	2,550
	대구축산농협 검단<취>	39	7,800	11	1,650
	영덕울진축협	4	800	2	300
	영주축산농협	37	7,400	32	4,800
	포항축산농협	11	2,200	10	1,500
경남	거창축산업협동조합	32	6,400	33	4,950
	고성축산농협	13	2,600	16	2,400
	김해축산업협동조합	59	11,800	32	4,800
	남해축협	5	1,000	17	2,550
	밀양축산농협	18	3,600	10	1,500
	사천축산업협동조합	35	7,000	22	3,300
	울산축산농협	72	14,400	60	9,000
	의령축협	34	6,800	22	3,300
	창녕축협	41	8,200	38	5,700
	창원시축산농협	30	6,000	22	3,300
	하동축협	23	4,600	17	2,550
	함안축산업협동조합	31	6,200	14	2,100
	함양산청축협	25	5,000	29	4,350
	합천축협	42	8,400	21	3,150
제주	제주축협	39	7,800	18	2,700
	17년 12월분			1	150
합 계		1,583	316,600	1,292	193,800

□ 친자감정기관별 분석두수(2018.3분기)

친자감정 기관	분석 두수	지급액 (천원)	시행기관
miDNA 유전체연구소	1,554	38,998.8	고창부안축협,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전북한우협동조합,전주김제완주 축협,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점,정읍한우협회
경상대학교	1,890	51,244.8	거창축산업협동조합,고성축산농협,김해축산업협동조합,사 천축산업협동조합,의령축협,창녕축협,하동축협,함양산청 축협,합천축협
순천대학교	677	18,102.1	고흥축산농협,남원축협,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장수지점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171	5,102.5	무진장축산농협,무진장축협 무주지점
GTNR 유전자원연구소	853	24,586.2	경주축협, 당진축산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밀양축산농협, 서천축협, 창원시축산농협, 천안축산업협동조합, 홍성축협
(주)참품한우	658	16,877.5	경산축산농협, 경주축협, 군위축협, 영덕울진축협, 포항축산농협
충북도위생 시험소	176	5,526.4	청주축산농협
한경대학교	1,913	52,485.1	가평축협, 경기한우협동조합, 동해삼척태백축협, 속초양양축협, 제주축협, 제천단양축산농협, 춘천축산농협, 춘천축산농협 양구지점,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영월지점,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정선지점, 포천축협, 홍천축산업협동조합, 횡성축산업협동조합
합계	7,892	212,923.4	

<서식 1>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신청서 ( 농 가 용 )

### 1. 사업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2. 사업의 목적

-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암소유전능력추정
- 우량 암소의 계획교배 및 저능력우 도태 유도로 암소개량집단 구축

### 3. 참여농가 기준

- 12개월령 이상 혈통등록이상 암소 5두 이상 보유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농가 지도비를 납부할 농가(1.31.까지 납부)

### 4. 사업의 의무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개체는 지정 후 1년간 사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및 이동 등 사유발생시 기간 내에 시행기관에 신고

5. 사업 기간 : 2019. 1. 1 ~ 12. 31

6. 암소검정 참여신청 개체내역 : 별첨

7. 시행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부.

위와 같이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 ○ ○ (인)

시행기관 ○○○

귀하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우암소검정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축주명, 주소, 연락처 등 개량컨설팅에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주관기관(농협경제지주), 개량컨설팅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한우암소검정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관련 교육·안내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축주명, 주소, 연락처 등 개량컨설팅에 필요한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신청서 ( 시행기관용 )

1. 신청기관 :

2. 사업 신청량

구분	단위	'19년 사업계획	사업 신청량	보조금 지원
참여농가	호	8,223		130,000원/호
암소검정 (초음파촬영)	12~15개 일령	두	1,000	30,000원/두
	18~30개 일령	두	11,000	15,000원/두
친자감정	조	13,400		31,400원/조

※ 암소검정(초음파촬영) : 사업신청량이 많은 기관부터 우선 사업량 배정

※ 친자감정 : 어미 기본석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15,700원/두 지원

3.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첨부1 : 한우암소검정사업 계획서 1부.

\* 첨부2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 내역 1부.

위와 같이 2019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 ○ ○ (인)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첨부 1>

# 한우 암소검정사업 계획서

(시행기관용)

## 1. 사업목적

-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유전평가로 암소의 유전능력 추정
- 우량 암소의 계획교배 및 송아지 생산과 저능력우 도태 유도로 암소개량집단 구축
- 한우 개량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 2. 시행기관 현황

### 가. 시행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	

### 나. 암소 사육 현황(시행기관 전체자료 축산물이력제 참고)

- 종축등록구분별 사육현황

농가호수 (호)	계	일반	기초	혈통	고등

- 분만산차별 사육현황

계	미경산우	1산차	2산차	3산차	4산차	5산차 이상

다. 개량관련 보유장비 현황

구 분	구입년도	기종	대수	비고
초음파촬영기기				
체중측정기(이동식)				
체척측정기				

라. 인력운용 계획

성 명	직급	담당업무 (분장일)	비고

\* 직급 : 직원은 직급을 기재하고, 외부인원은 위탁으로 표기

\* 담당업무 : 책임자, 사업전담 , 발육조사, 초음파촬영 등 표기

\* 비고 : 농협경제지주에서 축산컨설턴트로 인증받은 자는 “축산컨설턴트” 표시

마. 사업담당자 교육 및 육성방안

- 
- 
-

### 3. 2019년 한우암소검정사업 추진계획

#### 가. 사업계획

(단위 : 호, 두)

구 분		2018		2019년 계획	비 고
		계획	실적		
농가관리	참여농가 (호)				
번식·혈통 관리	관리우두수 (두)				12개월령 이상, 기초등록 이상
	인공수정 (두)				
	송아지생산 (두)				
	혈통등록 (두)				
	친자감정 (조)				
	친자일치율 (%)				
암소 검정	발육조사 (두)				
	초음파 촬영 (개월령)	12~15 (두)			
		18~30 (두)			
암소 활용	저능력암소 도태 (두)				
송아지 활용	후대검정 인공수정두수 (두)				한우개량사업소 후대검정교배 참여두수

#### 나. 분기별 자료조사 계획

(단위:두, 조)

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친자감정					
발육조사					
초음파촬영					

다. 농가교육 및 컨설팅 계획 : 3회( 월, 월, 월)

#### 4. 시행기관 개량목표

##### 가. 개량대상형질 및 개량목표(개량컨설팅기관 자문)

개량대상형질	개량목표

##### 나. 개량목표 달성방안

- 
- 
- 

#### 5. 농가관리 및 육성방안

##### 가. 농가교육

- 유전능력평가 결과 및 계획교배를 활용한 농가 컨설팅
- 저능력암소 관리 및 도태

##### 나. 사업참여 의지가 부족하거나 개체관리가 소홀한 농가 관리

#### 6. 지자체 지원

가.

나.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통보서

### 1. 한우암소검정사업 지정내역

○ 축주내역

축 주	주소			
	성명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참여두수	두		농가지도비 자부담	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내역

순번	귀표번호	등록번호 (등록구분)	생년월일	현재 산차	부명호	어미	
						개체번호	등록번호

### 2. 지정조건

- 지정기간 : 2019. 1. 1 ~ 12. 31
-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및 이동 등 사유발생시 기간 내에 시행기관에 신고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개체는 지정 후 1년간 사육을 원칙으로 하고, 12~15개월령 암소는 암소검정에 참여
- 사업 세부내용 및 기타 사항은 시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로 통지합니다.

2019년      월      일

시행기관 :      ○ ○ ○ (인)

<서식 4>

## 한우암소검정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시행기관용 )

1. 신청기관 :

2. 사업 신청량

구 분	단위	시행기관당 사업계획	사 업 신 청 량	보조금 지 원
참여농가	호	50		시행기관당 18,000천원 내외
관리대상우	두	1,000		
친자감정	두	600		15,000원/두
고능력암소	두	30		200천원/두
저능력암소	두	50		150천원/두

※ 친자감정 : 어미 기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15,000원/두 지원

3.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첨부1 : 한우암소검정사업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2019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 ○ ○ (인)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첨부 1>

# 한우암소검정 시범사업 계획서

(시행기관용)

## 1. 사업목적

-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조사 및 유전능력평가로 암소의 유전능력 추정
- 우량 암소의 계획교배 및 송아지 생산과 저능력우 도태 유도로 우량 암소 개량집단 구축
- 한우 개량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 2. 시행기관 현황

### 가. 시행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	
담당자	(이름) (자격) 축산관련학과 졸업자, 축산컨설턴트 인증		

### 나. 개량관련 보유장비 현황

구분	구입년도	기종	대수	비고
체중측정기(이동식)				
체척측정기				



#### 다. 인력운용 계획

성 명	직급	담당업무 (분장일)	비고

\* 직급 : 직원은 직급을 기재하고, 외부인원은 위탁으로 표기

\* 담당업무 : 책임자, 사업전담 , 발육조사 등 표기

\* 비고 : 농협경제지주에서 축산컨설턴트로 인증받은 자는 “축산컨설턴트” 표시

#### 라. 사업담당자 교육 및 육성방안

- 계획 :    연간 회
- 시기 :
- 방법 :

#### 마. 농가 컨설팅 관리

- 계획 :    연간 회
- 시기 :
- 방법 :

### 3. 2019년 한우암소검정사업 추진계획

#### 가. 사업계획

(단위 : 호, 두)

구 분		2018		2019년 계획	비 고
		계획	실적		
농가관리	참여농가 (호)				
번식·혈통 관리	관리우두수 (두)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등록우
	인공수정 (두)				
	송아지생산 (두)				
	혈통등록 (두)				
	친자감정 (조)				
	친자일치율 (%)				
암소 검정	발육조사 (두)				
암소 활용	저능력암소 도태 (두)				
송아지 활용	후대검정 인공수정두수 (두)				한우개량사업소 후대검정교배 참여두수

#### 나. 분기별 자료조사 계획

(단위 : 두, 조)

월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친자감정				
발육조사				

#### 4. 대상농가 내역

순번	농가명	농가 식별번호	이력제 농장식별번호	관리두수	자가 수정 여부	질소통 보유 여부	보정 시설 설치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관리두수 : 12개월령이상 혈통·고등 등록 두수

\* 질소통보유여부 : 1. 보유, 2. 공동보유, 3. 미보유

<서식 5>

# 한우암소검정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농 가 용 )

## 1. 사업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 2. 사업의 목적

- 암소에 대한 발육·조사에 의한 정확한 암소유전능력평가
- 우량 암소의 계획교배 및 저능력우 도태 유도로 암소개량집단 구축

## 3. 참여농가 기준

-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 등록 암소 20두 이상 보유
- 시행기관에서 정한 농가지도비 자부담을 납부할 농가
- 친자감정결과 친자일치율이 75%이상인 농가

## 4. 사업의 의무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개체는 지정 후 1년간 사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및 이동 등 사유발생시 기간 내에 시행기관에 신고
- 관리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생시체중 측정, 친자감정 시료를 채취

5. 사업 기간 : 2019. 1. 1 ~ 12. 31

6. 암소검정 참여신청 개체내역 : 별첨

7. 시행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부.

위와 같이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축산업등록증 사본 1부.

2.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제공에 대한 위임장 1부.

신청인 : ○ ○ ○ (인)

시행기관 ○○○ 귀하

<서식 6>

## 한우 고능력암소 선정 통보서

### 1. 한우 고능력암소 선정내역

○ 사업대상 농가

축 주	주소			
	성명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 한우 고능력암소 선정내역

순번	귀표번호	등록번호 (등록구분)	생년월일	현재 산차	부명호	어미	
						개체번호	등록번호

### 2. 선정조건

- 선정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고능력암소는 계속사육을 권장하며 소유주 및 사육농장 변동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및 이동 등 사유발생 시 기간 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 제외
- 보조금의 승계는 축주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급됨
- 사업 세부내용 및 기타 사항은 시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지원금액 : 상기우 중 송아지 분만시 두당 20만원을 지급

위와 같이 한우 고능력암소 지정농가로 선정되어 통지합니다.

2019년      월      일

시행기관 :      ○ ○ ○      (인)



## 한우 저능력암소 선정 통보서

### 1. 한우 저능력암소 선정내역

○ 사업대상 농가

축 주	주소			
	성명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 한우 저능력암소 선정내역

No	개체번호	생년 월일	유 전 능 력				도축기한
			도체중	등심 단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 지방도	
1							
2							
3							

### 2. 선정조건

- 선정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조기도태 완료까지 소유주 및 사육농장 변동시 보조금 지급 제외
- 보조금의 승계는 축주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급
- 사업 세부내용 및 기타 사항은 시행기관에 문의

3. 지원금액 : 상기우 중 2산차 이하, 1,648일령 이내 도축시 두당 15만원 지급

위와 같이 한우 저능력암소 선정내역을 통지합니다.

2019년      월      일

시행기관 :      ○ ○ ○ (인)





## 한우암소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 1. 사업 추진실적

#### ○ 기존사업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 - 농가 - 참여두수 - 암소검정두수 - 친자감정두수 - 고능력암소 지원 - 저능력우 도태 인센티브 지원	개소 호 두 두 조 두 두					

#### ○ 시범사업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 - 농가 - 참여두수 - 친자감정두수 - 고능력암소 지원 - 저능력우 도태 인센티브 지원	개소 호 두 조 두 두					



<서식 11>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 사업실적 평가기준

1. 대상기관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  
(최근 2년 이내 신규 시행기관 사업평가 유예)

2. 평가기준일 : 2019. 1. 1. ~ 11.10.

### 3. 평가방법

항목

- 참여농가, 암소집단관리, 번식관리, 성적관리, 혈통관리, 능력검정참여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가점 및 감점 항목)

배점 : 200점(“항목별 점수산출” 방법 참조)

순위 : 항목별 득점점수 합계에 의거 결정

### 4. 향후 조치사항

농가지도비 차등지원 : 상·하위 10개소 내외 시행기관은 사업비 차등지원

우수 시행기관 및 우수 직원 표창상신 등

차년도 사업참여

- 사업실적 우수기관 차년도 사업참여 : 상위 90%

- 최근 2년 이내 신규 시행기관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친자일치율 70%이하인 시행기관

### 5. 평가항목 및 점수산출 방법

평가항목		점 수 산 출 방 법
참여 농가  (20점)	참여농가 관리 (1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연말 참여농가 / 농가 사업 배정량) × 5 + (농가당 자부담금/50,000)×5 ○ 농가당 자부담금 : 시행기관 자부담금 납입액 / 자부담납부 농가수
	관리암소 (1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 연말 관리암소 두수 ÷ 연초 관리암소 지정두수 ) * 10
암소 집단 관리  (30점)	고능력 암소관리 (1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 고능력암소 지원 두수 ÷ 고능력암소 지정두수 ) × 15 ○ 고능력암소 지원두수 : 금년도 3분기까지 개량지원비 지급 두수
	저능력암소 관리 (1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저능력암소 도태두수 ÷ (저능력암소 지정두수 * 0.3) ) × 15 ○ 저능력암소 도태두수 : 금년도 3분기까지 개량지원비 지급 두수
번식 관리  (40점)	인공수정 실적 (3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 인공수정 두수 ÷ (관리두수*0.8) ) × 15점 + (추천씨수소 인공수정 두수 ÷ 인공수정 두수) × 15점 ※ 목표 수정비율 : 0.8
	송아지생산 실적 (1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 송아지 생산두수 ÷ (관리두수 * 0.65) ) × 10 ※ 목표 분만비율 : 0.65
성적 관리  (40점)	발육성적 조사실적 (3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발육자료 조사두수 ÷ 사업배정량) × 30 ○ 발육자료 조사두수 : 12~15개월령 체중 또는 흉위 조사 두수 + (6~9개월령 체중 조사두수 ÷ 2)
	초음파자료 실적 (1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초음파판독 두수 ÷ 사업배정량) × 5 + 초음파활용(5점) ○ 초음파활용 : 개량컨설팅기관에서 유전능력 평가에 활용 여부 ※ 기본점수 : 시행기관 중 초음파촬영을 하지 않은 기관(조건부포함) 5점
혈통 관리  (40점)	혈통관리 총실도 (2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상반기 친자감정 두수 ÷ 사업배정량) × 5점 + (친자감정 실시두수 ÷ 사업배정량) × 15점
	혈통관리 정확도 (1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친자일치율) × 10점 ○ 친자일치율 = 친자일치두수 ÷ 친자감정두수
	혈통등록 (1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혈통등록 두수 ÷ 송아지 생산두수 ) × 10 ○ 혈통 등록두수 : 관리위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혈통등록 두수

평가항목	점 수 산 출 방 법
<p>능력검정 참여 (20점)</p>	<p>□ 평가산식 : (참여기관 - 19년도 후대검정사업 실적평가 순위)/참여기관 × 15점 + 5</p> <p>※ 참여기관 : 19년 후대검정사업 참여 시행기관 수          ※ 기본점수 : 후대검정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7점 부여</p>
<p>담당자 및 농가교육 (10점)</p>	<p>□ 사업담당자 및 참여농가 가축개량 및 유전평가결과 집합교육 : 5회 기준</p> <p>- 사업담당자 교육 : 1회          - 개량컨설팅 기관 컨설팅 결과 발표 워크숍 : 1회          - 개량컨설팅기관 및 시행기관 주관 교육 실시 : 3회</p>

○ 기본사항

- 산출점수가 배점이상인 경우 배점으로 처리
-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2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점부여

- 교육 발표자료 제출 및 사업개선 의견 제공 : 건당 1점
- 2018년 참여농가 중 2019년 참여농가 비율 80%이상 : 5점

○ 감점조치

- 사업연도 중 검정사업 담당자 인사이동 : 2점
- 만족도조사 미실시 : 2점
- 한우개량추세조사 미실시(해당연도) : 5점

<서식 12>

## 한우암소검정사업 신규 시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 전년도 사업실적 하위 10% 시행기관 포함

구 분		배점	평가기준	비고
일반현황 (15)	사업규모	5	- 암소검정사업 참여두수 · 5천두 이상 : 5 · 2천두~5천두 미만 : 3 · 2천두 미만 : 1	
	조직 및 인력	5	- 사업규모 대비 조직과 인력 * 전담 1인 200호 기준 · 1인 200호 미만 : 5 · 1인 200~300호 미만 : 3 · 1인 300호 이상 : 1	업무겸임시 감율 조정
	개량관련장비 보유	5	- 체중측정기, 체척자 및 초음파기 등 · 3종 보유 : 5 · 2종 보유 : 3 · 1종 보유 : 1	
암소집단 현황 (30)	암소검정 참여율	5	- 암소검정 참여농가 비율 (암소검정참여농가 수 / 관할지역 암 소 사육농가) · 60%이상 : 5 · 60%미만 : (참여농가 비율/60)*5점	참여농가 자료분석
	다산우보유율	5	- 참여농가 12개월령이상 암소 중 4산차 이상 암소 보유율 · 15% 이상 : 5 · (4산차이상 암소 보유율/15)*5점	
	혈통등록비율	5	- 전년도 분만 암송아지 중 혈통등록 비율 · 50% 이상 : 5 · 50% 미만 : (혈통등록 비율 /50)*5점	
	인공수정 실적	10	- 참여농가 12개월령 이상 암소 중 전년도 인공수정 비율 · 50% 이상 : 10 · 50% 미만 : (수정율/50)*10점	

구 분		배점	평가기준	비고
암소집단 현황	송아지 분만 실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농가 12개월령 이상 암소 중 직전년도 분만 비율</li> <li>· 60% 이상 : 5</li> <li>· 20~50% 미만 : 3</li> <li>· 20% 미만 : 1</li> </ul>	
개량사업 지원 (15)	농가자부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지도비 증 농가자부담비</li> <li>· 호당 50천원 이상 : 10</li> <li>· 호당 50천원 미만 :</li> <li>(호당 자부담비 /50)*10점</li> </ul>	
	지자체 지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소검정(초음파촬영) 지자체 부담</li> <li>· 두당 10천원 이상 : 5</li> <li>· 두당 5~10천원 미만 : 4</li> <li>· 두당 5천원 미만 : 1</li> </ul>	전년도 관련문서 첨부
자료수집 (20)	개량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방법의 적정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설정 및 달성방법의 적정성</li> <li>· 우수 : 20, 보통 : 10, 미흡 : 5</li> </ul>	선정위 평가 평균값 적용
담당자 및 농가 관리 (20)	농가별 관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별 컨설팅 방법</li> <li>· 우수 : 10, 보통 : 5, 미흡 : 3</li> </ul>	"
	담당자 자격 및 교육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인력 확보 및 담당자교육</li> <li>· 우수 : 10, 보통 : 5, 미흡 : 3</li> </ul>	"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서식 13>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범사업 시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가기준	비고
일반현황 (25)	농가규모	5	- 참여농가 · 30~50호 미만 : 5 · 50호 이상 : 3 · 30호 미만 : 1	
	관리우 규모	5	- 참여두수 · 1천두~2천두 미만 : 5 · 2천두 이상 : 3 · 1천두 미만 : 1	
	인력운용	5	- 운용인력 · 3인 이상 : 5 · 1인~2인 : 3 · 1인 : 1	업무겸임시 감을 조정
	담당자 자격	5	· 축산컨설턴트 인증자 : 5 · 축산관련학과 졸업자 : 3 · 비전공자 : 1	
	개량관련장비 보유	5	- 체중측정기, 체척자(흉위자) 등 · 2종 보유 : 5 · 1종 보유 : 3 · 0종 보유 : 0	
암소집단 현황 (25)	다산우보유율	5	- 참여농가 12개월령이상 암소 중 4산차 이상 암소 보유율 · 15% 이상 : 5 · 15% 미만 : 4산차 이상 암소 보유율/15%*5점	
	혈통등록비율	10	- 전년도 분만 암송아지 중 혈통등록 비율 · 50% 이상 : 10 · 50% 미만 : (혈통등록 비율 /50)*10점	

구 분		배점	평가기준	비고
암소집단 현황 (25)	인공수정 실적	5	- 참여농가 12개월령 이상 암소 중 전년도 인공수정 비율 · 50% 이상 : 5 · 50% 미만 :(수정율/50)*5점	
	송아지 분만 실적	5	- 참여농가 12개월령 이상 암소 중 직전년도 분만 비율 · 60% 이상 : 5 · 20~60% 미만 : 3 · 20% 미만 : 1	
개량사업 지원 (10)	농가자부담	5	- 농가지도비 증 농가자부담비 · 호당 100천원 이상 : 5 · 호당 50천원 이상 : 3 · 호당 50천원 미만 : 1	
	지자체 지원	5	- 지자체 부담 · 전액지원 : 5 · 일부지원 : 3 · 지원없음 : 1	
자료수집 (10)	자료조사 계획	10	- 검정자료 조사 계획 · 우수 : 10, 보통 : 5, 미흡 : 3	선정위 평가 평균값 적용
담당자 및 농가 관리 (10)	농가 컨설팅 관리	5	- 농가별 컨설팅 관리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담당자 교육 및 육성	5	- 담당자교육·육성방안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접근성 (20)	사업추진을 위한 접근성	20	- 사업추진을 위한 접근성 · 우수 : 20, 보통 : 10, 미흡 : 5	"
총 점		100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범사업 참여농가 선정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배점
사업 참여 여건	- 혈통·고등 등록 비율	□ 평가산식 : 혈통·고등 등록 비율 : 혈통·고등 등록 두수 / 암소 두수 × 배점 * 암소 두수 : 한우종합 12개월령이상 사육 암소	20
	- 친자일치율	□ 평가산식 : 친자일치두수 / 분석두수 × 배점 * '18년도 암소검정사업 친자 감정 결과 포함 가능	20
	- 교배실적	□ 평가산식 : 직전년도 인공수정 두수 / (암소두수 × 80%) × 배점 * 암소 두수 : 한우종합 12개월령이상 사육 암소	20
	- 분만실적	□ 평가산식 : 직전년도 인공수정 두수 / (암소두수 × 60%) × 배점 * 암소 두수 : 한우종합 12개월령이상 사육 암소	10
	- 쇠고기 이력 시스템과 한우종합시스템 개체 연계성	□ 평가산식 : 이력시스템 일치 두수 / 암소두수 × 배점 * 암소 두수 : 한우종합 12개월령이상 사육 암소 * 한우종합 관리두수 중 쇠고기 이력시스템 농가 사육 두수	20
	- 사업 참여 기간	□ 평가산식 : 암소검정사업 참여기간 (참여기간 / 3년) × 5 + 5	10
가점	- 자가인공수정 여부	- 자가수정 여부 : 여 2, 부 0	2
	- 질소통 보유 여부	- 질소통 개인 보유 4, 질소통 공동보유 2, 미보유 0	4
	- 보정시설 여부	- 보정시설 설치 : 설치 4, 미설치 0	4
<b>합 계</b>			<b>110</b>

## 1. 사업개요

### 가. 사업 목적

-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국가단위 능력검정에 공시할 우량 수송아지를 안정적으로 확보
  - 씨수소 생산용 암소의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한우 암소 모집단 구축
- 한우 씨수소의 우수한 유전자 농가 공급을 통한 육량과 육질에 대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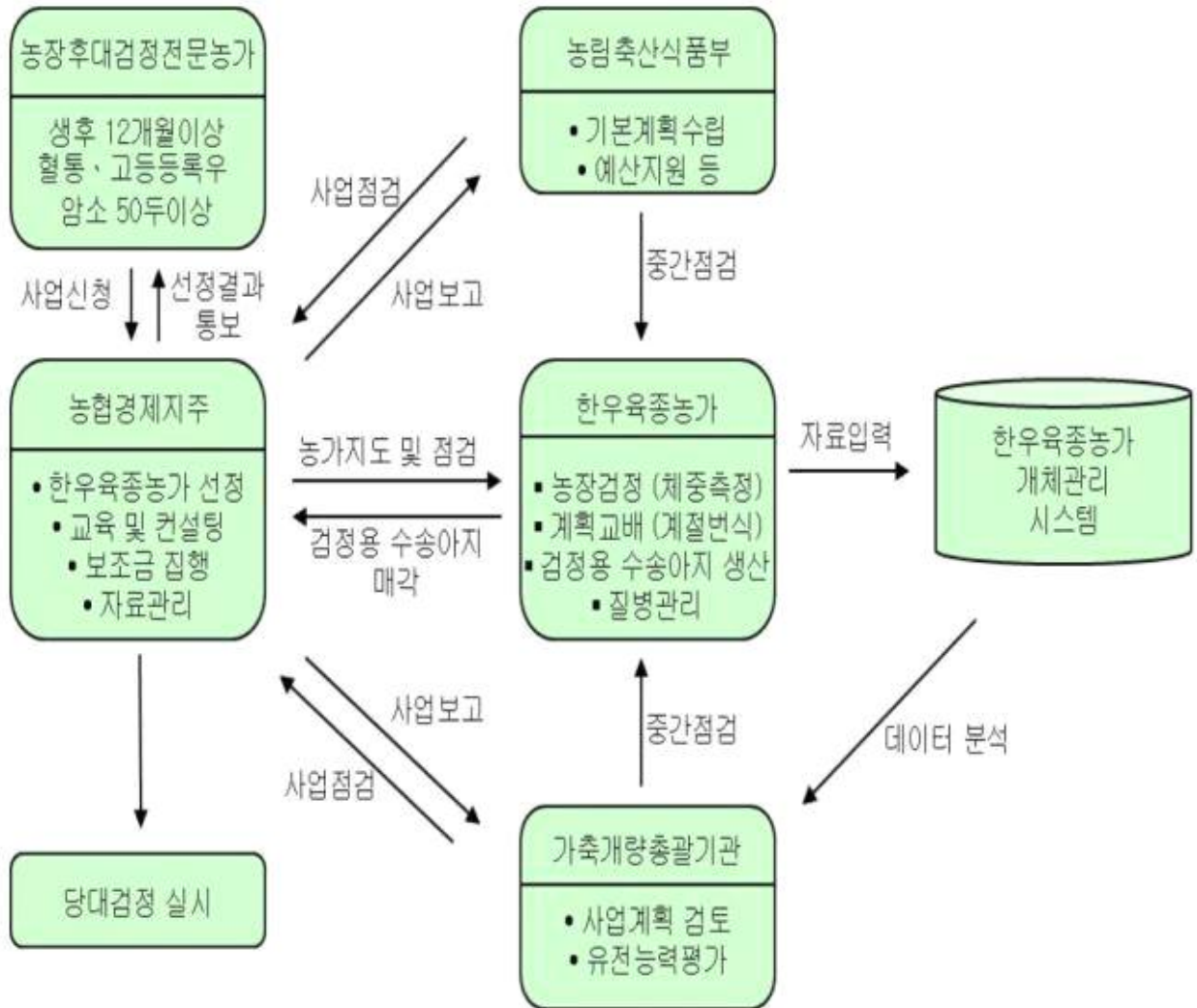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2,875	2,905	3,028	3,057	3,057
- 보 조	2,875	2,905	3,028	3,057	3,057
-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마. 사업추진체계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 사업대상

- 한우육종농가(지역축협 포함) 및 한우육종센터(도 축산관련연구기관)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지정한 농가(기관)
- 2018년 현재 103개소(육종농가 98개소, 육종센터 5개소)

### 〈 한우육종센터 현황 〉

기 관 명	지 역	기 관 명	지 역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	강원 횡성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충북 청원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충남 청양	전북도 동물위생연구소	전북 진안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경북 영주	-	-

\*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 전북도 동물위생연구소(축산시험장),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참여중

#### □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
- 생후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등록 한우 암소를 50두(한우육종센터 100두)이상 사육하며 계절번식을 실시
  - \* 불가피하게 전 두수의 계절번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조정
-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모든 소가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 판정(지역축협의 협조를 받아 질병검진 실시)을 받은 한우육종농가(센터)
- 체중측정기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보유한 농가 및 한우육종센터
- 사업 계획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한우육종농가(센터)

####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물량, 사업추진 방향 및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시달(19.1월)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19.1월)
  - 사업목적, 농가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사업참여신청서 작성과

## 제출기한 등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세부추진계획을 지역축협 및 한우농가에 안내
- 지역축협은 한우육종농가 신청농가의 자격기준을 검토한 후 질병검진 결과를 첨부하여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한우육종농가로 추천
-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는 한우육종농가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축협 또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신청
  - 신규 참여 한우육종농가 : 참여 희망농가 신청서 제출
- 한우육종센터 신청자격
  - 축산업등록제에 등록
  - 생후 12개월령이상 한우 혈통·고등등록 암소를 100두이상 사육하는 한우육종센터로서 계절번식을 관리우 전두수를 실시할 한우육종센터(암소의 생후 개월령 기준일은 서류접수일로 함)
  - 신청 한우육종센터가 관리우로 사육하고자 하는 혈통·고등등록 암소가 사육되는 우사 소재지에 있는 12개월령이상 한우 전 두수를 신청일 기준 2개월내에 질병검진항목(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NSP))의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한우육종센터
  - 체중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한 한우육종센터
  - 한우육종농가사업계획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한우육종센터

※ 국가개량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도 한우육종센터로 신청 가능

※ 육종농가(센터) 신청을 위한 우결핵병 검진은 PPD검사법 또는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으로 가능

### 〈 신규 참여 한우육종농가(센터)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 \* 한우육종농가사업 신청서
- \* 농·축협이 작성한 신용조사서(한우육종센터는 제외)

- \* 한우암소 보유내역서
- \* 축산업등록증(서) 또는 축산업허가증(서) 사본
- \* 농가 최초 혈통등록우에 대한 종축등록증 사본(한우육종센터 제외)
- \* 체중측정기시설 설치장소 및 방역시설에 대한 사진 각 1매
- \* 보유한 모든 소(12개월 이상)에 대하여 시·도 가축위생시험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원 포함)에서 발급한 질병항목별 검진결과통보서

## □ 신규 참여 육종농가 심사 및 선정방법

### ○ 한우육종농가 심사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육종농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는 사업신청서와 제출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기준에 의거 면접대상자를 선정
  - \* 구제역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에는 면접 생략이 가능
- 심사위원회는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심사 대상농가를 선정
- 현지심사는 심사기준에 의거 실시하며, 현지심사 결과 일정수준 미만의 점수를 얻은 농가는 사업계획에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의무 미준수자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가축분뇨법 제10조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미준수자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무허가축사 보유자

### ○ 한우육종농가 선정

- 현지심사 결과 상위 60%에 속하는 농가 중 도별 1순위 농가를 1차로 선정
- 1차 선정된 한우육종농가가 선정계획농가 호수에 미달된 경우



상위부터 선정계획 호수만큼 2차로 선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심사위원회의 현지심사결과에 따라 한우 육종농가를 선정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지역축협과 해당 농가에 통보
-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준수 농가 우선선정

### < 2019년 한우육종농가 추가선정계획 >

(단위 : 호, 개소)

구분	2005~2018	2019	누 계
한우육종농가	98	-	98
한우육종센터	5	-	5

\* 2005~2018년 선정 및 취소 현황 : 선정 128호, 취소 25호

#### 다. 육종용 씨수소 · 씨암소 관리·운영

##### 관리우 지정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에서 계절번식에 참여하고, 친자감정이 완료된 12개월령 이상 혈통 · 고등등록우를 관리우(보유암소)로 선정

##### 계획교배

- 한우육종농가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유암소를 보증 · 후보씨수소(정액)와 계획교배 실시

##### 농장검정

- 농장검정은 계절번식(계획교배)으로 관리우가 생산한 송아지 중 친자감정 결과 일치하는 송아지에 한하여 실시
  - 암송아지는 6개월령 이전까지 외모 및 발육성적을 조사하고, 암소검정대상우를 선정하여 6개월령부터 12개월령까지 발육 및 육질자료(초음파 생체단층촬영)를 조사
  - 수송아지는 6개월령 이전까지 외모조사 및 발육성적을 조사하

고, 당대·후대검정 대상우 심사에 참여

-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육종센터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업승인을 받아 당대검정 자체 실시 가능

#### □ 질병검진

- 한우육종농가는 연 1회 이상 농장 내 암소 관리우에 대한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구제역(NSP, SP)의 검진을 질병검진기관에 의뢰하고, 그 검진결과를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구제역검사는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계획」에 의거 백신접종 5회 미만(혹은 2년령 이하) 개체에 대해서만 실시
  - 단, 당대검정용 수송아지 매입 시에는 송아지와 어미에 대하여 4대 질병항목 검진 실시(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
  - 질병에 감염된 후 질병종식 전까지 한우육종농가사업 중 계절 번식, 농장검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 중단(다만, 구제역(NSP) 발생 등으로 전두수 매몰 또는 도태시 육종농가 지정 취소)

### 다. 한우육종농가 승계

#### □ 승계사유

- 한우육종농가사업 선정 당시 농장주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 승계(농장주의 사망, 병중, 노환 등)

#### □ 승계대상자 : 배우자 및 직계자손

#### □ 승계방법 : 한우육종농가 승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심사(면접 등) 실시 후 승계여부 판단

-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 5인 이하\*)

\* 주관기관과 가축개량총괄기관 소속 직원 각각 1인은 당연직으로 포함

## 라. 지원자금별 용도 및 지원형태

### □ 검정비 지원

○ 사업량 : 9,870두

-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7,100두), 검정우(2,770두)

○ 사업비 : 1,264백만원(두당 100천원/ 200천원)

-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710백만원), 검정우(554백만원)

○ 자금용도 : 송아지, 암소검정우 및 관리우 사육에 필요한 사양관리비(사료, 첨가제, 시약 및 사양관리물품 등) 및 친자감정용 채혈비 등에 사용

○ 지원대상 : 계절번식에 참여한 관리우에서 생산된 친자감정 송아지 중 생시, 이유시(3개월령) 체중을 측정한 개체 및 암소검정(6개월령, 12개월령 체중측정 및 초음파촬영)에 참여한 개체로서 유전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한우육종농가

- 다만, 신규 선정 한우육종농가의 관리우에 한하여 계절번식에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해와 익익년의 1월말까지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 위의 기준에 따라 검정비를 지급

○ 지원기준

- 계절번식에 참여한 관리우가 생산한 송아지 중 친자가 확인된 개체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

· 생시, 이유시(3개월령) 체중측정(암, 수소) : 두당 100천원

· 6개월·12개월 체중측정 및 초음파촬영(암소) : 두당 200천원

\*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체중측정만 실시하고, 초음파촬영이 불가능할 경우 두당 10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가 「서식 2」로 신청한 검정비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으로 지급

○ 한우육종농가 의무사항

- 한우육종농가는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증·후보씨수소 정액을 사용하여 계절교배를 실시하고 수정기록을 작성·보관하여 정확한 혈통관리를 실시
- 송아지 분만 시 생시체중 측정 및 외모조사를 실시하고, 이유시 체중(3개월령), 6개월령 체중, 12개월령 체중을 측정하여 2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해당 자료 입력
- 혈통관리를 위해 친자감정 대상우의 샘플을 채취한 후 사업주관기관 및 친자감정기관에 제공
-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 결과, 당대검정용 수송아지로 선정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매각
- 한우육종농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조사(암소검정우 초음파 촬영 및 관리우 전수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

□ 우형기 설치비 지원

○ 사업량 : 8호

- 한우육종농가 '09년 선정농가 8호

○ 사업비 : 23백만원(호당 4.5백만원 이내)

- 보조금 부족분은 사업비 조정 후 지급

○ 자금용도 : 체중측정 및 초음파생체촬영 시설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보정틀, 체중측정기, 유도로)

○ 지원대상 및 기준

- 내구연한(10년)이 지나 교체가 필요한 한우육종농가의 우형기(보정틀

포함) : 호당 4,500천원 이내

○ 지원방법

- 지원대상농가 체중측정기, 보정틀 등을 설치 후 「서식 3」 으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설치비를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의 우형기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액 이내에서 실비용을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우형기 설치 농가의 사업의무

- 설치한 우형기, 보정틀 유지 보수
- 국고사업으로 지원되고, 관리연한을 명시한 라벨을 부착할 것

□ 질병검진비

○ 사업량 : 100호(한우육종센터 검진비 지원제외)

○ 사업비 : 195.6백만원(16천두×12,225원(두당 검진비))

\* 질병검진비 195.6백만원은 ‘한우(씨수소)개량사업비’에 포함됨

○ 자금용도 :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집단의 청정화를 위한  
질병검진 비용 및 채혈비

○ 지원대상 및 기준

- 한우육종농가에서 연 1회 질병검진을 실시한 농가
- 시·도 가축질병검진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의 청구비용 및 채혈비를 자금범위내에서 지급(단, 채혈비는 두당 5천원 이내로 함)

○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시·도 가축질병검진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의 청구비용 및 채혈비 등 영수증(개업 수의사 발행)을 확인하고, 지원액

이내에서 실비용을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 (온라인 입금) 지급

○ 한우육종농가의 사업의무

- 암소축군 질병 청정화를 위한 질병 예찰 및 방역 실시

□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 사업량 : 73두

- '19년 신규 보증씨수소(25두), 지자체 선발 보증씨수소(3두), '19년 신규 후보씨수소(45두)

○ 사업비 : 1,570백만원

- '19년 신규 보증씨수소(1,000백만원), '19년 신규 후보씨수소(450백만원), 지자체 선발 후보·보증씨수소(120백만원)

○ 자금용도 : 후보·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우량 씨암소 관리 등

○ 지원대상 : 후보·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소를 생산한 한우육종농가 및 육종센터

○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후보 씨수소	보증씨수소		
		하 : 0~20%이하	중 : 20%초과~80%이하	상 : 80%초과~100%
지원금액	10	30	40	50

○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씨수소 선발 후(후보씨수소 3월·9월, 보증씨수소 2월·8월) 개량장려금을 해당 씨수소를 생산한 한우육종농가에 지급
- 육종센터의 경우 전년도에 선발된 후보·보증씨수소에 대한 개량장려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육종농가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 장려금 지급

- 한우육종센터 생산우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후대검정 목적으로 매각해야 하며, 해당 한우육종센터가 희망할 경우 해당 씨수소가 생산한 정액의 50% 우선 구입 가능
  - \* 단, 정액은 유상판매 원칙이며 판매수량은 재고수량을 감안하여 해당 한우육종센터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예산이 부족시 보증씨수소에 대하여 우선지급하고, 예산확보시 미지급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

- 사업량 : 37호, 800두
  -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400두), 6,12,18,24개월령 체중 및 초음파촬영(400두)
- 사업비 : 200백만원
  -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40백만원), 6,12,18,24개월령 체중 및 초음파촬영(160백만원)
- 자금용도 : 농장후대검정 자료를 조사한 개체의 사양관리비 등
- 지원대상 : 농장후대검정우의 검정자료\*를 제출한 후대검정 참여농가
  - \* 생시, 이유시(3개월령), 6, 12, 18, 24개월령 체중, 24개월령 초음파촬영
- 지원기준
  - 생시, 이유시(3개월령) 체중측정 : 두당 100천원
  - 6, 12, 18, 24개월 체중측정, 24개월 초음파촬영 : 두당 400천원
  - \*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체중측정만 실시하고, 초음파촬영이 불가능할 경우 두당 300천원 지원
  - \* 지정 취소된 농장이 후대검정우의 자료조사를 실시한 경우 자료조사비 지급
-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가 「서식 6」로 한우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를 신청할 경우, 개체 및 검정자료를 확인 후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한우육종농가 사업의무

- 한우육종농가는 농장후대검정 계획교배로 태어난 수송아지를 6개월령에 거세하고, 체중측정(생시, 이유시(3개월령), 6, 12, 18, 24개월령, 출하시), 24개월령 초음파촬영 및 도체성적을 사업주관기관에 제공

##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두, 호, 백만원)

구 분		사업물량	사업비	비 고
검정비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	7,100	710	7,100두×100천원
	검정참여우(체중 측정, 초음파촬영)	2,770	554	2,770두×200천원
우형기 설치비		5	23	5호×4,500천원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보증씨수소	28	1,120	◦신규선발 : 25두×40백만원 ◦지자체선발 : 3두×40백만원
	후보씨수소	45	450	45두×10백만원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	400	40	400두×100천원
	6, 12, 18, 24개월령 체중 및 초음파측정	400	160	400두×400천원
합 계			3,057	

\* 우형기 설치비 : '09년 선정농가 8호에 지원(부족분은 사업비 조정)

##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 자금배정·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으로 보조금 배정
- 한우육종농가 보조금 교부결정
  - 기존 농가 : 사업주관기관은 전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 참여농가를 선정하고 교부결정

- 신규 농가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지심사를 거쳐 참여농가를 선정하고 교부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된 한우육종농가와 보조금 교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다만, 당사자간 변경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효력 연장)
- 기존 한우육종농가 : 전년도 12월
- 신규 한우육종농가 : 매년 5월(다만, 선정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조금 지급은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직접 한우육종농가에 지급

##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별로 암소의 검정자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지도 및 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를 연 2회 이상 방문하여 관리우 현황 및 암소검정우의 초음파생체자료를 수집
  - 사업주관기관은 분기별 한우육종농가사업 실적을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한우육종농가 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 사업주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한우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을 점검(연 1회 이상)
  - 점검대상 : 한우육종농가
  - 점검항목 : 친자정확도, 관리우 보유현황, 인공수정 및 송아지 생산두수, 검정실적 및 검정자료 관리
- 한우육종농가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그 농가가 보유한 관리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한우육종농가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농가
- 사업실적 부진으로 한우육종농가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농가
- 지침을 위반했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
- 정당한 사유 없이 당·후대검정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농가
- 계획교배용으로 공급된 정액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농가
- 한우육종농가 관리우 및 검정우에 대한 허위 신고 육종농가

#### □ 실적 및 정산보고

- 실적보고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내역을 연도 말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다음해 1월말)

### 3. 기타사항

####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매년 사업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부진한 농가는 사업에서 제외하여 사업부실 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
  - 평가기간 :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을 원칙으로 함
  - 평가대상 : 신규로 선정된 한우육종농가를 제외한 모든 육종농가 및 센터
  - 평가항목 : 친자일치도, 인공수정 및 송아지생산두수, 암송아지 생산 대비 암소검정우 참여율, 관리우 보유현황 및 검정원 협조여부 등

##### □ 사업환류

○ 사업부진 한우육종농가의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조치사항
70점 이하	경 고
70점 초과 80점 이하	주 의

- “주의 → 경고 → 지정 취소” 순으로 하며,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 후 다음 해에 “주의” 또는 “경고” 평가를 받은 한우육종농가는 지정을 취소

나. 기타사항

○ 지정 취소로 한우육종농가수가 100호 미만이 될 경우 취소된 농가호수 만큼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중에서 우선 선정

<붙임 1>

## 한우 육종농가(센터) 현황

구분		선정년도별 농가(센터)수												합계
도	시군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8	
강원	삼척시			1						1				2
	양양군									1				1
	영월군					1	1							2
	원주시								1					1
	춘천시						1		1	1				3
	홍천군	1						1					1	3
	횡성군	1	1								1			3
경기	가평군	1			1		1	1	1					5
	양주시		1								1			2
	양평군											1		1
	여주시										1			1
경남	거창군								1	1				2
	고성군									1				1
	김해시										2			2
	밀양시	1	1											2
	함안군										1			1
경북	경산시							1						1
	경주시										1			1
	구미시									1				1
	김천시	1		2						1				4
	문경시						1							1
	봉화군									1	1			2
	상주시								1					1
	영덕군					1								1
	영주시	1						1		1				3
	예천군				1									1
	울진군	1												1
인천	강화군							1	1					2
전남	강진군			1						1		1		3
	고흥군												1	1
	곡성군			1	1	1				1				4
	무안군									1				1

구분		선정년도별 농가(센터)수												합계
도	시군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8	
	순천시					1			1					2
	영암군						1							1
	장성군							1						1
	장흥군										1			1
	해남군							1				1		2
	화순군								1					1
전북	김제시			1			1							2
	남원시		1	1										2
	완주군								1	1				2
	익산시		1		1	1				1				4
	임실군	1												1
	장수군						1							1
	정읍시	1			1					1	1			4
	진안군											1		1
제주	서귀포시						1		1				1	3
충남	금산군										1			1
	보령군					1								1
	부여군					1				1				2
	서천군					1								1
	청양군					1								1
	홍성군									1				1
충북	괴산군						1							1
	보은군									1				1
	영동군		1											1
	음성군									1				1
	제천시							1						1
	진천군			1										1
	청원군							1	1					2
	합계	10	6	8	5	9	9	9	12	19	12	3	3	103

※ 한우육종센터 :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강원 횡성), 경북 축산기술연구소(경북 영주), 충남 축산기술연구소(충남 청양), 충북 축산위생연구소(충북 청원), 전북 동물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전북 진안)

<서식 1>

## 한우 육종농가 신청서 (농가용)

### 1. 사업신청자

성명	(인) 축산업 등록번호	
우사소재지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 2. 일반현황

한우 사육 현황 (두)	가임암소(1세 이상)					수 소		
	일반우	기초 등록우	혈통 등록우	고등등록우	계	거세	비거세	계
축사 기타	번식우사		비육우사		체중측정장소	방역시설		별도의 분만우사(방)
	동 평		동 평		(보유여부)	(보유여부)		(보유여부)
조사료 재배면 적(평)	논면적		초지		사료포	기타		<b>HACCP인증</b>
	평		평		평			(인증, 미인증)

### 3. 첨부서류

- 농·축협에서 작성한 서식 제2호 신용조사서
- 서식 제3호 한우 암소 보유내역서
- 축산업 등록증(서) 사본
- 농가 최초 혈통등록우에 대한 종축등록증 사본
- 체중 측정기시설 설치장소 및 방역시설에 대한 각각의 사진
- 질병검진 항목에 대한 검진결과 통보서
- HACCP인증을 받은 농가는 HACCP 인증서 사본 제출

위와 같이 한우육종농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및 서명)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2>

## 한우육종농가 검정비 신청서

### 1. 신청자

성명	(인)	주소	
축산업등록번호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농협(은행) :		

2. 관리우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 3. 관리우 신청내역

순번	관리우 개체식별번호	씨수소명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산차	성별	생년 월일	(대리모)	지급대상 확인

※ 대상우확인란은 사업주관기관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표기

※ 신청대상우 및 자료조사내역이 많은 경우 첨부하여 제출  
(전산자료 출력가능)

※ 쌍태인 경우 관리우 1두를 기준하여 지급

※ 관리우의 송아지에 대한 자료조사 내역 : “별도양식”

위와 같이 한우육종농가 검정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9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6>

발급번호 : 2019- 호

## [ 후보 · 보증)씨수소 선발 확인서 ]

축산업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씨수소 사진>

**KPN 0000**

개체정보	
개체식별번호	
종축등록번호	
생년월일	
부명호	
어미바코드	

귀 농가에서 생산한 상기 (후보 · 보증)씨수소가 제00차 (당대 · 후대)검정 결과 (후보 · 보증)씨수소로 선발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장 (인)

<서식 7>

## 한우육종농가 사업실적 평가항목 및 점수 산출방식

평가항목 및 배점		점 수 산 출 방 법	평 가
<b>친자 확인 실적 (25점)</b>	친자감정 참여실적 (1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친자감정 참여두수/기간별 분만두수) × 배점 ○ 친자감정 참여두수 : 계절번식 친자 참여두수 ○ 기간별 분만두수 : 계절번식 참여우 분만두수	
	친자일치 실적 (1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친자일치 두수/친자감정 참여두수) × 배점	
<b>검정 성적 자료 측정 (35점)</b>	체중자료 측정실적 (1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개월령 체중측정 두수/개월령 체중측정 예상두수) × 배점 ○ 개월령 체중측정 두수 : 생시, 이유시(3개월령) 체중 측정두수 ○ 체중측정 예상두수 : 계절번식 분만두수	
	암소검정 참여실적 (1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암소검정 참여두수/계절번식 분만두수(암)) × 배점 ○ 계절번식 분만두수 : 상,하반기 계절번식에서 분만한 암송아지 ○ 암소검정 참여두수 : 암소검정에 참여한 두수	
	초음파 촬영실적 (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초음파 촬영 두수/암소검정 참여두수) × 배점 ○ 암소검정 참여두수 : 상,하반기에 암소검정에 참여한 두수 ○ 초음파 촬영 두수 : 암소검정우 중 초음파를 촬영한 두수	
<b>교배 · 분만 실적 (25점)</b>	계절번식 교배실적 (2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교배율 = 계절번식 인공수정 두수/ 관리우 전 두수 × 100 ○ 교배율 - 80% 이상 : 20점, 60 ~ 80% 미만 : 16점, 40~60% 미만 : 12점 20~40% 미만 : 8점, 1~20% 미만 : 4점, 0% : 0점	
	분만실적 (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계절번식 송아지생산 두수/계절번식 인공수정 두수) × 배점 ○ 송아지생산 두수 : 인공수정하여 분만한 송아지 생산 두수 ○ 인공수정 두수 : 계절번식 인공수정 실적 두수	
<b>당대검정 참여실적 (10점)</b>	당대검정 참여실적 (10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당대검정 참여 두수/계절번식 수송아지 생산두수) × 배점 ○ 당대검정 참여 두수 : 당대검정용 수송아지 심사 두수 ○ 송아지 생산두수 : 계절번식으로 생산된 수송아지 두수	
<b>당대검정 매입실적 (5점)</b>	당대검정 매입실적 (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당대검정 매입 두수/당대검정 참여 두수) × 배점 ○ 당대검정 참여 두수 : 당대검정용 수송아지 심사 두수(수)	
<b>사업참여 가점 (가점 :15점)</b>	우량송아지 사회 활용 기여도 (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사육중인 개체에 대한 지역 경매시장에 출품한 두수 ○ 출품율 : 출품두수/사육두수 × 100% - 5% 이상 : 5점, 4 ~ 5% 미만 : 4점, 3~4% 미만 : 3점 2~3% 미만 : 2점, 1~2% 미만 : 1점, 1%미만 : 0점	
	씨수소 선발실적 (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후보씨수소 및 보증씨수소 선발 시 5점 부여	
	교육 참여실적 (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교육 참여횟수/교육 실시횟수) × 배점 ○ 교육 실시횟수 :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 교육 참여횟수 :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횟수	
<b>사업참여 감점 (5점)</b>	이력제 자료관리 (5점)	<input type="checkbox"/> 평가산식 : 이력제 불일치율 = 이력제 불일치 두수/ 관리우 전 두수 × 100 ○ 불일치율 - 60% 이상 : 5점, 40 ~ 60% 미만 : 4점, 20~40% 미만 : 3점 10~20% 미만 : 2점, 1~10% 미만 : 1점	

※ 연간 계절번식 두수가 40두 미만일 경우“주의”부여



## 4 한우 고능력 수정란 생산·활용

### ① 농협 한우수정란센터 운영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초우량 한우 암소의 유전자원 확보로 우수한 검정용 수송아지를 생산하여 한우 씨수소의 유전능력 제고
  - 한우 사육농가에 우수 수정란을 공급하여 육량과 육질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 능력이 우수한 한우암소의 유전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우수 수정란 생산·공급 체계 구축하고 기관간 수정란 관련 기술 표준화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346	400	400	400	400
- 보조	346	400	400	400	400
- 용 자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비는 한우능력검정사업에 포함

## 라. 사업추진기관

□ 사업주관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협조기관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공란우 선발 및 우수 수정란 생산·공급
-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가의 도축성적 제공
- 국립축산과학원 : 유전능력 평가 및 고능력 암소 발굴·선발  
(축산물품질평가원자료)

## 마. 사업추진체계

□ 운영체계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연계

- 유전능력평가를 통한 우수 암소 선발 및 활용체계 구축
- 각 사업기관별로 수정란 생산용 우수 암소집단 유지 및 선발이용

□ 기관별 역할

- 센터 운영 총괄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우량암소 보유농가의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지원(10호 x 2두/년)
- 수정란 이식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한우 농가, 공란우 제공 농가 및 축협 생축장 등

□ 한우수정란센터 운영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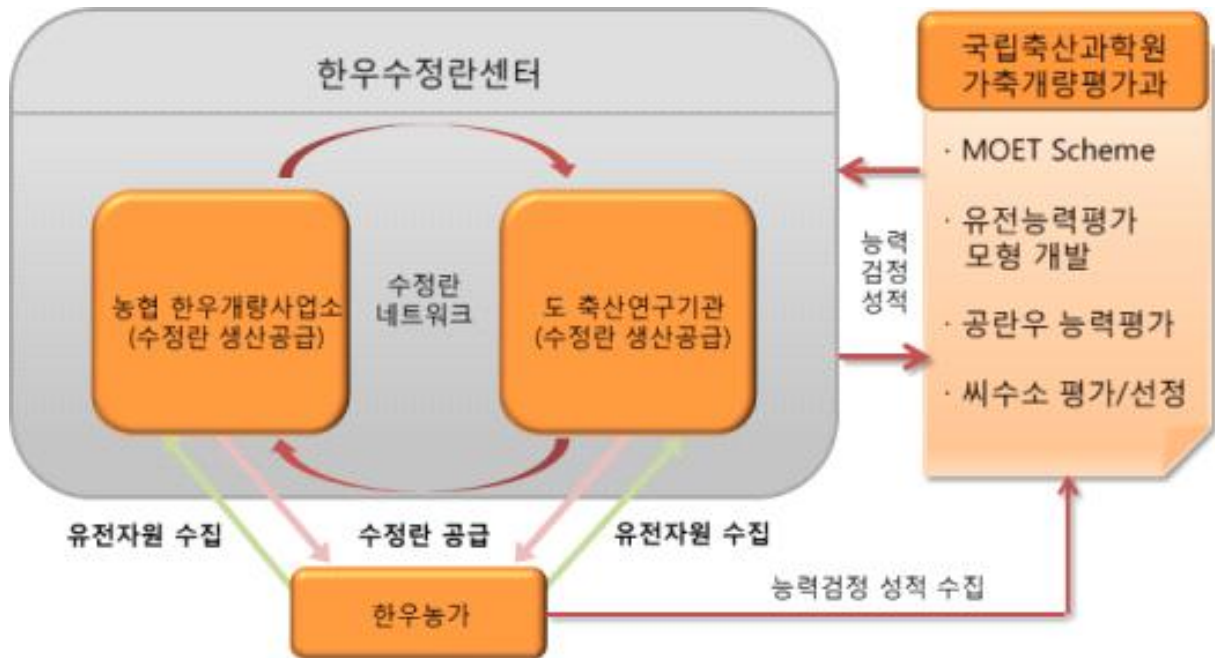
- 공란우 60두 내외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자체 확보 50두, 외부 10두 내외

□ 수정란 네트워크 구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간 수정란을 공유하는 유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정란이식으로 생산된 개체들의 능력검정 및 우량암소 확보에 활용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에서 공급한 수정란의 이력 및 참여농가별 개량목표 설정 및 정보제공

- ① 능력검정 성적과 혈통에 근거한 육종가 추정 → ② 네트워크 참여기관 및 농장 간 공유 → ③ 농장별 육종 목표에 근거한 수정란 공급 → ④ 능력검정 및 자료 취합 → ⑤ 우수 공란우 확보



< 한우수정란센터 운영체계도 >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자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사업량 및 사업비 : 1개소 400백만원
- 지원요건 : 네트워크용 수정란 생산을 위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우량암소 선발 및 수정란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관

### 나. 지원자금의 용도

- 공란우 채란 및 체내 인공수정 등에 소요되는 약품비, 수정란 관리비
- 한우수정란센터와 수정란 네트워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다. 사업추진내용

### □ 우량 암소집단 구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자체 보유축에서 유전능력의 상위 10% 이내에서 공란우 선발(50두 내외)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자체 보유축 중 우수개체 일부 활용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체성적 우수축, 각종 한우대회 입상축(입상축 생산 암소 포함), 엘리트카우(한국종축개량협회 선정축) 등을 활용하여 특정형질이 우수한 우량암소를 외부에서 확보하고 이를 수정란 생산에 활용(10두 내외)
  - 고능력 암소매입 비용 : 10,400천원/두

### □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선발한 우량암소에서 신선·동결 수정란 생산 : 1,800개(체내수정란 1,380개, OPU 수정란 420개)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추진계획에 따라 일반농가에 수정란 공급(1,540개)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ET보증씨수소 생산을 위한 수정란이식(260개)
  - 공급 형태 : 신선란(사전예약제), 동결란(수시)
    - \* 수정란 이식기술 보유, 교육 여부 등을 확인 후 공급
    -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사전예약을 위한 수정란 이력시스템 운영
  - 수정란 공급가격 : 250천원(공급수수료 포함)
    - \* 공급수수료 : 수정란 판매금액 7%(17,500원/개)

### <연차별 수정란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975	1,150	1,150	1,430	1,800	1,800

\* 수정란 공급물량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조정 가능

- 수정란 이식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수란우 200두)와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의 보유축에 자체 이식
- 농가보유 고능력 암소를 이용하여 수정란을 생산할 경우 생산량 중 49%는 농협 수정란센터에서 인수, 51%는 농가에 이식 지원
  - 지원농가수 : 10호×2두/년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농가 수정란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당해 연도 가축개량지원 보조금 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구분	사업물량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육종농가 고능력 암소매입비(공란우)	6두	8,000×1.3	62
ET 암송아지 매입비	10두	3,000×1.3	39
수정란 채란 및 이식 재료비	1,800개	141.1	254
공란우 사료비 등			45
합 계			400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비 집행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1회 이상 한우수정란센터 사업을 점검하고, 점검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하여 개선

## □ 사후관리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수정란 이력시스템에 수정란 생산, 이식, 분만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 관리
- 공란우 이용 연한 : 수정란 생산이 어려울 경우 도태
- 외부에서 매입한 암소는 능력검정을 마친후 공란우 선발여부 결정
- 우량 송아지 생산시 친자감정을 위한 DNA 시료 보관 유도
  - 공란우 DNA시료를 채취·보관하여 향후 송아지 친자감정 지원
  - 씨수소는 이미 분석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
- 수정란의 정확한 생산·이식을 통한 수태율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 □ 결과보고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수정란 생산, 공급 실적을 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3. 기타사항

### 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수정란 공급센터 구축 지원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도 축산기술연구기관(암소 유전능력평가가 가능한 기관) 보유축 상위 10% 이내 암소에서 생산된 일정량의 수정란을 교환
- 기관 간 수정란 기술 표준화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1회/년)

### 나. 암소능력검정 시스템 구축 및 평가방법 도입

- 수정란 이식 송아지의 유전능력평가로 고능력 암소 발굴 기여
- 우량 암소 발굴을 통한 Elite-cow 집단 계통조성

#### 다. 한우 OPU 수정란 동결기술체계 확립

- 목적 : OPU 수정란 생산의 안정성을 위한 배양 및 동결기술확립
- 기대효과
  - 한우수정란 이용효율 확대
  - 생체난자흡입술(OPU) 체외수정란의 수정란 이식을 통한 당대검정용 송아지 생산

#### 라. 수정란 세포를 이용한 SNP분석

- 목적 : 수정란 단계에서 SNP분석을 통한 유전체선발
- 기대효과
  - 수정란 이식을 통한 한우개량 경쟁력 확보
  - 유전체 선발 이용 확대



②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도 축산관련연구기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과 우량암소 난자를 이용해 고능력 수정란을 생산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다량으로 생산·공급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이 고능력 수정란 생산·공급 기반을 갖추고, 축협 생축장 및 농가에 공급하여 우량 암송아지를 확대 생산
    - \* 수정란 이식기술 활용하여 지자체 및 지역축협 생축장을 통해 농가단위 암소개량을 체계적으로 지원
- 수정란을 이용한 암소개량으로 한우의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사업기간 : 계속사업('16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2,862	2,862	2,862	2,862	20,034
- 보 조	1,431	1,431	1,431	1,431	10,017
- 용 자	-	-	-	-	-
- 지방비	1,431	1,431	1,431	1,431	10,017
- 자부담	-	-	-	-	-

## 라. 사업추진체계

### □ 사업주관기관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우량 암소 확보 및 사육시설 구비, 수정란 생산·공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전반적인 기능 구축
  - \* 우량암소 구입, 사육시설, 수정란 채란 및 검사시설, 수정란 생산 기구 및 장비
  - \* 필요시 관할지역내 시·군 또는 지역축협,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능·역할을 분담 가능
- 도 단위 공란우 선발 및 우수 수정란 생산·공급
  - 우량 암소를 확보\*, 수정란을 생산하여 축협 생축장 및 규모화된 암소 사육농장에 공급
    - \* 수정란 생산을 위한 우량암소 선정은 현행 육종농가 및 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의 유전능력을 평가받은 암소를 대상으로 확보

### □ 협조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유전능력 평가 및 고능력 암소 발굴·선발 지원
- 농협 가축개량원 : 공란우 매입지원(농협 보유축 또는 검정농가 암소 매입 협조) 및 수정란 생산·이식 관련 정보 및 교육 지원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 사업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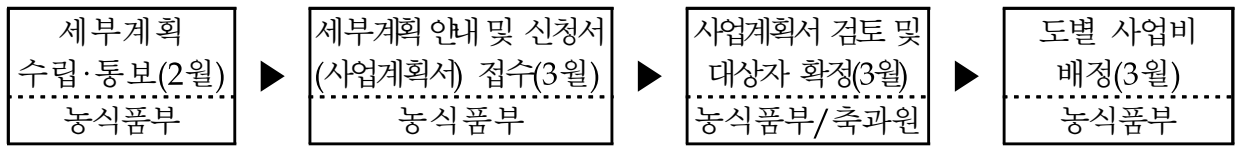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한우개량기관)

#### □ 사업량 및 사업비 : 9개소 1,431백만원(개소당 159백만원)

#### □ 지원요건 : 수정란 생산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지역축협 생축장 및 농가에 수정란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

- 수정란 생산을 위한 인력, 암소(공란우) 사육장 및 채란시설·장비 확보
  - \* 일부 미흡한 사항은 지원 자금 및 자체 사업비를 이용하여 보완 가능

## □ 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 단계>

####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지원요건 및 절차, 지원단가 등에 대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에 통보

\*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한우개량기관과 사전협의, 필요시 세부사업계획 (사업규모, 공란우 기준 및 확보방법 등) 및 평가기준을 수립·통보

####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도(축산관련연구기관)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시 도 축산관련 주무부서(축산과)와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

### < 사업대상자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예산확보 및 사용계획 등을 검토·선정

\* 사업규모, 수정란 생산·공급기반, 공란우 기준 및 확보방법 등

-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협의회 전문가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

### < 사업대상자 통보>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에 사업자 선정여부를 통보

- 미선정된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에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해당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은 1회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보완·제출할 수 있음



## 나. 지원자금의 용도

- 우량암소 확보, 수정란 생산·공급에 필요한 시설비, 장비구입비, 재료비 및 수용성 경비 등

\* 우량암소 구입, 사육시설, 수정란 채란 및 검사시설, 수정란 생산 기구 및 장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성 기자재, 공란우 이용비, 기타 수용성 비용

## 다. 사업추진내용

### □ 수정란 생산용 우량암소 축군 및 사육시설, 수정란 생산·공급에 필요한 시설 확충

- 연간 600개 수준(사업추진 후 2년내)의 수정란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암소 사육시설과 수정란 생산·공급 시설을 확충

- 관할지역내 시·군 또는 지역축협,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정란 생산·공급 시설 기능 및 역할을 분담 가능

- 우량 공란우 암소축군 확보 : 30두

- 자체 보유축,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농가(육종농가, 암소검정농가)에서 유전능력의 상위 30% 이내에서 공란우 선발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체성적 등을 활용하여 특정형질이 우수한 우량암소를 외부에서 확보하여 공란우로 활용 가능

- 각종 한우대회 입상축 및 입상축 생산우 및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선발된 암소활용가능

### □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우량공란우에서 생산된 수정란(신선 또는 동결) 생산·공급 : 연간 600개

\* '16~'17년 수정란 생산·공급기반 구축, '18년도부터 600개/년 생산 보급 목표

\* 우량공란우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3) 정액등처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며 도체성적 중 육질등급 1등급과 도체중 350kg이상을 만족하거나 개체유전능력(종개협 제공) 중 육종가 코드 B등급이 2개 이상인 개체

- 수정란은 가급적 어미 및 아버지의 정보가 확실한 생식세포(정

액 및 난자)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부모의 정보가 불확실하면 유전적인 검사를 통하여 부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가의 친자확인 요청시 친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으로 생산된 송아지는 친자감정을 실시한 후 그 자료를 송아지가 생산되어 혈통등록시까지 보관할것
- \* 수정란 생산에서 송아지 생산까지 일련의 성과(수정란자체 생산두수, 우수공란 우 이용여부, 이식두수, 분만송아지두수 및 친자감정 등)를 평가할 계획

##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재원 : 축산발전기금(국고 1,431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시·도, 시·군비) 50%로 지원

\*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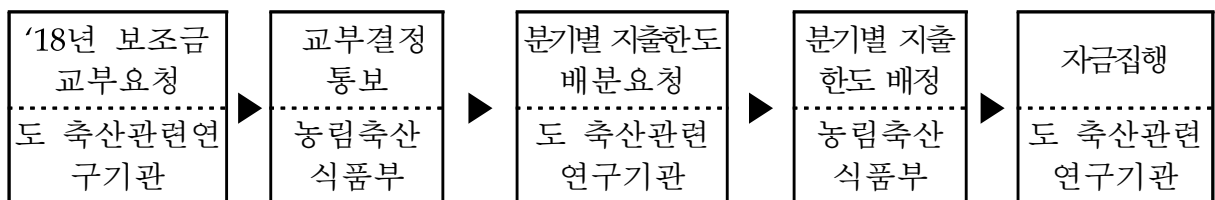
구분	사업물량	단가(백만원)	사업비(백만원)
한우 수정란 생산·공급 지원	9개소	159	1,431

##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 자금배정·집행

○ 분기별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출한도 배분을 승인받고,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 운용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 필요시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협 가축개량원 협조
  - 현장점검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제재사항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사항	보고 기 한	서 식
○ 사업추진실적	2020년 1월 까지	자체서식
○ 정산보고	2020년 2월 까지	자체서식

<서식 1>

##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 신청서

1. 사업자(도 기관명) : (인)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사업담당	기관장	부서장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2. 사업추진기관 현황

#### 가. 일반현황

- 조직 및 인력 :
- 주요 업무 :
- 토지, 건물, 가축 등 보유현황 :

####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사업참여 암소 :
- 우사 :
- 수정란시설 및 장비 :
- 수정란 제조 담당자 및 인력 :  
\* 해당여부 및 간략한 현황을 기재

#### 다. 암소 보유현황

구 분		계	성우	육성우	송아지
암	3대 이상				
	2대				
	당대				
수					
합 계					

라. 우사현황

시 설 명	동수	면적(m <sup>2</sup> )	적정사육 두수	내 용
공란우우사				

라.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위·직급	학위	전 공	담 당 업 무	비고

마. 수정란채취 및 제조시설

- 수정란 채취시설 규모 :
- 수정란 제조 장비 및 기자재 현황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규격(ℓ)	주용도	보존능력 (수량)

3. 사업추진 계획

가. '18년 사업비

- 한우개량 분야 사업비
- 수정란 생산·공급분야 사업비

나. 시설보완 계획

- 우사, 수정란 제조시설 시설 등 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추가 확보·보수 계획을 기재

다. 장비 확보

- 검정 및 정액제조 장비, 사료섭취량 측정기, 초음파 진단기 등 고능력 축군조성사업과 관련된 장비 구입 및 확보계획을 기재

다. 공란우 확보 및 추가 도입계획

- 공란우의 능력기준 및 검정방법
- 공란우 현재 두수
- 추가 입식두수

라. 수정란 생산 및 공급계획

- '17년 실적 및 향후 생산계획

연 간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19년	'20년	'21년 이후
생산량(계획)						
보급(이식)량						

- 공급계획
  - 공급대상 및 물량

마. 기타

- 관할지역내 시·군 또는 지역축협,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정란 생산·공급 시설 기능 및 역할을 분담할 경우
  - 네트워크 구성내용, 기관별 역할과 기능, 예산투여 등

## 5 |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우수한 한우 수정란 이식을 통한 지역단위 우량암소 축군 조성으로 농가 암소개량을 촉진하고 소득 증대
- 우량 암소(Elite Cow) 수정란 이식으로 지역 암소개량군의 유전능력을 조기에 향상시키고, 생산된 우량 암송아지를 농가에 보급하는 기반 구축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15,000	9,000	9,000	6,000	30,000
- 보조	-	-	-	-	-
- 융 자	15,000	9,000	9,000	6,000	30,000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라. 사업시행 및 추진체계

- 사업주관(시행)기관 : 농협 축산지원부
- 협조기관
  - 지자체 : 우량암소 확보 및 우수 수정란 공급(무상), 지역축협 지도(수정란 이식 및 수란우 사양관리 교육 등),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및 사후관리 등
  - 지역축협의 우량 공란우 활용 방식도 가능

###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사업 체계도



\* 본 사업은 지역축협 생축장의 우량암소 축군 형성단계까지 집중 관리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협

□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수 수정란을 이용한 지역 암소개량군 기반구축을 위해 사육 시설과 사육장을 확보해야 함
  - 사육장 : 암소(12개월령) 100두 이상 사육계획이고, 생축장내에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 보유
  - 사육 시설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육장
- 우량 수정란 확보 : 가능한 관할지역 지자체로부터 우량 수정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함
  - \* 단, 자체적으로 우량 수정란을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업체(연구소, 대학 등)를 통해 수정란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자료 관리 :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
- 질병관리 : 12개월령 이상 암소에 대해 질병검진 항목(브루셀라병, 우결핵병, 구제역)의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판정



## □ 지원자금의 용도

○ 수란우 입식비, 수정란 이식 관련 비용, 수란우 및 ET송아지 사양비, 친자확인비, 사육시설, 인건비, 소모성 기자재, 기타 수용성 비용 등

\* 국비가 지원되어 생산된 수정란(농협, 지자체 생산)의 구입비는 사용불가

\* 자체 수정란 생산조합은 공란우 입식비·사양관리비, 수정란 생산(구입) 비용, 수정란 생산 기자재비 등 포함

○ 주요 지원내용

항 목	세부 내용
수정란 이식비 (수란우)	수정란 이식에 필요한 발정동기화 비용, 이식비 등
번식우 입식비	질병이 없고 생식기 문제가 없는 소는 일반가격의 130% 수준에서 구매
번식우 사양비 (수란우)	사료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방역비용 등 일반제비용
송아지 사양비	사료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방역비용 등 일반제비용
수정란 채란비 (공란우)	암소 임대비 포함 * 지역에서 우수암소를 선발하여 임신시키지 않고 수정란을 채취함에 따라 암소농가에 사료비 또는 송아지 생산비용 등을 지불

## □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액 : 6,000백만원((예)3,000백만원 × 2개소)

\* 단, 조합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3,000백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

○ 지원형태 : 융자 100%(3년거치 일시상환, 지원금리 연 2%)

<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대상 선정계획 (개소)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계
조합수	3	4	4	2	2	2	2	2	2	23

○ 계획교배용 정액 우선배정 : 수정란이식 두수에 따른 차등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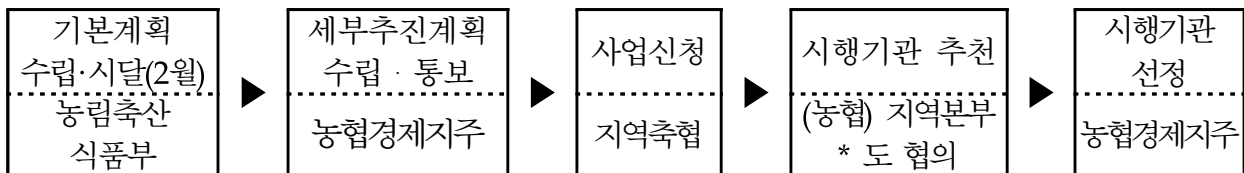
구 분	50두 이하	51~100두	101두 이상	비 고
두(수량)	5개체(50Str)	7개체(70Str)	10개체(100Str)	씨수소1두당10str

## □ 유의사항

○ 본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집행액은 인정되지 않음

##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 사업대상자(시행기관) 선정



### ○ 사업 참여 신청

- 사업참여 희망 지역축협은 지역단위 한우암소개량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관할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 제출('19.2월)
- 지역본부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1개 지역축협을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 추천('19.2월)

### ○ 사업대상자 선정

-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축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기관을 선정

\* 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 해당 도, 선정위원 등

- 선정시 사업기반(한우암소검정사업 평가, 전문인력 보유), 사업규모(암소 보유두수, 수정란 확보계획), 사육환경(두당 번식우사 면적, 별도 분만우사·송아지방·환우방, 방역시설 보유 등) 등을 평가

\* 선정위원(농협, 외부전문가) 출장비, 심사수당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통보('19.3월) :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는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및 해당 지역축협(2개소)에 선정사실 통보

## 마. 자금배정

###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 축산발전기금사무국)와 정책자금 대출 취급기관(NH농협은행)에 자금배정 통보

### □ 농협경제지주 : 해당조합에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을 확정 통보

### □ 사업대상자 :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에 대출 신청 및 차입

##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이행점검

- 농협은 도의 협조를 받아 점검반(도, 농협경제지주 등)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에 대해 연 1회 현지점검 실시

###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 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농협은 사업기관의 업무중지,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사업물량의 변경, 선정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해당 시행기관 및 시·도, 시·군에 알림

### □ 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 연간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까지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 농협경제지주 : 연간 사업실적을 다음해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3. 기타사항

###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사업종합평가

- 평가 기관 : 농협경제지주
- 평가 시기/기간 : 차년도 2월 실시, 전년도 1월 ~ 전년 12월
- 평가방법 및 배점 : 주관기관에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시달

○ 평가에 따른 환류 :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개정시 반영

□ 만족도 조사

○ 조사 기관/시기 :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 자금상환연도 1회 실시

○ 농협경제지주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서식1]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시행기관용 )

1. 조합명 :

\* 주소 :

2. 사업 목적

- 우수한 한우수정란 이식을 통한 지역단위 우량암소 축군 조성으로 암소개량을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

3. 자금 신청액 : 3,000백만원 이내

- 지원형태 : 융자 100%, 3년거치 일시상환, 지원금리 2%

4. 사업기간 : 2019 1. 1 ~ 2021. 12. 31(자금 배정일부터 3년간)

5. 사업비 사용방법

-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수행

※ 붙임 :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계획서

20    년        월        일

시행기관 :    ○○축협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 귀하

# (붙임) 2019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계획서 (○○축협)

담당자 : ○○○ (전화 :                    )

## 1. 지역축협 현황

### ① 한우사육 현황

관내 한우농가수 (명 / '18년말 기준)				관내 한우사육두수(두/ '18년말 기준)		
번식	비육	일관사육	계	번식암소	비육우	계

\* 한우조합원수('18년말) :            명

\* 관내 한우사육두수의 비육우는 암소비육 포함

### ② 기반사업 실시 현황

구 분	내 용
한우암소검정사업 (한우개량사업소)	◆ 사업참여 기간 : ○년 (○○~○○년) ◆ 2018년 사업 실적 - 참여농가 :     호 / 관리두수 :     두 * 관리두수 중 조합 생축장 두수 :     두 - 평가결과 :    위/전체 ○○조합
한우육종농가사업 (한우개량사업소)	◆ 사업참여 기간 : ○년 (○○~○○년) ◆ 2018년 사업 실적 - 참여농가 :     호 / 관리두수 :     두 * 관리두수 중 조합 생축장 두수 :     두
기타 사업	◆ ◆

## ② 생축장 현황

\* 작성방법 : 해당항목 기입 또는 밑줄 표시

구분	내용	
사업장	◆ 주소 :	
	◆ 축산업 등록번호 :	
	◆ 부지 :	m <sup>2</sup> (방목장 m <sup>2</sup> )
	◆ 건물 :	m <sup>2</sup> (축사 m <sup>2</sup> , 분뇨처리사 m <sup>2</sup> , 사무실 m <sup>2</sup> )
사육규모 (17년말)	◆ 사육규모 : ○○○두 (번식우 ○○○두, 비육우 ○○○ 두)	
	◆ 가임암소 구성(1세이상) : 미경산우 ○○○두, 1산 ○○○두, 2산 ○○○두, 3산 ○○○두, 4산 ○○○두, 5산 이상 ○○○두 ⇒ 계 ○○○두	
	◆ 비육우 구성 : 암소비육 ○○○두, 거세우(수소포함) 비육 ○○○두	
축사구조	◆ 우군별 분리사육 현황 - 번식우사, 번식우 육성우사, 암소비육사, 거세우 비육사, 격리사, 기타( )	
	◆ 번식우사 규모 : ○○○동, ○○○평, 두당 사육면적 ○○m <sup>2</sup>	
	◆ 번식우사 구조 - 지붕 : 썬라이트(고정식, 개폐식), 기타( ) - 벽면 : 전체 원치커튼, 하부 콘크리트+상부 원치커튼, 콘크리트 밀폐, 기타( )	
	◆ 번식우사 운영 - 번식우사 분만우사, 대기우사 구분 운영 여부 : 여, 부 - 번식우사 송아지방 구분 운영 여부 : 여, 부	
방목장	◆ 방목장 운영여부 : 여, 부 - (운영시) 방목시기 : 1년 내내, 한시적(○~월, ○~월), 기타( ) - (미운영시) 미운영 사유 :	
종사자	◆ 조합의 생축장 직접 종사인력 : ○명 (정규직 ○, 비정규직 ○) ◆ 조합의 간접 지원인력 : 수의사 ○명, 인공수정사 ○명, 기타( ) ◆ 외부 활용인력 : 수의사 ○명, 인공수정사 ○명, 기타( )	
번식우 질병관리	◆ 브루셀라	
	◆ 우결핵	
	◆ 구제역	
	◆ HACCP	인증여부 : 인증, 미인증 / 인증시 최초 인증년도 : ○○○○년
	◆ 방역시설	보유현황 :
	◆ 기 타	

## 2.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추진 계획 (3개년)

구분	추진 계획	
1년차 (2019년)	수란우 확보 및 육성	◆ 두수 : ◆ 수란우 확보 방법 (1) 기존 생축장 번식암소 활용 ( )두 (2) 외부 번식암소 구입 ( )두 (3) 기존 생축장 번식암소 활용 ( )두 + 외부 번식암소구입 ( )두
	수정란 이식 및 임신 (해당시 작성)	◆ 수정란 확보 ( )개 / 수정란 이식 ( )개 ·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 지자체 공급 ( )개, 자체 확보 ( )개 * 자체 확보 세부내역 :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 )
2년차 (2020년)	수란우 보유	◆ 두수 :
	수정란 이식 및 임신	◆ 수정란 확보 ( )개 / 수정란 이식 ( )개 ·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 지자체 공급 ( )개, 자체 확보 ( )개 * 자체 확보 세부내역 :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 )
	1년차 수정란 이식송아지 생산	◆ ET송아지 생산 : ( )두 ◆ ET송아지 친자확인 : ( )두
3년차 (2021년)	수란우 보유	◆ 두수 :
	수정란 이식 및 임신	◆ 수정란 확보 ( )개 / 수정란 이식 ( )개 ·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 지자체 공급 ( )개, 자체 확보 ( )개 * 자체 확보 세부내역 :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 )
	2년차 수정란 이식송아지 생산	◆ ET송아지 생산 : ( )두 ◆ ET송아지 친자확인 : ( )두



**(첨부) 한우암소(수란우) 보유 내역 (기준일 :            )**

순번	개체식별 번호	종축 등록번호	등록 구분	생년월일	계 대	부명호	모번호	산차	분만일	비고
							개체식별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등록구분은 미등록, 기초, 혈통 및 고등으로 표기
- \* 한우 암소 보유내역은 질병검진을 마친 암소의 내역과 동일해야 함

## [서식 2]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구분	사업 실적	
1년차 (2019년)	수란우 확보 및 육성	◆ 두수 : ◆ 수란우 확보 방법 (1) 기존 생축장 번식암소 활용 (     )두 (2) 외부 번식암소 구입 (     )두 (3) 기존 생축장 번식암소 활용 (     )두 + 외부 번식암소 구입 (     )두
	수정란 이식 및 임신 (해당시 작성)	◆ 수정란 확보 (     )개/수정란 이식 (     )개 ·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 지자체 공급 (     )개, 자체 확보 (     )개 * 자체 확보 세부내역 :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     )
	사업비 집행	◆     백만원
2년차 (2020년)	수란우 보유	◆ 두수 :
	수정란 이식 및 임신	◆ 수정란 확보 (     )개/수정란 이식 (     )개 ·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 지자체 공급 (     )개, 자체 확보 (     )개 * 자체 확보 세부내역 :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     )
	1년차 수정란 이식송아지 생산	◆ ET송아지 생산 : (     )두 ◆ ET송아지 친자확인 : (     )두, 일치율 (     )%
	사업비 집행	◆     백만원
3년차 (2021년)	수란우 보유	◆ 두수 :
	수정란 이식 및 임신	◆ 수정란 확보 (     )개/수정란 이식 (     )개 · (     )두 ◆ 수정란 확보 방법 - 지자체 공급 (     )개, 자체 확보 (     )개 * 자체 확보 세부내역 : 자체 생산, 외부 구입 (외부 구입시 구입처 :     )
	2년차 수정란 이식송아지 생산	◆ ET송아지 생산 : (     )두 ◆ ET송아지 친자확인 : (     )두, 일치율 (     )%
	사업비 집행	◆     백만원

※ 붙임 : 지원사업 실적서 및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시행기관 :    ○○축협 (인)

**(붙임)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지원사업 ○년차 실적서 (○○축협)**

**1. 사업비 집행실적 세부내역**

\* 증빙자료 첨부

구분	세부항목	집행액 (천원)
번식우 시설비	사육시설	
	소모성 기자재	
	임차료	
번식우 입식비	번식암소 및 암송아지 입식비	
번식우 사육비	번식암소 및 송아지 사육비	
수정란 생산 및 이식비	수정란 채란비	
	발정동기화 약품비	
	이식 시술비	
인건비	전담직원	
	동물병원장	
	지도계	
한우 개량	암소검정사업 자부담	
	개량(번식) 교육·컨설팅, 번식농가 지원	
	저능력암소 도태지원, 인공수정 지원	
	한우관별사업, 친자확인, 혈통등록	
	가축시장 혈통등록 송아지 거래 금액	
기타	기타사항	
합계		

## 2. 한우암소(수란우) 보유 내역 (기준일 :            )

순번	개체식별 번호	중축 등록번호	등록 구분	생년월일	계대	부명호	모번호	산차	분만일	비고
							개체식별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등록구분은 미등록, 기초, 혈통 및 고등으로 표기

\* 한우 암소 보유내역은 질병검진을 마친 암소의 내역과 동일해야 함

### 3. 수정란 이식(임신) 기록 관리

No	수란우 개체식별 번호	이식일	공란우 명호	KPN	수정란 번호	스트로 마커 (수정란정보)	임신 감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스트로마커 : 수정란 스트로 앞부분의 실링 플러그(수정란정보)를 붙임

\* 기타 일반 인공수정 분만송아지도 동일하게 기록관리 (권고사항)

## 4. ET송아지 분만 기록 관리

No	수란우 개체식 별 번호	ET송아지 개체식별 번호	이식 일	분만 일	성 별	생시 체중	분만 형태	수정란 번호	공란우 명호	KPN	이모색	비경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분만형태는 정상, 난산 등으로 표시

\* 이모색, 비경색은 정상, 이상유무를 표시

\* 기타 일반 인공수정 분만송아지도 동일하게 기록관리 (권고사항)

## 5. ET송아지 친자확인 내역

No	수란우 개체식별 번호	ET송아지 개체식별 번호	수정란 번호	공란우 명호	KPN	성별	친자확인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젯 소 개 량



## 6

## 젖소(씨수소) 개량사업 지원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사업량 : 도입우 3두 내외, 후보씨수소 35두, 보증씨수소 5두 선발 및 정액공급
- 사업비 : 9,006백만원(보조 8,006/자부담 1,000)
- 젖소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으로 개량하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우량정액을 생산·공급하고, 순종 개량방법으로 젖소능력을 향상
- FTA를 대비하여 젖소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 국산 젖소유전자원 수출로 국내 축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8,908	9,731	8,962	9,006	9,006
- 보조	8,471	8,831	8,035	8,006	8,006
-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437	900	927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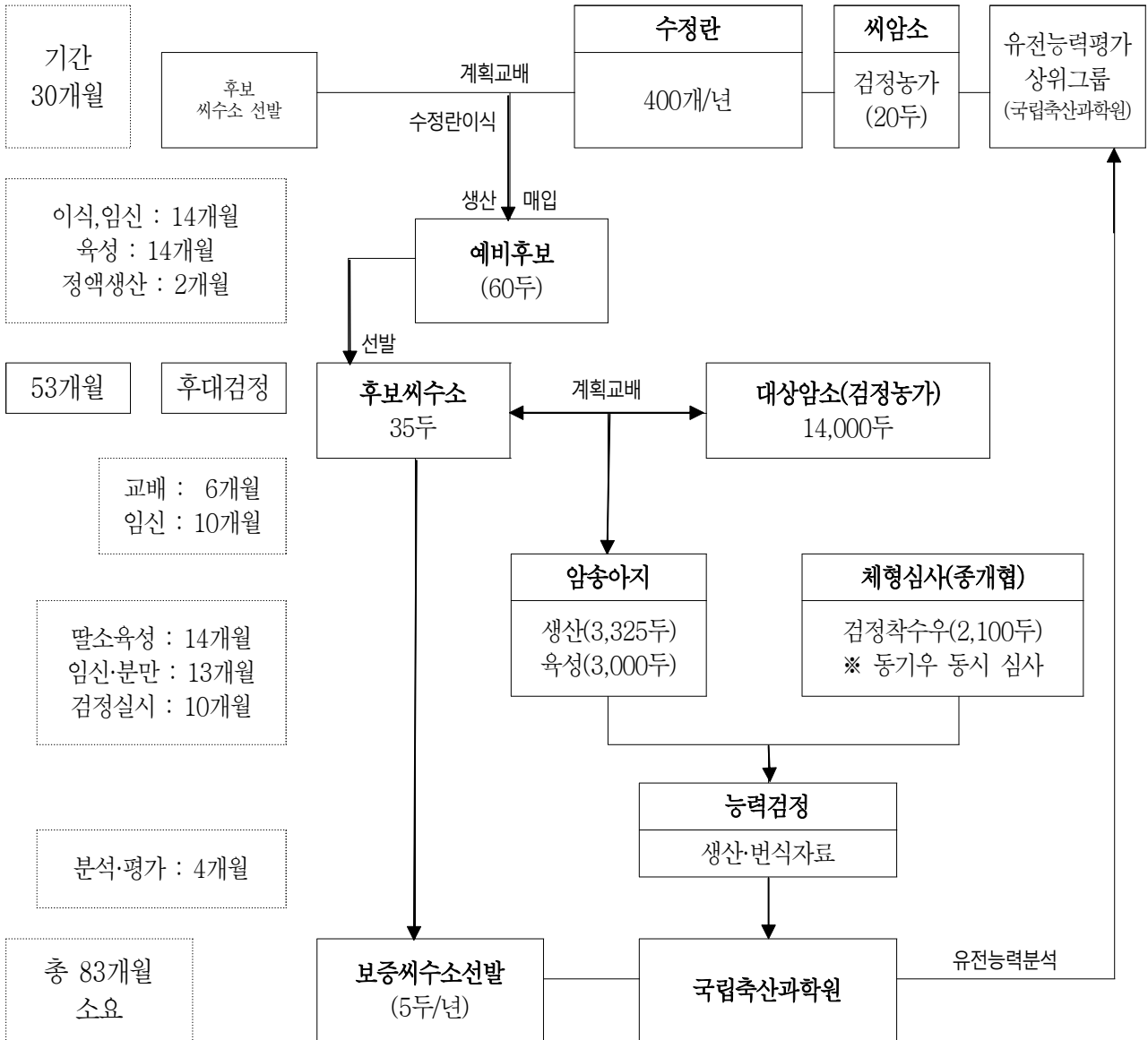
\* 자부담은 농협 인건비 부담액으로 경영여건에 의해 변동이 가능함

\*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포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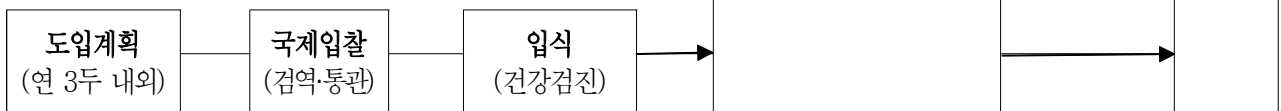
##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 마. 사업추진체계

[ 한국형 씨수소 ]



[ 도입 씨수소 ]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사업대상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지원요건

-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당·후대검정 사업을 실시하여 우량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량 씨수소의 정액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관

###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젓소능력검정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일부 보조지원
- 젓소정액 생산·공급
- 검정사업(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을 통하여 보증씨수소 선발
- 외국산 보증씨수소 도입 등 국가자산의 취득 및 유지 관리

### 다.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용 :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 정액생산·공급 및 수출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 내용

#### 〈 후보씨수소 선발 〉

- 젓소육종농가 사업을 통해 추진
- 도입한 고능력 수정란을 국내 청정육종농가 암소에 이식하고 생산된 송아지 중 수송아지(3~7개월령)를 예비 후보씨수소로 확보

- 청정육종농가에서 질병검진 및 심사 후 매입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예비후보씨수소의 당대검정기록, 선대 능력, 외모심사 점수, 발육상태, 정액성상 등을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협의회 협의를 거쳐 후대검정에 공시할 후보씨수소 선발
  - 젓소개량사업소는 친자감정을 위하여 후보씨수소의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국립축산과학원 및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교차 검증)하고 정보공개

### 〈 후대검정 〉

- 사업량 : 후보씨수소의 딸소 약 2,000두
- 사업비 : 324백만원
- 유우균능력검정농가 중 후대검정 참여농가의 교배암소에 후보씨수소 두당 400두(800str 내외) 이상 교배
  - 목적 : 청정육종농가가 생산한 후보 씨수송아지의 정액으로 생산된 딸소의 유전평가를 위한 검정자료 생성
  - 후대검정참여 농가자격 : 유우균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중 미경산우를 포함한 전체 암소 중 부모를 아는 개체의 비율이 70% 이상인 농가
  - 신청방법 : 후대검정 참여자격 농가 통보 → 사업참여 신청(온라인) → 사업추진
  - 사업추진 : 후보씨수소 정액공급 → 농가 사용 및 딸소 생산 → 유우균 검정사업 참여 → 검정결과 산출 → 후보씨수소 유전능력평가 → 보증씨수소 선발

- 후보씨수소의 정액으로 생산된 딸소의 등록 및 능력검정 실시  
(후보씨수소 1두당 딸소 검정성적 35두 이상 실시)
- 후보씨수소 정액으로 생산된 딸소 및 동기군에 대한 외모심사  
(30개월령) 실시(약 10,000두)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유우군능력검정 결과를, 한국종축개량  
협회는 혈통정보와 외모심사 성적을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단위 젖소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가  
축개량협회의 심의를 거쳐 보증씨수소 선발(매년 5두, 6월,  
12월에 실시)
- 한국형 보증씨수소 연차별 선발계획

연 도	'15	'16	'17	'18	'19
선발두수	3	3	5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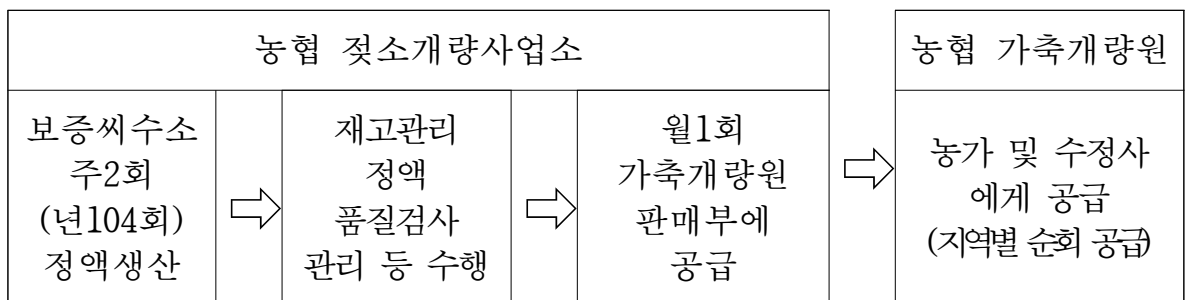
### 〈 젖소정액 생산 및 공급 〉

- 사업량 : 약 380천str/년
- 사업비 : 4,944백만원(인건비, 운영비 등 공통비용 포함)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전국 사육규모, 인공수정실적 등을 바  
탕으로 정액수요를 예측하고 재고상황 및 보증씨수소 수급계획  
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을 생산
  - 기초자료(젖소 총 사육두수, 가임암소 두수, 개체별 정액재고)  
를 바탕으로 연간 생산량을 계획하고 정액 수급상황, 수요도  
에 의거 월별 정액채취 우선 편성
  - 보증씨수소는 낙농선진국으로부터 고능력 보증씨수소 도입 및  
후대검정을 통한 한국형 보증씨수소 선발로 수급

- 대외 수출용 정액생산을 위한 보증씨수소도 별도로 선발 가능 (필요시)

- 생산된 정액은 정액성상 및 활력 등을 매일 검사하고, 보관 분 (창고보관 및 유통정액)에 대해서는 년 2회 품질검사 실시
- 동결된 정액은 개체별 500str 단위로 포장하며 제조실의 재고가 일정량 이상 누적 시 공급창고로 이관
- 공급창고에 보관된 정액은 전국의 수요를 감안한 가축개량원 판매부의 공급요청에 의해 가축개량원 판매부로 공급, 판매부는 지역별 정액판매 담당자를 통하여 농가 및 인공수정사 등에게까지 안전하게 공급
- 농가 등에 공급되는 정액은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유전적 결함 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

※ 젖소정액 생산 및 공급 절차



〈 보증씨수소 도입 〉

- 사업량 : 3두 내외(조정가능)
- 사업비 : 1,134백만원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국내 정액수급상황과 젖소사육두수를

고려하여 낙농선진국으로부터 고능력 씨수소의 도입 두수를 정하고 도입 계획을 작성

- 도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국제 공개경쟁입찰 시행

- 국제경쟁입찰 공고실시 및 구매대상기관 등에 구매안내서 발송
- 젓소개량사업소에서는 자체 도입 심의회를 거쳐 국제입찰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씨수소의 해외 유전능력·정액생산능력·질병 등 평가자료 검토(종축 수입기준 이상으로 충족된 개체)
- 자체도입심의회에서 검토된 도입대상우를 개량기관 및 농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예비도입우를 선정
- 젓소개량사업소는 도입대상 보증씨수소에 대한 현지 심사를 실시(입찰관련 서류 대조, 개체 확인, 건강상태, 진료 및 질병 검사 기록, 성욕 및 정액성상 검사, 발굽 검사, 방역관련 시설 점검 실시)
- 젓소개량사업소는 입찰 관련 자료와 현지 개체 건강상태 및 능력평가 자료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유전능력 평가 자료 검토
-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협의회 개최를 통해 최종 도입 대상우 선정
- 젓소개량사업소는 최종 도입대상 선정우 중 종합성적 및 특장점, 국내 낙농가 선호도, 국내 정액 판매 유무, 예산 등을 검토하여 수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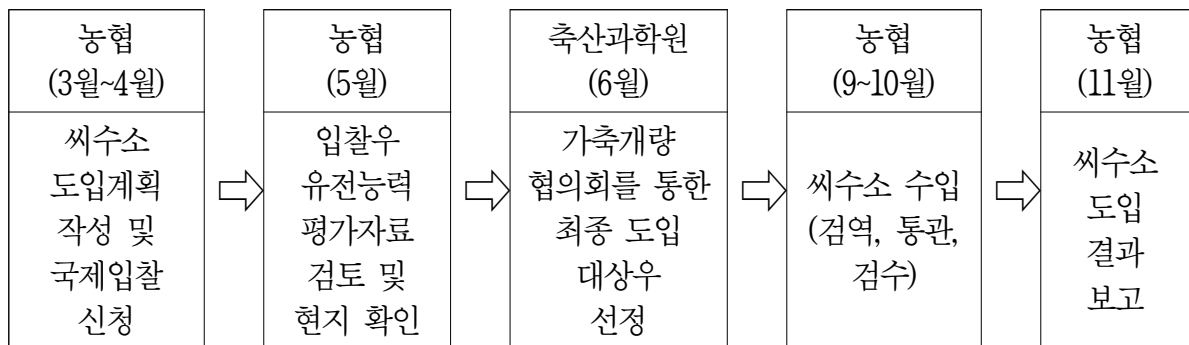
○ 씨수소 수입 및 최종 검수

- 젓소개량사업소는 수입허가 신청 및 수입사전 신고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씨수소의 수입검역 실시(15일)
- 젓소개량사업소는 입식된 씨수소에 대해 최종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지급

○ 씨수소 최종 도입 결과 보고

- 젓소 보증씨수소 최종 도입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에 그 결과를 보고

※ 고능력 젓소보증씨수소 도입절차



< 젓소 정액 및 수정란 수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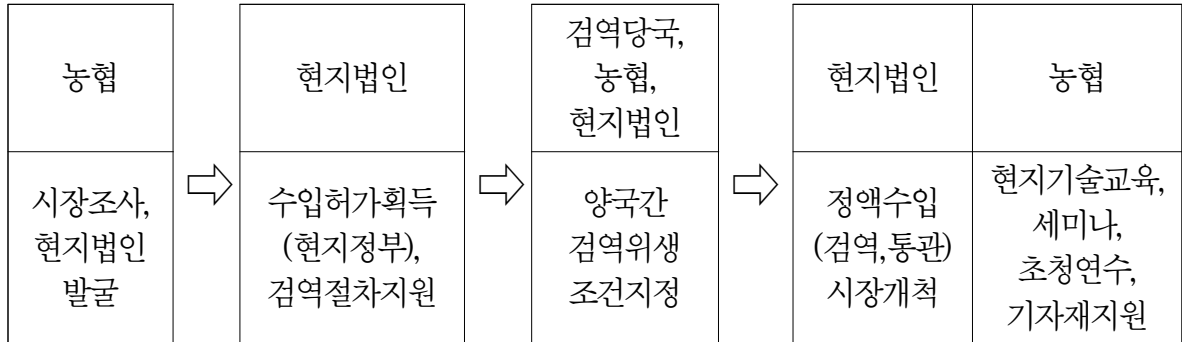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국산 젓소정액 및 수정란 수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대상국 현지홍보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

- 국제유전평가를 통해 증명된 국산정액의 객관적 우수성을 수출대상국 홍보에 활용
- 홍보를 위한 현지 기술교육(개량, 번식) 및 세미나 개최
- 수출대상국 낙농가 및 정책관련 공무원 등 초청연수
- 수출 촉진을 위한 각종 기자재(정액보관용 컨테이너, 인공수정 기자재 등) 및 운송비 등을 현지지원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국산 젓소정액 및 수정란 수출이 성사된 국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산업계 및 학계와 연계하여 국내 축산업의 동반진출에 협조

※ 젓소정액수출 절차



< 기타 >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구체적인 개량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019년 예산내역(안)

(단위 :백만원)

구분	항목	보조	자부담	합계
	합계	8,006	1,000	9,006
민간 경상보조	□ 젓소개량	6,685	1,000	7,685
	○ 인건비	2,123	1,000	3,123
	○ 운영비	4,562	-	4,562
	-급식비	7	-	7
	-피복비	7	-	7
	-수용비	2,025	-	2,025
	-여비	126	-	126
	-시설장비 유지비	206	-	206

	-재 료 비	1,538	-	1,538
	-업무추진비	34	-	34
	-회의진행비	35	-	35
	-제세공과비 등	389	-	389
	-인건비성복리후생비	195	-	195
자산 취득비	<input type="checkbox"/> 짓소개량	<b>1,321</b>	-	<b>1,321</b>
	o 기계장치	126	-	126
	o 가축	1,134	-	1,134
	o 차량운반구	53	-	53
	o 공구기구비품	8	-	8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년도 가축개량지원 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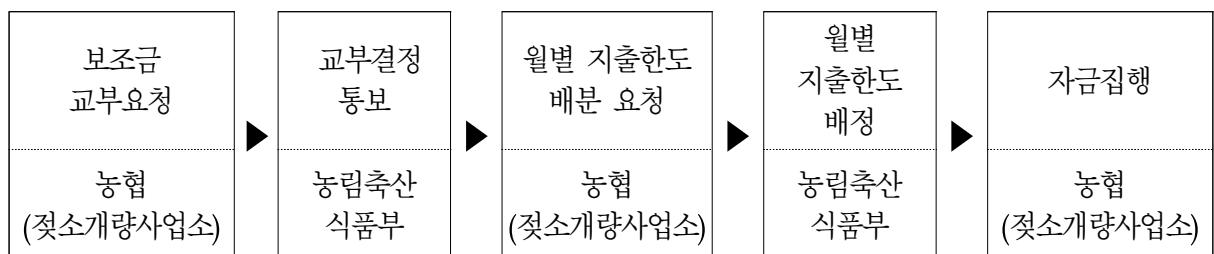
#### 마. 자금배정 및 집행

근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절차

○ 농협 가축개량원·짓소개량사업소는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출한도 배분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농협 촉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

#### ○ 자금집행 단계



##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사후관리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젓소 씨수소 및 정액생산 관리 철저
  - 보증씨수소 및 후보씨수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발생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질병검사 강화 등 조치를 취할 것
  - 한국형 젓소 씨수소 정액생산 관리방안 마련·운영
    - 적정 관리기간 설정 및 운영으로 무분별한 장기간 사육 방지
    -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등 대비 적정 재고관리
    - 사고축 발생에 대비한 위험보장 장치 마련
    - 국내산 정액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국내선발 보증씨수소의 신뢰도 증대를 위한 사업 시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젓소개량사업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고 사항	보고 기 한	서 식
○ 젓소능력검정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말일까지	<서식 1>
○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 3. 기타사항

####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협 짓소개량사업소가 추진한 검정사업 및 짓소정액 생산·공급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 부실방지, 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대상 : 짓소 당·후대검정, 정액 생산·공급 사업
  - 평가항목 : 검정사업(후보우선발두수, 후대검정두수, 보증씨수소 선발두수), 짓소 정액판매사업
- 환류
  - 선발 및 도입된 짓소 보증씨수소의 농가선호도 및 개량 기여도 평가 결과를 다음 차수 선발 및 도입에 반영
  - 우수한 짓소정액 공급으로 농가 만족도 제고 및 국내 짓소 개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강화
  - 유량, 유단백 등 짓소 유전형질 개량추세를 분석하여 낙농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서식1>

## 젖소 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후보씨수소 확보						
○ 수정란 도입	개					
○ 수정란 이식	"					
○ 씨수송아지 입식	두					
나. 후대검정						
○ 후보씨수소 선발	두					
○ 암소 선정	"					
○ 딸소 생산	"					
○ 검정두수	"					
○ 보증씨수소 선발	"					
다. 정액생산 공급						
○ 씨수소 사육	두					
- 보증씨수소	"					
- 후보씨수소	"					
○ 씨수소 도입	"					
- 보증씨수소	"					
○ 정액 생산	천str					
- 보증씨수소	"					
- 후보씨수소	"					
○ 정액 공급	"					
- 보증씨수소	"					
- 후보씨수소	"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축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합계									
○ 젖소개량									
○ 자산취득비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젖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 성분 등의 생산능력과 번식능력을 조사하여 유전능력 평가를 하고 농가의 젖소개량을 촉진
- 암소별 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능력우 도태를 유도하고 맞춤형 씨수소의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단위 개량을 지원
- 씨수소 개량과 함께 농가의 젖소개량에 의한 생산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9,594	9,558	9,558	9,558	9,558
- 보조	2,121	2,079	2,079	2,079	2,079
- 용 자	-	-	-	-	-
- 지방비	280	248	248	248	248
- 자부담	7,193	7,231	7,231	7,231	7,231

## 라. 사업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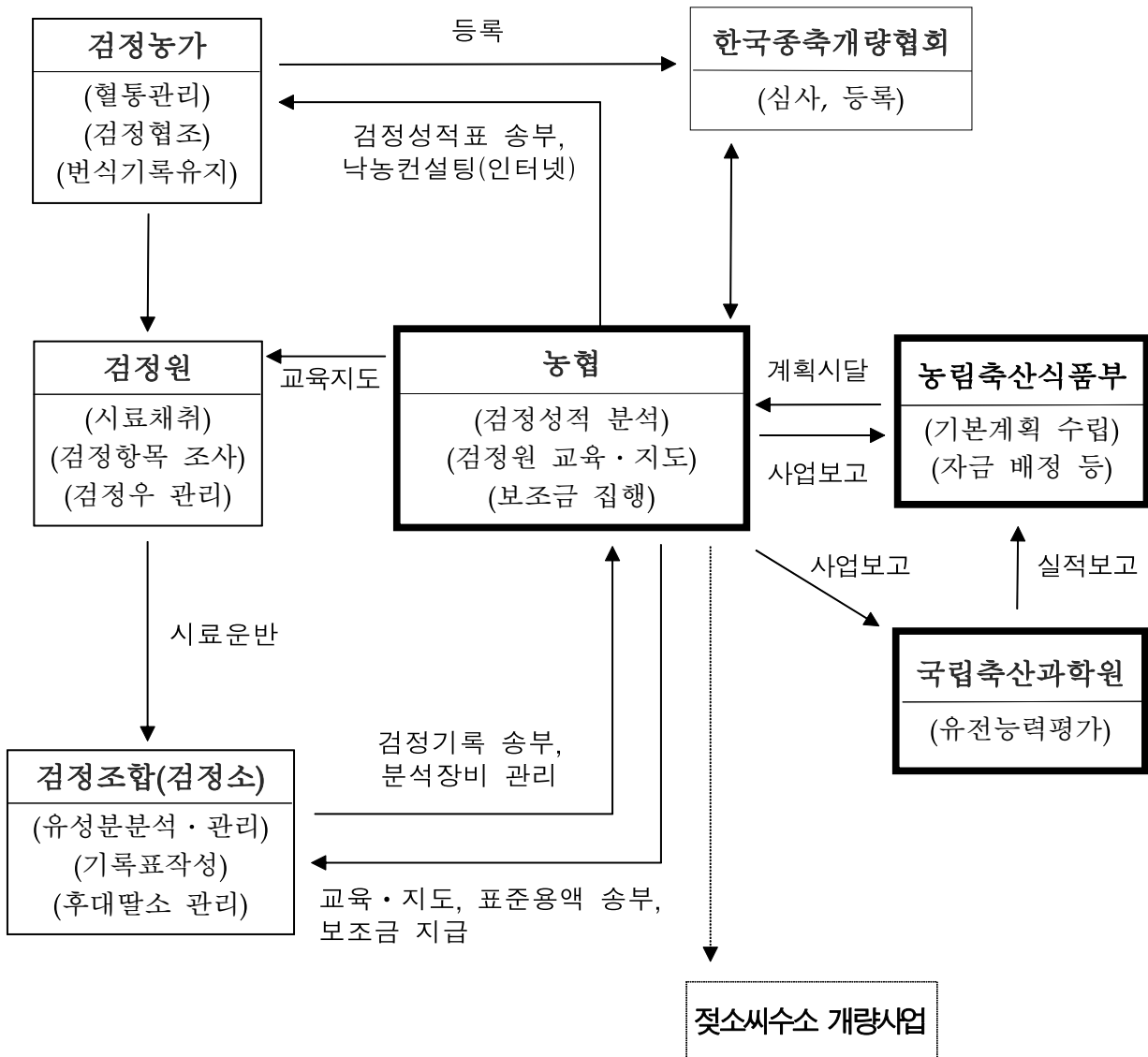
### □ 사업주관기관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 검정소(조합) : 지역축협 · 품목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 협조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

## 마. 사업추진체계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 사업대상

- 검정농가, 검정기관(지역축협·품목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110천두(2018년 참여농가 3,046호, 29개 검정기관)
- 사업비 : 9,558백만원(보조 2,079/지방비 248/자부담 7,231)

#### □ 지원요건

##### ○ 검정기관

- 농가의 젖소 번식능력과 산유능력 검정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승인한 조합 및 단체(지역축협·품목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 검정 참여농가

-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가
-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 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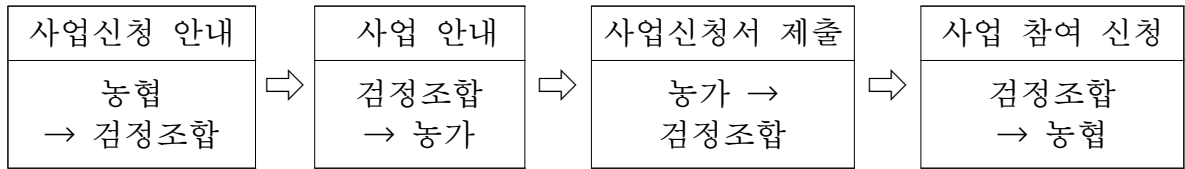
###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 세부계획수립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19년도 유우군능력검정 사업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사업계획을 추진
- '19년도 사업계획을 검정기관(검정원) 및 검정농가를 대상으로 안내(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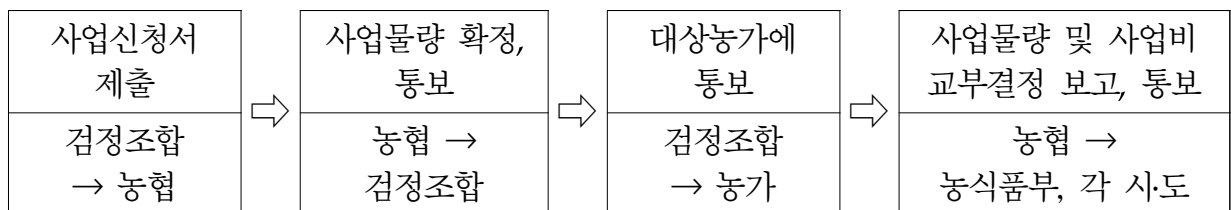


## □ 사업 신청 단계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19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사업 참여 희망 검정기관에 안내('19.1월)
  - 사업목적, 검정농가 신청자격, 신청기간, 관리조합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한 등
- 검정기관은 농가에 검정사업 참여 안내 및 신청접수 실시('19.1월)
- 농가는 검정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
  - 농가에서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검정기관에 신청
- 검정기관은 농협에 사업 참여 신청
  -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1)를 작성
  - 검정기관은 사업참여 농가를 유우군능력검정전산시스템에 등록
  -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농협젓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 사업자 선정 단계



- 사업신청
  - 검정기관은 사업 참여 희망농가로부터 받은 신청서에 의거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검정기관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19.2월)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검정기관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 물량과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검정기관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통보

○ 사업 대상농가에 통보

- 검정기관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농가에 개별 통지('19.2월말)하고 그 결과를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교부결정 결과 보고('19.3월)

- 농협젓소개량사업소는 '19년 검정기관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각 시·도에 통보

##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젓소 송아지 생산, 혈통관리, 번식, 경영정보 수집, 유성분분석 등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비 지원
- 유성분분석을 위한 표준용액 공급 등 검정 재료비 지원

## 라.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 지급기준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지원
  - 검정결과를 전산에 입력 후 검정자료로 처리된 두수를 기준으로 두당 월 1,540원씩 지급(연 18,480원)
  - 검정원은 반드시 유우군 검정우의 개체식별번호(바코드 귀표)를 조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보조금 지급 대상농가 지정

- '18년도 후대검정사업에 참여한 농가로, 검정농가 혈통 등록우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단, 신규참여 4년 미만 시 혈통등록우 비율 예외 적용, 신규참여 5년 미만 시 후대검정사업 참여 예외 적용)
- 후대검정사업 참여 여부는 '18년 후대검정정액을 신청(10str 이상)하여 사용기간(상반기 '18년 3월~11월, 하반기 '18년 9월~'19년 5월)내에 사용내역을 전산 등재한 실적으로 파악하며, 검정농가 평균 수태율(약 40%)을 감안하여 4두 이상 시술기록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 농가로 지정

○ 지급 대상 기간 : '19년 7월부터 12개월간

○ 보조금 지급대상 농가별 지급두수 산정

- 분만 후 150일 이내 비유기 중에 2회 이상 검정이 일시 중지된 개체는 해당 비유기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지하고, 보조금 지급중지 사유발생 이후에 오지급된 보조금은 회수

\* 단, '19년도 유우균능력검정사업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조합으로부터 검정우 소유자 또는 사업내역의 변경을 승인받았거나, 가축 전염성 질병 또는 일정 회수 이상 산차 후 도태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제외

- 구제역 등 법정전염성 질병치료, 방역,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유등으로 인정되는 일시 검정중지 췌소에 대하여는 해당 비유기 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을 허용

\* 구제역의 확산 예방을 위한 검역당국의 검정중단 명령시달 시 검정농가 입회는 중단하되, 검정기록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발생 시·군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유·무선을 통하여 검정기록을 조사하고, 기록 전산입력이 이루어진 경우 검정 보조금을 지급

- 혈통등록기관 미등록우가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 검정이 실시되고 혈통등록번호를 검정기록에 등재하면 혈통등록 이전

검정기록에 대해 미지급된 보조금을 두당 3회까지 지급

- 검정우에서 생산된 암 송아지의 개체정보(개체명호, 생년월일, 개체 이력제바코드번호, 부모등록번호 등)를 출생 후 180일 이내에 유우군검정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개체의 종부 수정기록 입력(수정란증명서 번호 입력) 시 보조금을 두당 3회까지 지급

○ 보조금 지급제외 농가가 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검정사업 참여 가능

○ 검정사업 탈퇴 후 재참여 신청시 신규 검정사업 참여농가 인정 기준

- 전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전 개체를 살처분하고 신규 개체를 재 입식한 경우
- 검정중단 후 36개월이 경과하였고 전 개체를 신규로 재 입식한 경우

## □ 사업의무

○ 검정기관 사업의무

- 검정기관은 매월 검정기록표를 취합·정리하여 조사된 각종 자료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유우군검정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검정기관은 검정우의 암송아지 생산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이력시스템 귀표부착번호를 조사하여 유우군검정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
- 검정용 우유시료는 유성분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즉시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유우군검정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
- 검정기관은 농협젖소개량사업소가 지정한 원유분석장비 관리 지침에 따라 분석장비를 관리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 분석장비 표준화 실태를 연 2회 점검

\* 검정유성분분석장비 표준화를 위한 표준용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조, 공급

\* 검정유성분분석장비 운영 중단

- 표준화실태 점검결과 유성분 분석항목(유지방, 유단백, 유당, 체세포)과 유성분 각 각의 기준 값(slope, bias 등) 중 2개 이상에서 연 2회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검정조합은 인근 원유분석조합(기관)에 검정샘플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불 이행시 보조금 및 표준용액 공급 중단
- 분석항목(유지방, 유단백, 유당, 체세포) 모두 부적합판정이 나온 검정기관은 즉시 검정샘플 분석을 중단하고, 인근 검정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불이행 시 보조금 및 표준용액 공급 중단

\* 분석중단 기관의 운영재개

- 익년도 검정사업 신청 전 농협젓소개량사업소에 표준화 실태조사를 신청하여 전 항목 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분석 장비 재이용 가능

- 검정기관은 검정원의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함

## ○ 검정농가 사업의무

- 검정원이 정당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일에 검정을 기피 또는 연기할 수 없음
- 검정원 입회하에 검정하되 30±5일 간격으로 검정 실시
- 검정 당일에는 일상적인 착유시간, 착유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유량 및 기타 검정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검정농가는 검정우를 사업기간 동안(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 사육 관리해야 함

- \* 다만, 젓소의 폐사, 기타 사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농협젓소개량사업소가 인정하고,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는 젓소 후대검정사업에 참여해야 함
- \* 매년 후대검정정액 10스트로 이상을 신청하여 검정우에 교배시키고, 태어난 암송아지는 직접 사육하면서 반드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
- \* 농협젓소개량사업소는 후보씨수소 딸소들에 대한 친자감정 표본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목장 내 초종부 단계 이상의 전체 두수를 검정 대상으로 참여 시켜야 하며, 인공수정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검정원에 게 제시
- 검정사업은 연속사업으로 개체의 비유기 동안의 자료가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전염성 질병 발생,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사업이 중단된 경우 검정사업 재개신청을 할 수 있음.

##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물량 및 내역	금 액
○ 유우군능력검정		총 110천두	9,558
보조	- 검정비	· 110천두×두당검정비용 65,000원×보조율28.4%	2,030
	- 재료비(시약)	· 검정소25개×163천원×12회	49
	<소계>		2,079
자담	- 검정농가 검정수수료	· 두당 월 500~2,500원 * 검정조합별 두당 단가 상이	2,517
	- 검정조합 사업비		4,499
	- 농협경제지주 보조		215
	<소계>		7,231
	- 지자체 보조		248

##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 근거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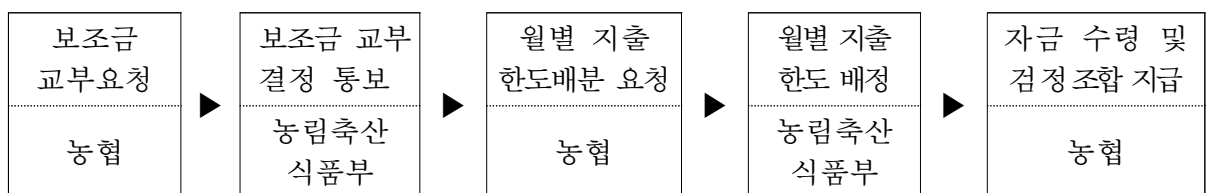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 자금집행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매월 검정기관을 통하여 검정농가 보조금 소요금액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의 우수군능력검정 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 배정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도배정 승인을 받은 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고, 검정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의 지출한도액을 검정기관별로 배분하여 통지
- 검정기관은 매월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지도사업 수익으로 기표)하고, 지급대상 검정농가별로 산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정산(지급)

\* 보조금 지급과 검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검정기관과 검정농가 간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자금 집행단계



##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이행점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기관의 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을 농가 현지지도와 병행하여 실시
  - 점검대상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기관(2년 1회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 점검항목 : 사업실적 및 사업비 운영현황(보조금 수령내역 및 집행현황) 등

### □ 사후관리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유우군능력검정 참여기관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검정기관 지정 취소 등 사업 참여를 제한
  - 검정사업 수행능력 부진 시(검정입회 및 자료처리 부진, 검정자료 정확도 저하 등)
  - 검정사업 목적 및 검정요령 위배 등
  - 검정사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검정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검정기관은 가급적 매년 1회 이상 유량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검정성적 신뢰도 향상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유우군능력검정참여 개체에 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이력제 전산자료와 년 1회 이상 데이터 검증을 실시



## □ 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 사항	보고기관	보고기한	서 식
○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검정기관 → 농협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서식4
	농협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서식3
○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정산 보고	검정기관 → 농협	익년 1월20일까지	서식4
	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익년 2월말	서식3

## 3. 기타사항

###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사업 종합평가 실시

- 매년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검정농가, 검정원, 검정기관을 시상함으로써 젓소개량의욕 고취
- 종합평가 방법
  - 주관기관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대상 : 당해 연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기관 및 농가
  - 평가항목 : 검정기관 참여실적, 젓소개량성과, 검정농가 관리성과, 유성분 분석자료, 검정자료, 검정입회 정확도
- 환류 : 사업부진 기관의 사업 시정, 취소 등 사업 참여 제한

#### □ 자료제공

-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우군능력검정성적의 유전평가를 실시하여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검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공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연간 유우군능력검정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검정기관, 관련 기관 등에 제공

#### □ 만족도 조사

- 유우군능력검정 참여농가의 사업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반기별 1회

- 조사대상 : 유우군능력검정 참여농가 40호 내외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 대상선정, 설문조사 항목 등 조사계획은 주관기관 자체 수립·추진

#### 나. 기타사항

##### □ 2020년도 사업 수요조사

- 2020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농가)은 사업신청 수요를 조사하여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수요조사 : 관련 조직에 2020년도 사업신청 안내문 발송(2~3월경)

- 제출기한 및 연락처 : 2019.3.30일까지, 031-929-1064

##### □ 2020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예고

-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서식 1>

##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주 소			
	이 름	(날인 또는 서명)	전화	
	목장명		핸드폰	
젓소사육 현황(두)	미경산우		경산우	합계
후대검정 참여대상 (두)		후대검정 참여시기	상반기/하반기	보조금교부 신청대상(두)
조사료 재배면적 (평)	초지		사료포	기타
축 사 면 적	(평)		축산업(허가) 등록번호	
농가혈통 비율(%)			유우군검정사업 참여개시년도	
신청 구분	(기존 참여농가/ 신규 신청 / 검정사업 탈퇴후 재신청) 으로 구분			

보조금 교부 신청 대상개체는 유우군검정기록 전산시스템의 자료로 같음하며  
위와 같이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귀하

<서식 2>

## 2019년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계획

### 1. 2018년도 사업실적

#### 가. 사업실적

##### 1) 검정우 관리실적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실 적				
달성율				

##### 2) 보조금 지급두수 실적

구 분	농가수	지급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실 적				
달성율				

##### 3)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교육 실적

실시일	장소	참여농가수	주요 교육내용

#### 나. 사업비 집행액

- 사업비 재원별

(단위 : 천원)

구 분	축발기금 보조금	농협무이자 자금	지방비	농가 자부담	조합부담	총소요액
금 액						
부담율(%)						

- 사업비 과목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금액	비 고
사 업 관리비	인 건 비		
	여 비		
	수 용 비		
	차 량 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		
	:		
	계		

다. 추진상 문제점



## 2. 2019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

### 1) 검정우 관리계획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 2) 후대검정사업 참여 계획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 3) 기금 보조금 지급 두수

구 분	농가수	지급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4)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교육 계획

실시일	장소	참여농가수	주요 교육내용

나.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소요경비 확보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축발기금 보조금	농협 무이자자금	지방비	농가자부담	조합부담	총소요액
금 액						
부담율(%)						

○ 사업관리비 집행계획 (단위 : 원)

구 분	예산 금액	비 고
사업관리비	인 건 비	
	여 비	
	수 용 비	
	차 량 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	
	:	
계		

다. 검정원 현황

이 름	검정지역	검정농가수	검정두수	기타
명			두( )*	

주. \* ( )내는 1인당 평균관리두수임

라.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서식 3>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중앙회용) 보고( /4분기까지)

###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정소 운영</li> <li>○검정원</li> <li>○검정농가</li> <li>○검정두수</li> </ul>	개소 명 호 두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4분기)까지												
		계 획	실 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우군능력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비</li> <li>- 재료비</li> </ul> </li> </ul>																	

<서식 4>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조합용) 보고( /4분기까지)

### 1.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단위	연간계획	( /4분기까지) 실적
○검정원 - 전담검정원 - 촉탁검정원 - 전산입력원 ○검정농가 ○검정두수	명    호 두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재원 조달 내역( /4분기까지)					계
	보조	자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	농가부담		
○ 유우군능력검정 사업비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한국형 보증씨수소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유전적 능력이 우수하고 질병으로부터 청정한 암소집단을 확대
  - 고능력 수정란을 청정우군에 이식하여 후보 씨수송아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암송아지는 유전평가 후 씨수송아지 생산용 씨암소로 활용
- 낙농가의 개량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능력의 보증씨수소 생산으로 국산정액 판매 활성화 및 수출기반 조성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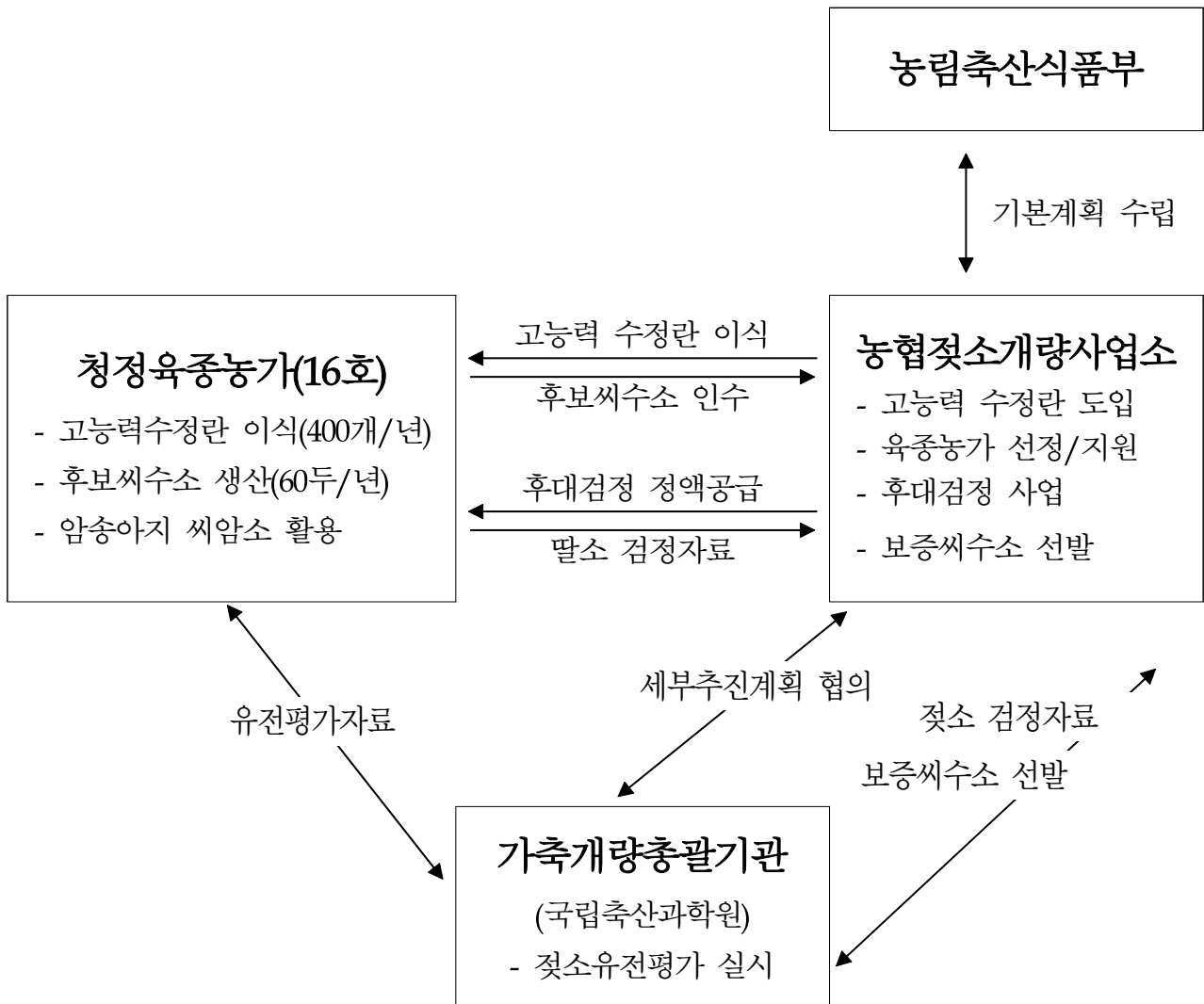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2,687	2,461	1,586	1,604	2,023
- 보조	2,687	2,461	1,586	1,604	2,023
-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젓소육종농가 사업비는 젓소(씨수소)개량사업에 포함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마. 사업추진체계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량 : 청정육종농가 16농가 관리, 수정란도입 400개

씨수송아지 60두 생산

□ 사업비 : 1,604백만원

□ 사업대상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로부터 젓소육종농가(지역축협 생축장 포함)로 지정받은 농가 또는 영농법인, 지자체,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 등

□ 지원요건

<공통사항>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농가
- 미경산우를 포함한 전체 암소 중 부·모를 아는 개체의 비율이 75% 이상인 농가
- 정기적인 질병검사로 지속적인 청정우군 유지가 가능한 농가
- 청정우군 유지를 위한 방역시설을 보유한 농가
- 장기적인 사업참여 가능 농가(축주연령, 후계자 여부 등)

<단일농가>

- 경산우 40두 이상(건유우 포함)을 사육하고 보유한 모든 소(생후 8개월령 이상)에 대하여 젓소개량사업소가 정한 질병검진을 완료한 농가

\* 검진대상 질병 : 구제역, 우결핵, 부르셀라, 소 요네병, 소 류코시스

- 검진대상 질병의 검진결과, 전두수가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 단, 청정우군 조성을 목표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농가 또는 조합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를 조건으로 사업참여를 허용
- 질병이 없는 수정란이식 대상우(수정단계 미경산우) 20두 이상 확보
- 신규부지에 육종농가를 조성하는 경우, 경산우 40두 이상 규모의 우사와 부지를 확보하고 동 규모의 착유시설 신축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 <육성우 목장>

- 미경산우로 구성된 육성우 목장을 조성하고 독립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젓소개량사업소가 정한 질병검사결과, 육성우 목장 내 전두수가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 또는 영농법인, 지자체,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 등

\* 검진대상 질병 : 구제역, 우결핵, 부르셀라, 소 요네병, 소 류코시스

- 질병이 없는 수정란이식 대상우(수정단계 미경산우) 20두 이상 확보
- 별도 분만우사와 송아지우사 보유 농가

##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 청정육종농가 선정방법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관련 대학 및 기관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거쳐 참여농가를 선정(연중)
- 사업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서식 1)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에 사업참여 신청

#### ○ 청정육종농가 선정절차

- 사업홍보추진(연중) ⇒ 사업참여 신청 ⇒ 농가 질병검진 ⇒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현장심사 ⇒ 사업계약 추진

##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고능력 수정란 도입비용

- 육종농가 지도·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 질병검진, 수정란 이식, 연구용역, 농가 관리 프로그램개발 등
  - \* 신규 육종농가 모집을 위한 사전 검진비용 및 감염우 도태장려금 지원
  - \* 기존 육종농가의 정기질병검사비용 및 추가 감염우 도태장려금, 청정화 유지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지원
- 젖소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 젖소 청정육종농가가 생산한 수송아지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해당 농가에 개량장려금 지급
- 수정란 생산·공급시설 운영
  - 암소개량 가속화를 위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수정란을 체계적으로 생산·공급 하는 시설 운영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형태 : 고능력 수정란 생산, 도입, 육종농가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사업비 보조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역할

- 우수 젖소 고능력 수정란 생산 또는 도입
- 젖소 청정육종농가 모집·선정 및 지도·운영
- 우수 젖소 암소를 보유한 검정농가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젖소 청정육종농가 사업에 활용

□ 젖소 청정육종농가 사업량 : '21년까지 20호 선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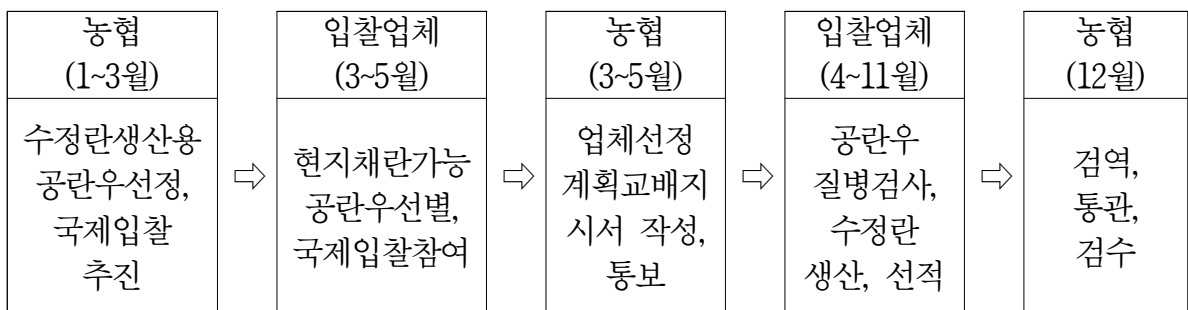
구 분	'18년이전	'19	'20	'21	누 계
청정육종농가(호)	16	1	2	1	20

## 마. 사업내용

### <고능력 수정란 도입>

- 사업량 : 300개
- 사업비 : 759백만원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도입대상국의 우수암소(유전평가결과 상위 0.1%이내)를 수정란 생산 대상 공란우로 지정
  - ※ 개량형질의 다양화를 위해 체형등 특정형질이 우수한 암소도 공란우로 지정가능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지정한 공란우내역을 활용해 고능력 수정란을 생산할 업체선정(국제입찰진행)
- 입찰희망업체는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지정한 공란우 중 수정란 생산이 가능한 농가를 확보하여 입찰에 참여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도입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가 제시한 공란우에 사용할 우수정액을 수정란 생산할 공란우별로 지정(계획교배)하여 낙찰자에 통보
- 낙찰자는 대상 공란우중 질병검사를 통과한 개체에 한해 수정란 생산을 진행 후 현지검역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선적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국내검역 및 통관절차를 거쳐 도입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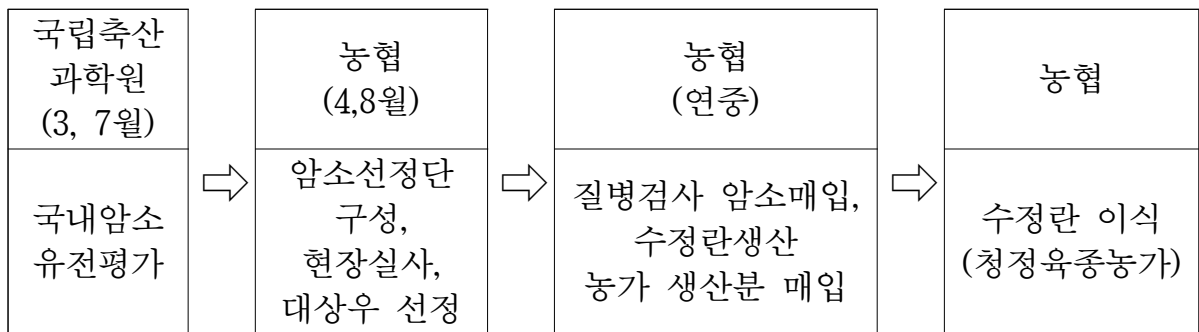
### ■ 고능력수정란 도입절차



## <고능력 수정란 국내 생산>

- 사업량 : 100개 내외(씨암소 10두 내외)
- 사업비 : 154백만원
- 농협은 각계전문가, 선도농가 등으로 암소 선정단을 구성하여 국내유전평가결과 우수 암소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매년 10여두를 수정란생산을 위한 씨암소로 선정
  - ※ 우수 암소선정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
- 선정된 씨암소는 질병검사를 거쳐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매입하여 수정란을 생산하거나 농가에서 질병검사를 거친 후 생산한 수정란을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매입하여 활용

### ■ 고능력수정란 국내 생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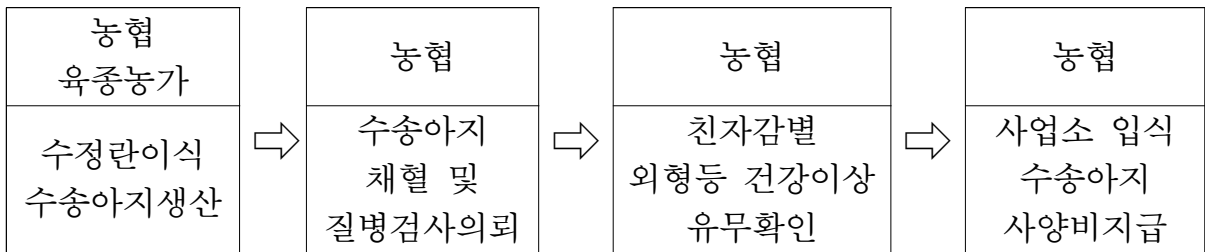
## <씨수송아지 생산 및 우수 암소축군 조성 >

- 사업량 : 씨수송아지 생산 60두
- 사업비 : 110백만원
- 수정란의 이식은 농협의 번식전문가나, 육종농가 중 자체적으로 보유한 이식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며,

-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수송아지는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인수심사(친자확인, 질병검사, 외형이상 유무 등)를 거쳐 무상으로 인수, 씨수송아지로 활용하고(단, 인수시점까지의 사양비와 운송비는 농협이 부담), 생산된 암송아지는 청정 수란우를 제공한 육종농가가 무상으로 소유하여, 장기적으로 씨수소생산을 위한 우수 암소축군 조성에 활용

※ 수정란으로 생산된 암소는 농가가 소유하되 매각은 농협의 사전허락을 받아야함.

### ■ 씨수송아지 입식절차



### <육종농가 운영 >

- 사업량 : 16개소
- 사업비 : 581백만원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매년 2회 이상 육종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우 발생 시 육종농가와 협의하여 격리, 도태 계획을 수립하고, 육종농가가 청정우군을 유지하도록 지도



##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물량	사업비	비 고
고능력 수정란 도입		300개	759	고능력 수정란 도입비용
고능력 수정란 국내 생산		100개	154	한국형 수정란 매입비 및 선정단 운영비용
씨수송아지 생산 및 우수 암소축군 조성		60	110	송아지 입식, 사양비 등
육종 농가 운영	육종농가 선정 및 운영관련	16호	325	농가 선정 수당 및 현판, 시설지원 및 웹사이트 등 기타
	교육 및 컨설팅		10	
	개량장려금		100	○보증씨수소 선발시 지원 - 20,000천원*5두(선발)
	정기질병검진		50	육종농가 전두수 질병검진 연2회
	질병 청정화 및 청정우군 확대		96	○기존 청정우군관리 - 감염소 도태, 인공초유, 대용유 신규 농가 모집 - 질병검사 및 감염소 도태비, 질병관리 컨설팅
합 계			1,604	

## 사.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아.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젃소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을 아래와 같이 점검 실시
  - 점검대상·횟수 : 젃소 청정육종농가,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 점검항목 : 관리우 질병관리 현황, 송아지 생산두수, 후대검정 딸소 생산실적 및 검정자료 관리 현황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청정육종농가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청정육종농가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청정육종농가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의 젓소육종농가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젓소육종농가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침 및 계약을 위반했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젓소 후대검정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 결과보고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젓소육종농가사업 분기별 사업실적을 (서식2)에 따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3. 기타사항

####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사업평가

- 목적 : 젓소육종농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실적부진 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부실 방지 및 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기관·기간 :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대상 : 해당연도 젓소육종농가(신규 참여농가는 제외)
- 평가항목 : 검정사업 참여현황, 수란우 관리현황, 정기 질병검진결과, 송아지 관리현황(분만율, 육성율, 인수율, 혈통등록등), 사업 협조여부 등

□ 사업환류 : 사업부진 젓소육종농가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서식1>

## 젖소육종농가사업 신청서

### 1. 사업신청자

이 름		축산업(허가) 등록번호	
목장명		생년월일	
목장소재지		전화번호	
자택소재지		휴대전화번호	

### 2. 사업신청내용

젖소 암소 사육두수			혈통·고등등록우	
총사육두수	미경산우	경산우	경산우 ( )	미경산우 ( )
두	두	두	두( %)	

※ 총사육두수 : 암소사육 전두수

### 3. 일반현황

축사 기타	축사 면적		방역시설	
	동 평	동 평	차량( ),	대인( )
검정 현황	검정소		검정두수	
			검정시작년도 년	

### 4. 첨부서류

① 서식 제 호 서식 젖소 암소 보유내역서

※ 신청대상우 및 자료조사내역이 많은 경우 첨부하여 제출(전산자료 출력가능)

② 축산업 (허가)등록증(서) 사본

③ 방역시설 사진(보유시)

④ 질병검진항목에 대한 검진결과통보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농협 가축개량원 젖소개량사업소 귀하

<서식2>

## 젯소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젯소육종농가육성사업 ○ 고능력수정란 도입 ○ 고능력수정란 이식 ○ 청정육종농가 선정	개 개 호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축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젯소육종농가육성 ○ 고능력 수정란 도입 ○ 육종농가 운영									

<서식3>

## 젖소육종능가를 활용한 보증씨수소 선발 체계도

구 분	소요기간 (개월)	세 부 내 역				
수정란이식 (4개월)	0 ~ 14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육종농가 20호</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00두</td></tr> </table> <span style="font-size: 2em; vertical-align: middle;">×</span>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고능력 수정란</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00개</td></tr> </table>	육종농가 20호	400두	고능력 수정란	400개
육종농가 20호						
400두						
고능력 수정란						
400개						
임신기간 (10개월)	↓					
질병검사& 씨수송아지 매입 (4개월)	15 ~ 18	<p style="text-align: center;">※ 400두 이식 × 수태 · 생존율(30%) = 120두(♂ 60두, ♀ 60두)</p>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예비 후보</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60두</td></tr> </table> <span style="font-size: 2em; vertical-align: middle;">↔</span>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고능력 씨암소 재활용</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60두</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 유전평가후 씨암소로 선발</p>	예비 후보	♂ 60두	고능력 씨암소 재활용	♀ 60두
예비 후보						
♂ 60두						
고능력 씨암소 재활용						
♀ 60두						
당대검정& 정액생산 (12개월)	19 ~ 36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후보 씨수소</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35두</td></tr> </table> <span style="font-size: 2em; vertical-align: middle;">×</span>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교배암소(육종농가)</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14,000두 (♂ 35두 × ♀ 400두)</td></tr> </table>	후보 씨수소	♂ 35두	교배암소(육종농가)	♀ 14,000두 (♂ 35두 × ♀ 400두)
후보 씨수소						
♂ 35두						
교배암소(육종농가)						
♀ 14,000두 (♂ 35두 × ♀ 400두)						
암소선정& 교배 (6개월)	↓					
암소 임신기간 (10개월)	37 ~ 46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후대검정 딸소 생산</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3,325두</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 14,000두 × 45%(분만율) × 50%(성비)</p>	후대검정 딸소 생산	♀ 3,325두		
후대검정 딸소 생산						
♀ 3,325두						
암소육성 & 임신, 분만 (27개월)	47 ~ 73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후대검정 딸소 육성</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3,000두</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 3,325두 × 65%(육성율)</p>	후대검정 딸소 육성	♀ 3,000두		
후대검정 딸소 육성						
♀ 3,000두						
암소검정 & 유전평가 (10개월)	74 ~ 83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후보 씨수소 유전평가</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35두</td></tr> </table> <span style="font-size: 2em; vertical-align: middle;">←</span>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후대검정 딸소 검정착수, 선형심사</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2,100두</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 후보씨수소 1두당 딸소 60두</p>	후보 씨수소 유전평가	♂ 35두	후대검정 딸소 검정착수, 선형심사	♀ 2,100두
후보 씨수소 유전평가						
♂ 35두						
후대검정 딸소 검정착수, 선형심사						
♀ 2,100두						
보증종모우 선발 & 활용	83 (6.9년)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보증씨수소 선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5두</td></tr> </table> <span style="font-size: 2em; vertical-align: middle;">→</span>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정액공급</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낙농가</td></tr> </table>	보증씨수소 선발	♂ 5두	정액공급	낙농가
보증씨수소 선발						
♂ 5두						
정액공급						
낙농가						

# 돼지 개량

# 9

# 종돈농장검정사업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도태의 선택 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보급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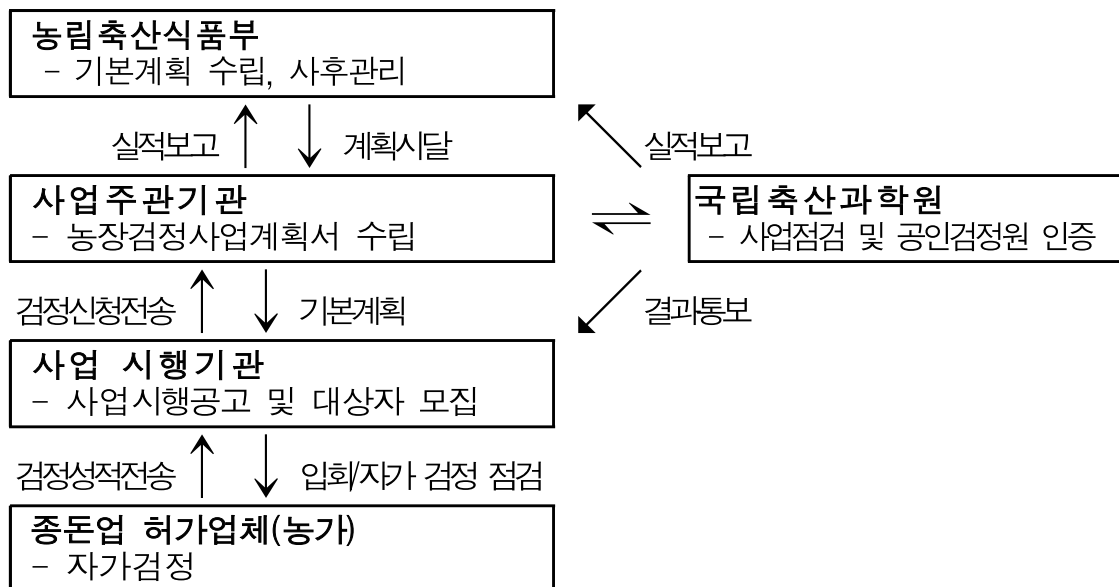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4,484	313	360	290	290
- 보 조	2,649	213	244	200	200
-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1,835	100	116	90	90

### 라. 사업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사업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 마. 사업추진체계도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 농장검정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종돈업 허가 농장이 능력검정원 확보시 자가검정 가능

#### □ 농장검정 종류 : 입회검정, 자가검정

- 입회검정 : 사업시행기관 소속직원이 농장입회하여 검정
- 자가검정 : 공인된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 허가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정

#### □ 검정비 지원 제외 대상

- 2018년 검정 참여비율 등에 따른 2019년 검정비 지원 제외
  - 2018년 검정참여 모든 두수가 50두 미만인 경우
    - \* 검정참여 모든 두수는 2018년 검정돈의 모든 두수 합계
- 2019년 신규 참여농장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GGP 모든 규모 50두 미만 농가
- 자가검정 종돈장이 사업시행기관이 요구하는 입회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검정성적을 미제출한 경우(검정종료일부터 21일 이내)

###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 사업추진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검정유형, 검정방법 및 주기 등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http://www.aiak.or.kr>) 및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pork.or.kr>) 공고 및 홍보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를 취합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장검정신청서를 취합하여 연간계획 수립

## □ 선정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기본계획 및 자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농장검정 신청을 받아 물량 배정
- 2019년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의 선정시 유의사항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의무 미준수자는 제외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가축분뇨법 제10조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미준수자는 제외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무허가축사 보유자는 제외
  -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준수 농가 우선선정

## □ 추진절차

-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검정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19.2월)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19.2월)
- 사업시행기관의 소속검정원은 계획(연간, 월간, 주간)에 따라 입회검정을 실시하고,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농가에서는 자가검정을 실시. 사업시행기관은 검정실적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시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장검정비 지원대상돈

내역(서식4)중 필수 수집항목을 확인하여 적정여부에 따라 월별 보조금을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매주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검정성적서를 해당 농가에 발송하여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돈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농장검정비 일부 보조

- 사업량 : 62,400두(입회검정 6,400두, 자가 56,000두)
- 검정대상돈은 자돈등기된 순종 및 번식용씨돼지

□ 사업내용

- 농장검정 대상돈은 버크셔,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햄프셔, 재래돼지, 합성돈(국립축산과학원이 인정한 것)과 및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수를 대상으로 실시
- 검정돈 조건에 부합되는 개체를 대상으로 체중이 90kg 전후에 도달했을 때 1일평균 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등심깊이), 종돈의 적격성 조사
  -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1.0kg)/(종료일령)으로,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은 초음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조사
- 사업시행기관은 주간단위로 검정자료를 수집한 후 검정성적 및 유전능력 평가결과 자료를 공표
  - 사업주관기관에 검정자료와 자부담 실적을 제출
  - 농가발송, 홈페이지 및 종돈개량지에 게재하여 홍보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장검정비 : 200백만원

- 입회검정 10,000원/두(50% 보조), 자가검정 4,000원/두(75% 보조)

##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자금배정 및 집행

##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사업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농장검정 실시농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사업주관기관
  - 농가들의 부당행위 사전방지, 사업만족도, 건의사항 등 수렴
- 점검항목 : 농장검정 실시현황(규정에 의한 검정실시)

### □ 자가검정농가 입회점검(2회/년 이상)

- 사업시행기관은 자가검정농가가 가축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 2018.7.13)에 따라 적정한 검정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자가검정농가 입회점검표(서식2)에 의거 점검
  - 점검 시 입회검정을 실시하여 점검 전·후 자가검정 성적을 비교분석
- 사업시행기관은 점검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

### □ 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에 분기별 돼지능력검정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서식 3)하고, 농장검정보고회, 교육, 홍보, 지도 및 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

### 3. 기타사항

####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장검정사업 평가 : 농장검정사업 실적 및 개량추이를 분석

○ 평가대상 : 농장검정 실시 농가

○ 평가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사업주관기관

\* 추진계획은 주관기관 자체 수립·추진

□ 농장검정사업 보고회 : 사업주관기관은 농장검정결과 보고를 통한 개량성과 도출

○ 개최시기 및 횟수 : 4~5월, 1회/년

○ 참석대상 : 종돈업체 및 관련업체 등 100명

○ 홍보 : 신문, 월간지 등 종돈개량성과 홍보

<서식 1>

## 2019년도 종돈농장검정사업 계획서

### 1. 농장현황

농장(기관)명				대표명				핸드폰			
대표전화				팩스				농장식별번호			
검정담당자				직책				핸드폰			
경영형태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영농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육형태	전문GGP <input type="checkbox"/> 전문GP <input type="checkbox"/> GGP+AI센터 <input type="checkbox"/> GGP+GP <input type="checkbox"/> GGP+GP+PS <input type="checkbox"/> GP+PS <input type="checkbox"/>										
돈사현황	번식사	육성(비육)사		검정사		총건물		비고			
	개동	개동		개동		개동					
노동력	자가		고용		합계		작성일				
	명		명		명		작성자				

### 2. 사육규모(모돈 및 옹돈)

구분	모돈 두수						옹돈 두수					
	L	Y	D	B	H	기타	L	Y	D	B	H	기타
순종생산용												
F1생산용												

1) F1 모돈을 이용하여 비육돈을 생산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2) 비육돈을 생산하신다면 F1모돈 두수는? (            두)

### 3. 농장특이사항(검정두수 증감요인 기술- 가능한 상세히)

### 4. 검정형태(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회검정: 검정기관직원 출장검정 (    )

자가검정: 농장내 공인능력검정원 검정 (    )

### 5. 검정용 초음파기계 방식(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A-모드 : 디지털방식(    )            B-모드 : 화상방식(    )

### 6. 2019년도 월별 농장검정 계획두수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두수													



<서식 3>

## 종돈농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 1. 사업 추진실적

(단위 :두)

세부사업량	2017년	2018년	2019년			진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C/B	C/A
				계획(B)	실적(C)		
○ 돼지검정사업							
- 입회검정							
- 자가검정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세부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비( /4분기까지)									
			축발기금			농가자담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 돼지검정사업												
- 입회검정												
- 자가검정												



<서식 4>

## 농장검정비 지원 대상돈 혈통 및 검정성적 내역서

*개체혈통 등록번호	*개체 (이각)번호	*품종	*성별	*생년월일	귀표번호	*검정구분 <sup>1)</sup>

*개시 일자	*개시 체중 (kg)	*종료 일자	*종료 체중 (kg)	*검정 <sup>2)</sup> 모드	A모드 측정 시		
					*등지방두께(mm)		
					4늑골	최후늑골	최후요추

A모드 측정 시		B모드 측정 시(10늑골)			
*등심 깊이 (mm)	정육률 (%)	*등지방 두께 (mm)	*등심 단면적 (cm <sup>2</sup> )	등심 깊이 (mm)	마블링 스코어 IMF

*검정신청 농장명	*검정자료 <sup>3)</sup> 신청일자	*검정 담당자	사료 섭취량(kg)	사료 요구율	정상유두수 <sup>4)</sup>	
					좌	우

*부 혈 통 등록번호	*모 혈 통 등록번호	*모의 산자 성적		
		산차	총산자수(두) <sup>5)</sup>	생존산자수(두) <sup>6)</sup>

\* 표시는 필수 수집항목으로 누락 시 해당개체 보조금 지급제외

- 1) 검정구분 : 입회, 자가
- 2) 검정모드 : A모드, B모드
- 3) 검정자료신청일자 : 산육검정성적을 사업시행기관에 구축토록 신청한 날짜
- 4) 정상유두수 : 좌·우측 각 맹유두 및 부유두를 제외한 유두수 기입
- 5) 총산자수 : 포유개시두수(암+수) + 사산 + 미이라+ 기형+ 체중미달 합계
- 6) 생존산자수 : 포유개시두수(암+수) + 기형+ 체중미달 합계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목 적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선발된 우수 종돈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량 종돈의 활용성을 증대
- \* 국가단위 돼지 유전능력평가 및 유전능력정보 중심의 종돈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고능력 종돈 개량·이용 선순환 체계 정착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47조(기금의 용도)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6,705	1,303	1,303	1,303	1,303
- 보조	6,205	1,053	1,053	1,053	1,053
- 융 자	-	-	-	-	-
- 지방비	(500)	(250)	(250)	(250)	(250)
- 자부담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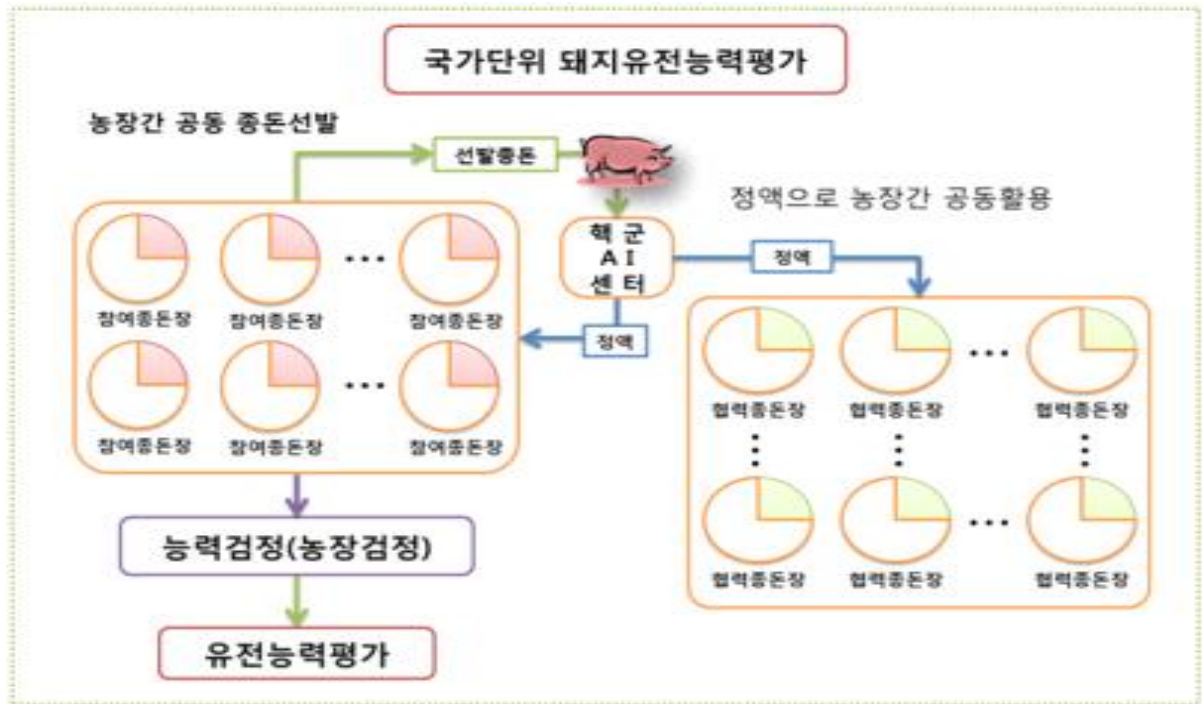
### 라. 사업주관기관

사업주관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사업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마. 사업추진체계



- 종돈의 공동선발 및 활용으로 참여 및 협력 종돈장간 유전적 연결
- 유전자원 공유는 핵군AI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 \* 모계와 부계를 분리하여 지정 가능
- 시행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등록 및 검정기관은 시행기관에 등록 및 검정 자료를 제공
-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추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이하 돼지분과위원회)를 개최
  - 사업추진계획 및 활용 등 주요 사항을 돼지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음

- 시행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참여 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표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지자체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 종돈의 유전능력 평가 결과 우수 돼지 유전자원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돼지인공 수정센터를 통한 고능력 종돈 이용 선순환 체계 마련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①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 사업대상

-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 □ 지원요건

##### < 참여종돈장 >

-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허가업체
- 참여대상 품종 규모
  - 부계(두록) 또는 모계(랜드레이스, 요크셔) 계통 원종돈(GGP) 모돈 50두 이상 규모
- 질병·방역 : HACCP 인증을 받고 국립축산과학원이 정한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 < 핵군시센터 >

- 참여종돈장의 우수 종돈을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우수정액등처리인증업체

## < 협력종돈장 >

- 대상품종의 순종 모든 두수가 50두 이상 규모인 종돈업허가업체
  - \* 질병·방역 관리는 국립축산과학원이 참여종돈장의 관리수준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시행기관은 2019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9.2월)

####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시행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시행기관 홈페이지(<http://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서식1)와 의무이행각서(서식4)를 함께 작성하여 시행기관에 신청
-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선정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우수종돈 구입비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보조

## 라. 사업내용 및 지원형태

### □ 사업내용

- 참여·협력 종돈장은 핵군종모돈의 정액 공유를 통해 유전적으로 연결하여 국가단위 유전평가체계 확립 및 우수 종돈 선발·활용
  -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 결과 상위 2% 이내 종모돈을 선발하여 질병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개체를 핵군AI 센터에 입식
  - 핵군AI센터는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 공급
- 시행기관은 등록기관과 협조하여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의무사항 수행여부 확인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선발된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모돈 두수의 10%이상 교배 실시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모돈이 생산한 자돈 중 일정두수이상 검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 결과 확인
- 국립축산과학원은 혈통기록, 농장검정성적 등을 이용하여 유전능력평가(부계 2회/월, 모계 1회/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 기관 및 사업대상자에 통보

### □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참여업체는 매주 등록기관에 혈통 및 검정자료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은 시행기관에 취합된 자료를 제공
- 시행기관은 두 등록기관으로 부터 취합된 혈통 및 검정 자료를 축산원에 제공

### □ 지원형태

- 우수종돈구입비 : 100% 보조(300만원이내/두)
- 우수종돈개량지원비 :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보조(1,000만원/두)

- 수태지검정지원비 : 사업대상자 검정완료 수태지 탈락돈에 대해 수태지검정지원비 보조(100천원/두)
- 질병검사비 : 사업대상자가 수행한 질병검사비 100% 보조
- 육질검사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육질검사비 또는 도체조사비 100% 보조
- 친자감정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친자감정비 100% 보조
- 정액택배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정액택배비 100% 보조
-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 사업대상자가 자돈등기시 산자검정 자료 수집비 보조(3,200원/복)
- 정자분석비 : 핵군AI센터가 수행한 정자분석비 100% 보조
- 운영비 : 회의수당 및 회의비 등

#### □ 지원방법

- 핵군AI센터 우수종돈구입비
  - 지원기준 : 참여종돈장에서 생산된 돼지 중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선발된 핵군종모돈(상위 2%이내)
  - 지원방법
    - 핵군종모돈으로 선정된 돼지를 구입한 핵군AI센터는 사업시행 기관에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신청서(서식2)를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종돈구입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검사기관(시·도 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한 질병검사기관)에서 대상돈의 질병검사 결과(4회 검사) 모두 정상임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우수종돈개량지원비
  - 지원기준 : 국립축산과학원 유전능력평가에 근거하여 선발된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개량지원비 지급
  - 지원방법 : 사업시행기관은 우수종돈 선발 후 핵군AI센터에 입식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지급

○ 수돼지검정지원비

- 지원기준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검정하여 탈락된 수돼지
- 지원방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수돼지 검정지원비 지급신청서(서식3)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적정성이 확인된 신청 종돈장에 보조금 지급

○ 질병검사비

-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가 본 사업에서 지정한 질병검사를 수행한 경우

구 분		질 병 검 사		대 상	비 고
정기검사	검사항목	PRRS (1,2,4,5,7,8,10, 11월)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 브루셀라, PRRS(3,6,9,12월)	핵군시 센터	
	검사시료	혈액			
	검사의뢰처	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기관			
종돈 입식시	검사항목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 브루셀라, PRRS, PCV2(항원)	중돈장 및 핵군시 센터	핵군용종돈 : 입식전(농장), 입식후 2일, 2 주, 4주  일반용종돈 : 입식전(농장), 입식후 2일, 2 주, 4주	
	검사시료	혈액			
	검사의뢰처	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기관			
정액 공유시	검사항목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 브루셀라, PRRS, PCV2, 일본뇌염, 파보바이러스, 독소플라즈마병, 렙토스피라병(10종항원)	핵군시 센터	정액을 채취한 해당 종돈의 정액으로 질병 검사 실시	
	검사시료	정액			
	검사의뢰처	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기관			

-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가 질병검사기관(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한 질병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질병검사에 대해 지급신청서(서식5)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질병검사내역 등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육질검사비 또는 도체조사비

- 지원기준 : 참여 또는 협력 종돈장의 검정종료돈 중 선발에서 탈락된 종돈의 육질검사비(pH24, 이화학, 시료보상 등) 또는 도체조사비(근내지방도, 육색, 육조직감 등)
- 사업시행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육질검사기관에 보조금 지급
- \* 국립축산과학원은 육질검사 자료의 균일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육질검사기관을 선정하고, 매년 전년도의 사업수행결과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 지원기준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본 사업에서 정한 자돈등기시 필수 입력항목을 모두 수행한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자돈등기시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입력한 항목을 확인한 후 모든 필수항목이 입력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친자감정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친자감정을 위한 DNA 분석비

- 사업시행기관은 친자감정용 DNA분석을 위해 참여업체 종돈의 모근 또는 조직을 취합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정한 분석기관에 의뢰하고 분석비용을 집행

○ 정액택배비

- 지원기준 : 참여 종돈장에서 공급하는 정액택배비
- 지원방법 : 사업시행기관은 정액을 배송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정자분석비

- 지원기준 : 핵군AI센터가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 정자분석비
- 지원방법 : 사업시행기관은 정자분석결과를 확인한 후 정자분석기관에 보조금 지급

○ 운영비 : 사업시행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인건비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집행

□ 참여업체의 의무

〈 참여종돈장 및 협력종돈장 〉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교배모돈의 10%이상을 선발된 핵군종모돈 (상위 2% 이내)의 정액 또는 해외 유전자원으로 계획교배를 실시
  - \* 선발된 핵군종모돈의 정액은 최소 1회 이상 사용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생산된 자돈의 일정두수 이상을 검정
  - \* 참여종돈장 : 부계(♀ 2두, ♂ 2두/복당), 모계(♀ 3두, ♂ 0.4두/복당)
  - \* 협력종돈장 : 부계(♀ 1두, ♂ 1두/복당), 모계(♀ 1.5두, ♂ 0.2두/복당)
- 참여종돈장은 공유용으로 선발된 종돈을 핵군AI센터에 공급

〈 핵군AI센터 〉

- 핵군AI센터는 핵군종모돈을 참여종돈장에서 구입하여 청정화를 유지 하고 참여 및 협력종돈장 모돈 두수의 15%이내로 정액을 무상 공급
- 일반 종모돈 입식시에는 핵군종모돈 입식과 동일하게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 후 입식
  - \* 위 의무사항 이외에 대표자협의회에서 협의한 중요 의무사항을 이행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9년 사업비 : 1,3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지원형태
사업비	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군AI센터 우수종돈구입비 : 100% 보조(300만원 이내/두)</li> <li>○ 우수종돈 개량지원비 :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 인센티브(1,000만원/두)</li> <li>○ 수태지 검정지원비 : 사업대상자 검정완료 수태지 탈락돈에 대해 수태지검정지원비 보조(100천원/두)</li> <li>○ 질병검사비 : 질병검사비 100% 보조</li> <li>○ 육질검사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육질검사비 100% 보조</li> <li>○ 산자검정 자료수집비 : 사업대상자가 자돈등기시 본 사업에서 정한 모든 필수항목 입력시 보조 (3,200원/복)</li> <li>○ 친자감정비 : 100% 보조</li> </ul>

		○ 정액택배비 : 100% 보조 ○ 관리프로그램 개발비 ○ 정자분석비 : 100% 보조 ○ B-모드장비구입비
운영비	59	○ 회의수당, 회의비, 출장여비, 인건비 등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종돈 구입비	250	○ 유전능력(검정결과) 등에 따라 차등(마리당 300~1,200천원)하여 지원
합 계	1,303	

##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사업시행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이행사항 점검

- 사업대상자(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종돈장의 경우 종돈장방역관리요령에 준함) 결과 확인
  - 참여종돈장 및 핵군AI센터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종돈장은 협력종돈장으로 지위 변경, 핵군AI센터는 선정 취소
  - \* 협력종돈장이 참여종돈장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참여종돈장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농장을 선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농장검정과 계획교배(정액공유) 등 점검
- 필요시 참여업체를 방문하여 이행내역을 점검

### □ 사후관리

- 국립축산과학원은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 대해 월 2회 유전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교배에 활용하도록 지도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보유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하지 않도록 사후관리(파손 등으로 사용불가 시는 농가자담으로 수선 또는 구입토록 시정조치)

- 사후관리 기간 : 기계·장비의 경우 5년

-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제재조치

○ 국립축산과학원과 사업시행기관은 연 1회 이상 참여업체의 정부 지원자금 운영실태 및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조금의 목적 이외 사용, 허위자료에 의한 보조금 집행 및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이미 지원된 사업비 회수

- 종돈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탈퇴한 해로부터 과거 2년내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정책사업 지원대상자에서 2년간 제외)

- 다만, 참여업체의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업 참여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

①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가 취소된 사업대상자

②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사업 참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부당행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이 확인되면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보조금 회수 및 장비 반납조치

##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비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1월)

## 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사업평가

- 매년 사업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의 부실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시행기관
  - 평가기간/대상 : 당해 연도, 참여·협력 종돈장
  - 평가항목 :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의무사항 이행

### □ 사업환류

- 사업부진 참여업체의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제 제
70점 미만	경 고
70점 이상 80점 미만	주 의

- “주의 → 경고 → 사업 참여 취소” 순으로 하며,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 후 다음 해에 “주의”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사업 참여 취소

## 나. 기타사항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비 지원 및 변경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

## ②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사업대상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시·도)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

- 지원제외 : 구제역, 돼지열병 등 돼지 1종 법정전염병 발생 업체는 1년간 제외

< 돼지정액등 처리업체 현황('18.12월 현재)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제주	계
7(4)	1(1)	4(2)	12(6)	8(3)	3(1)	1(1)	1(1)	3(0)	3(2)	1(0)	44(21)

\* ( )는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수

지원대상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

\* 다만,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3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에서 생산된 종돈의 경우 표현형이 우수한 종돈

- 지원제외 : 90kg 도달일령 135일 초과 또는 등지방두께 1.5cm 초과 또는 생후 15개월령 초과인 종돈

### < 우수종돈 기준 >

- (두록) 최근 5년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한 전체 검정 종돈(유전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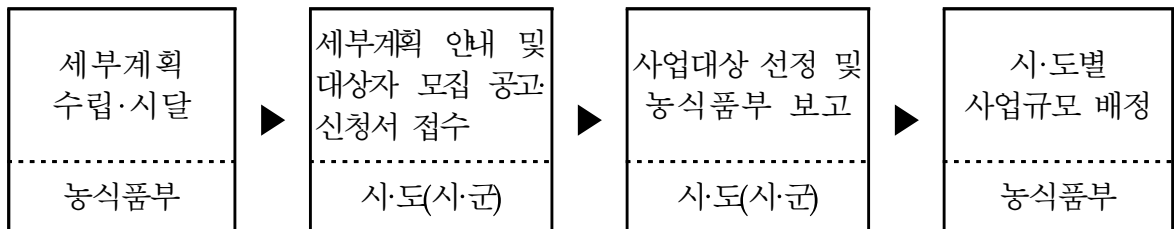
\* 다만,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3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의 종돈은 90kg도달일령 표현형 135일령 이내(단 등지방두께 1.5cm이하)

- 국립축산과학원이 매월 지원대상 종돈 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 제공
- (랜드레이스, 요크셔) 종돈 검정결과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기준 상의 종돈능력 등을 고려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종돈
- 동복 생존 산자수\* 14두 이상, 90kg 도달일령 135일 이하
- \* 해당 종돈의 어미가 생산한 동기군의 생존 산자수

## □ 지원기준

- 종돈 구매시점의 1개월 전·후의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원

###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 사업신청 단계 >

#### □ 시·도(시·군)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에 안내
  - 사업 참여 대상자 수 및 선정기준 등
  -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는 사업신청서(서식 7)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자는 연간 우수종돈 구매계획(월별 또는 자체 구매일정별) 및 지원 신청액 규모, 구매 종돈장,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또는 자체 방역·위생관리 및 정액품질관리 현황자료)을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우수종돈 구매계획 등을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시·도 : 방역·위생관리 수준, 정액 품질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 정액처리업체수를 감안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축산법 제21조에 따른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
    - \* 관할지역내 우수정액등처리업체가 없거나, 신청 저조시 돼지정액 품질 관리 및 위생·시설 수준이 높은 업체 선정
  - 관할지역내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 수 및 과거 정액채취용 종돈 구입실적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조정가능
  -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최종 선정
    - \* 정액증명서 발급실적,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
  -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및 사업 대상자별 사업규모(지원액)\*
      - \* 시·도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지원규모를 설정
    - 사업자별 월별(분기별) 우수종돈 구매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결정
  - 시·도별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수, 선정된 사업자의 종돈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량을 결정하고 시·도별로 사업량 통보
    -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및 해당 종돈장의 종돈 검정 및 유전능력평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
-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결정내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두수를 배정

##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참여·협력 종돈장)



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

## 라.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원 : 축산발전기금(국고 250백만원)
- 지원한도 : 일반종돈과 우수종돈과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검정결과)에 따라 차등(마리당 300~1,200천원)하여 정액지원
  - 정액 지원액은 국고 50%, 지방비(시·도, 시·군비) 50%로 지원
  - 사업대상자 별로 최대 30백만원 (우수정액등처리업체 50백만원)
- 지원액
  - 부계종돈(두록)

선발지수 (Index)	0.0이상~3.5미만	3.5이상~4.5미만	4.5이상~6.0미만	6.0이상
표현형	135일 이내	133일 이내	127일 이내	122일 이내
지원액	300천원	600천원	900천원	1,2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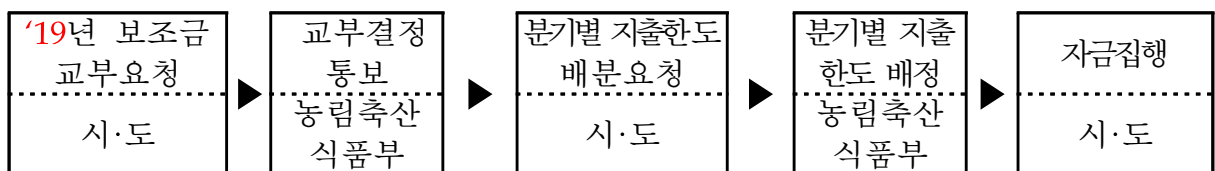
\* 선발지수 = 90kg도달일령 3 : 등지방두께 1 (축산과학원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 모계종돈(랜드레이스, 요크셔) : 900천원

##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 자금배정·집행

- 분기별로 시·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출한도 배분을 승인받고,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 □ 사업비 신청

- 선정된 정액등처리업체는 분기별로 종돈구입비 지급신청서(서식8)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지원 대상돈 구입시기 : 2018.12.1 ~ 2019.11.30
- 매월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시행기관이 제공하는 지원대상 종돈 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를 첨부
  - \* 국립축산과학원은 매월 10일까지 전 월의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의 유전능력평가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시행기관은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기재
- 모계통(랜드레이스 및 요크셔)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중 종돈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증명서를 첨부
- 시·도는 신청자료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신청
  - 시·도는 시행기관에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결과, 검정성적, AI 센터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자료 확인결과 적정하면 시·도에 보조금 교부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교부 결정에 따라 집행

##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사후관리

- 시·도(시·군)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사항 : 보조금 지급 대상종돈의 유무,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기준 및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실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시·도, 사업대상자

\* 필요시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행기관 협조

- 현장점검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사항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사. 결과보고 및 정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사업추진실적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서식 9
○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서식1>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

### 1. 사업신청자

이름	(인)	종돈업등록번호	
업체명		전화	
주소			

2. 사업신청내용 : ①참여종돈장      ②협력종돈장      ③핵군AI센터

### 3. 일반현황

종돈 사육 현황 (두)	모든 두수(AI센터는 옹돈두수)							
	L	Y	D	B	재래돈	기타	계	비고

### 4. 첨부서류

- ① 질병검사결과 1부(최근 1년)
- ②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또는 우수종축업체 인증서 사본 1부
- ③ 자돈등기, 검정, 분양실적 1부
- ④ 축사소재 위성사진, 설계도면, 축사입구전경, 방역시설, 탈의실, 샤워실 사진 등 1부
- ⑤ 근무자 관련 학위, 종돈업체 근무경력, 축산관련 자격증 등 1부

위와 같이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19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4>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협력 종돈장 의무이행각서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 참여종돈장 , 협력종돈장 )으로서 아래와 같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 참여모돈 두수의 10%이상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 선발된 핵군종 모돈 정액을 이용하여 계획교배 실시(선발된 종돈의 정액 최소 1회 사용)
  - 참여모돈이 생산한 자손 중 일정두수 이상을 검정한다.
    - \* 참여종돈장 : 부계 ♀2두, ♂2부/복당, 모계 ♀3두, ♂0.4두/복당 이상
    - \* 협력종돈장 : 부계 ♀1두, ♂1부/복당, 모계 ♀1.5두, ♂0.2두/복당 이상
  - 참여모돈 전두수 자돈등기를 실시한다.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의무사항 불이행시 시정 조치를 받거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관·시행기관에서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시 시정조치 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부당행위, 사업부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 및 반납한다.

2019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5>

## 질병검사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은행) :		

2.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3. 질병검사 내역

연번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 월일	질병검진항목					추가 검진항목	기타
			돈열병	오제스키	구제역	브루셀라	PRRS		

※ 신청대상돈이 많은 경우 질병검진결과 내역 첨부 가능

4. 첨부서류 : 질병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질병검사결과 및 청구서류 사본 1부

위와 같이 질병검사비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9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6>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 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2017	2018	2019년			진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C/B	C/A
					계획(B)	실적(C)		
○ 돼지개량 네트워크사업 부계 - 참여업체 - 정액공유 - 검정(수) - 검정(암) - 육질검정(육안) - 육질검정(이화학) - 종돈선발	개소							
모계 - 참여업체 - 정액공유 - 검정(수) - 검정(암) - 육질검정	개소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전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계획	실적	%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비 - 수태지검정지원비 - 우수종돈구입비 - 우수종돈개량지원비 - 질병검사비 - 육질검사비 - 친자감정비 - 정액택배비 - 산자검정자료수집비 - 정자분석비								
○ 운영비 - 회의비, 인건비 등								



<서식 8>

##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은행) :		

2. 구입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3. 우수 종돈 구입 내역

연번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선발지수	90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구입종돈장	구입일자
1								
2								
3								
4								
5								
6								
7								

\* 종돈 구입실적은 돼지통합AI센터프로그램 입력자료에 근거함

4. 첨부서류 : 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우수종돈 구입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9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도지사(시장·군수)**

<서식 9>

##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결과보고서

###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 구입 종돈두수	개소 두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개소 두수)	사업량			사 업 비( /4분기)까지												
		계 획	실 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 구입비 지원 우수종돈																	

기 타 가 축 개 량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 목 적

- 흑염소 개량기반을 구축하고 능력검정을 통하여 우량 흑염소를 선발하여, 흑염소 농가에 종축 공급
  - 우량 종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흑염소 생산기반 안정화

### 나. 사업대상 및 선정

#### □ 사업대상자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흑염소 개량을 시행하려는 기관 중 선정된 지자체

#### □ 사업신청 자격

- 염소사 : 가임 암염소 250두내외, 숫염소 50두 내외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염소사 보유 계획서 제출

\* 예) 번식·분만 시험동 : 교배 60칸(9㎡/6두/칸), 분만 60칸(6㎡/칸), 기타시설 등

- 검정시설 : 체중, 체위 측정(유도로 포함) 및 초음파 촬영 시설 등 보유(또는 보유 계획 제출)

\* 예) 육성·비육 시험동 : 40칸(32㎡/30두/칸), 기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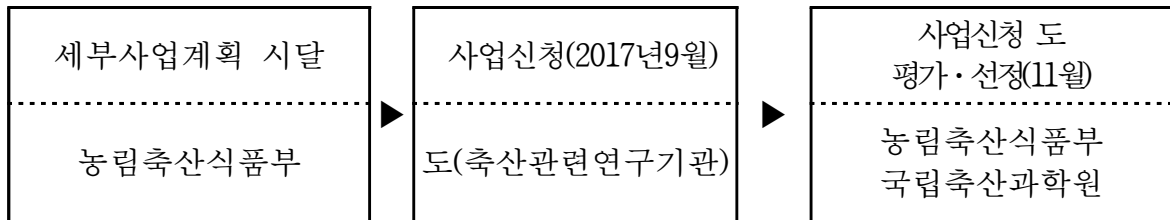
- 번식관리 : 암소 전 두수 계절번식

- 질병관리 : 구제역 백신 및 검진 매년 실시

#### □ 시행기관 선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중 사육시설, 검정시설 보유 여부, 인력 등 사업시행 여건을 평가하여 선정

- 사업을 희망하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은 신청서와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18.9월)
  - \* ① 사업 신청서, ② 사업 참여 압염소 보유 내역서(또는 보유 계획), ③ 축산업 허가(등록)증, ④ 시설보유 내역 및 사진(또는 보유 계획)
- 국립축산과학원은 시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현장심사 후 신청기관을 평가
  - \* 심사위원회 : 농식품부, 축산원, 종개협 등
  - \* 서류 심사 : “흑염소개량지원 사업대상 선정심사표”(참고)에 따라 신청자격 확보 여부를 심사
  - \* 현장 심사 : 서류 심사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의 사실여부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 선정위원회 심의후 최종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 18.10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신청 도(축산관련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시행기관을 선정( '18.11월)



#### 다.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형태 : 정액 보조
- 사업량 및 사업비 : 1개소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 사업비 용도 : 염소사 신축, 관련장비 구입비
- 사업내용(각 염소(산양)종별 선택하여 육종)
  - 사업수행방향
    - 각 사업시행 전년도에 선정후 시행년도에 자금지원(1개소/년)

- 산양종류
  - 재래흑염소 등
- 흑염소사 신축(개보수), 종부사, 분만사등 기타 필요시설 신축
- 인공수정, 정액채취등 관련장비 구입
- 흑염소 개량 축군 조성(도자체 사업비 추가확보)
  - 가임 암염소 250두, 숫염소 50두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축사규모 등 여건에 따라 사육두수 조절
    - \* 사육두수 조절 시 사업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 사업 방향에 따라 종축수입(수출국 혈통등록 필수)여부 협의
  - 각 도별 개량방향을 설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후 추진
- 능력 검정을 통한 흑염소 선발
  -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 별로 암염소 및 숫염소 능력검정
- 축산 농가서비스 : 염소사육농가 또는 협회단위로 공급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연도 가축개량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구 분	사업물량	단가(억원)	사업비(억원)
흑염소 개량지원(2018 ~ 2021까지)	4개소	10	40

**라. 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지원

**□ 사업주관 : 가축개량총괄기관(국립축산과학원)**



-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 신청기관 평가(선정 위원회를 구성, 현지심사)
- 재래 흑염소 육종시 협의후 해당 축종 우선공급
- 수입 종축에 대한 자료 제공
- 선발된 흑염소 유전능력평가 및 종축 선발
- 사업 추진 매뉴얼 마련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사업관리
  - \* 사업추진기관 현지점검 및 필요시 기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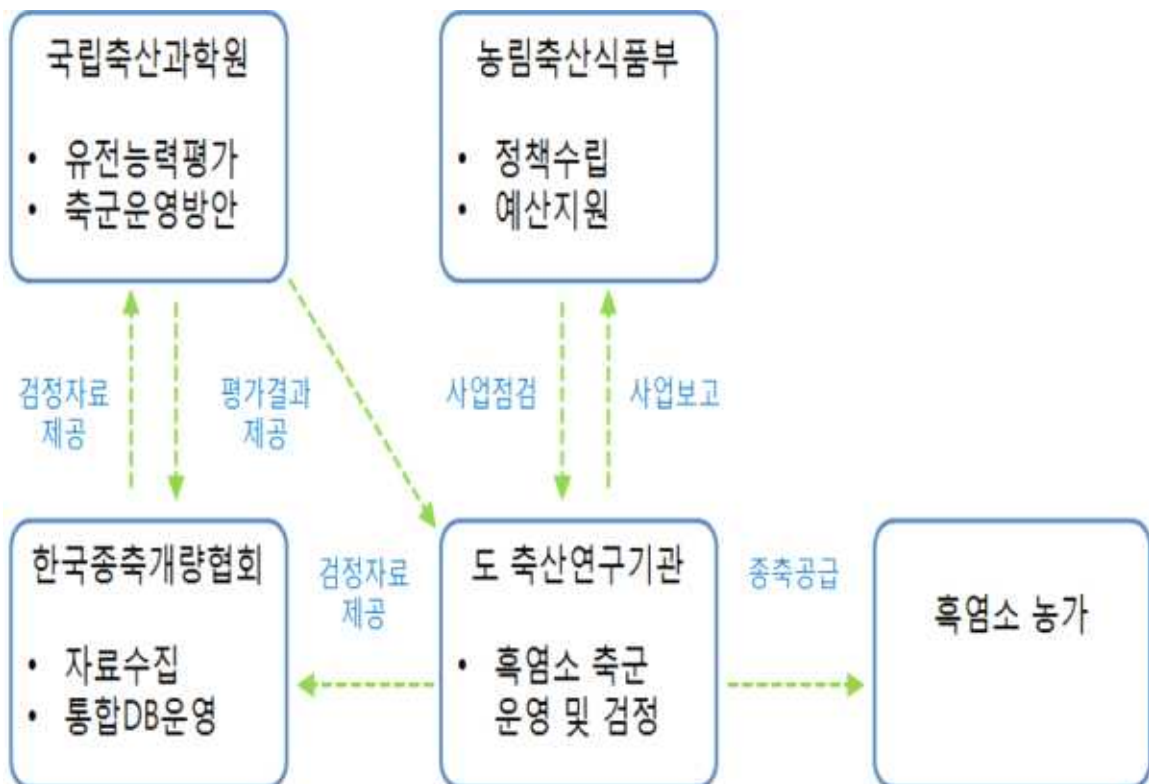
□ 사업시행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개량축군, 검정시설, 정액처리시설, 인력 등 개량기반 확보
- 계획교배, 능력 검정 실시 및 도축후 도체정보 수집
- 흑염소 농가에 대한 종축 공급

□ 협조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염소종축 등록, 검정, 심사 등 자료 수집 및 DB 운영관리

<사업추진체계도>



마. 사업 세부추진계획

## □ 시기별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2017년 11월
- 인허가 완료 : 2018년 6월 이전
- 공사 착공 : 2018년 9월 이전
- 공사 완료 및 입식 : 2018년 11월
- 사업비 정산 및 완료보고 : 2018년 12월

## □ 개량 축군 조성

- 12개월령 이상 암염소 250두, 숫염소 50두 조성(사업 정착시)
-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 매년 적정두수의 유전자원 도입
  - \* 재래종 : 축과원 유전자원센터 협조

## □ 번식우 관리 및 계획교배

- 사업참여 암염소는 상반기(4~6월) 번식과 하반기(10~12월) 번식으로 구분하여 전 두수 계절번식
  - 숫염소 1두당 암염소 5두 자연교배
- 사업시행기관은 보유 암염소의 유전능력과 숫염소의 유전능력 및 근친정도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계획교배를 실시
- 태어난 모든 염소는 개체식별 이표를 장착하고, 12개월령까지 능력검정(생시, 3, 6, 9, 12개월령 체중측정, 외모심사, 초음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능력검정 범위 및 기간 등 조정

## □ 능력검정

- 체중측정 : 생시, 3, 6, 9, 12개월령 체중 측정
- 체위측정 : 생시, 3, 6, 9, 12개월령 체장, 체고 등 체위 측정
- 초음파측정 : 12개월령 초음파 촬영(필요시)
- 외모심사 : 모색의 흑색 비율 조사

## □ 씨염소 선발

- 국립축산과학원은 능력검정 자료를 이용하여 12개월령 체중검정 이후 유전능력 평가 실시
  - 선발결과를 사업참여 기관에 통보

- 시행기관은 모색(흑색비율 90% 이상)과 유전능력을 고려하여 12개월령 이상 암염소 250두, 숫염소 50두 되도록 종축 선발

\* 사육두수 조절 시 사업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 □ 혈통관리

- 생시체중을 측정한 모든 흑염소의 혈통관리 실시

\* 생시체중 측정 후 이유 전에 폐사한 경우라도 기록관리 유지

- 정확한 혈통관리를 위해 검사기관에 친자감정을 의뢰

\* MS(microsatellite) 또는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을이용 친자감정 실시

#### □ 질병관리

- 매년 보유축에 대한 구제역 검진, 백신접종 실시

#### □ 자료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흑염소의 개체정보, 번식정보, 능력검정정보, 도체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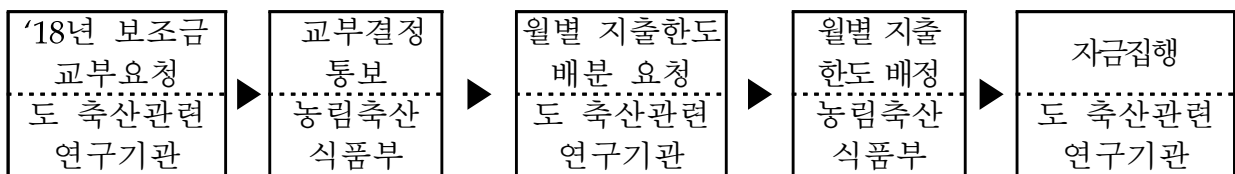
- 시행기관은 주기적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

### 바. 사업 지원 및 사업비 관리

#### □ 자금배정·집행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점검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사업시행기관이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기술지원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 사업비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기관에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사업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자체서식
○ 정산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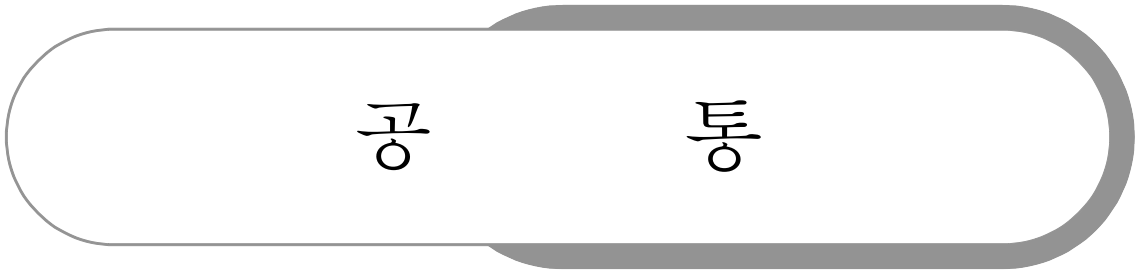
## 흑염소 개량지원사업 시행기관 선정 심사표

기관명 : \_\_\_\_\_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점	비고
기반 여건 (20)	도내 사육 두수	10	3만두 이상(10) / 2만두 이상(7) / 2만 미만(4)		
	도내 사육 농가	10	1천호 이상(10점) / 500호 ~ 1천호 (7점) / 500호 미만(4점)		
인력 구성 (10)	육종학 석·박사	5	2명 이상(5점)/1명(3점)/0명(1점)		*연구인력
	기타(번식, 사양 등) 석·박사 인원수	5	2명 이상(5점)/1명(3점)/0명(1점)		*연구인력
사업 환경 (15)	분만사 보유 여부(또는 계획)	5	보유(또는 연내 신축계획)(5점) 보수 후 사용(또는 차년도 신축계획)(3점) 미확보(1점)		
	비육사 보유 여부(또는 계획)	5	보유(또는 연내 신축계획)(5점) 보수 후 사용(또는 차년도 신축계획)(3점) 미확보(1점)		
	검정측정시설 및 유도로 보유 여부(또는 계획)	5	보유(또는 연내 신축계획)(5점) 보수 후 사용(또는 차년도 신축계획)(3점) 미확보(1점)		
사업 추진 (30)	년도내 사업완료 여부(부지, 인허가)	20	인허가 추진완료(20)/추진중(10)/부지만확보(5)		예 산 확 보 , 인허가 방법 등 숙지, 서 류 검토
	예산확보여부	10	확보(10) / 미정(5) / 불가(0)		
기초 자료 관리 (15)	개체관리기록부	5	양호(5점)/보통(3점)/미흡(1점)		한우 등 다른 축종 기록
	인공수정기록부	5	양호(5점)/보통(3점)/미흡(1점)		
	생산 기록부	5	양호(5점)/보통(3점)/미흡(1점)		
사업 수행 의지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양호(5점)/보통(3점)/미흡(1점)		
	사업수행 의지	5	양호(5점)/보통(3점)/미흡(1점)		
<b>합 계</b>		<b>100</b>			

심사일 : 20 . . .

심사위원 : \_\_\_\_\_(서명)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 목 적

- 육량과 장수성 및 후대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형질에 대한 선형심사를 통해 개량방향 제시 및 우수한 개체를 선발
  - 우량 암소 집단 형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전능력 검정·평가와 함께 체형형질 심사를 활용
- 개량농가에 선형심사를 활용한 선발·도태 및 계획교배 정보 제공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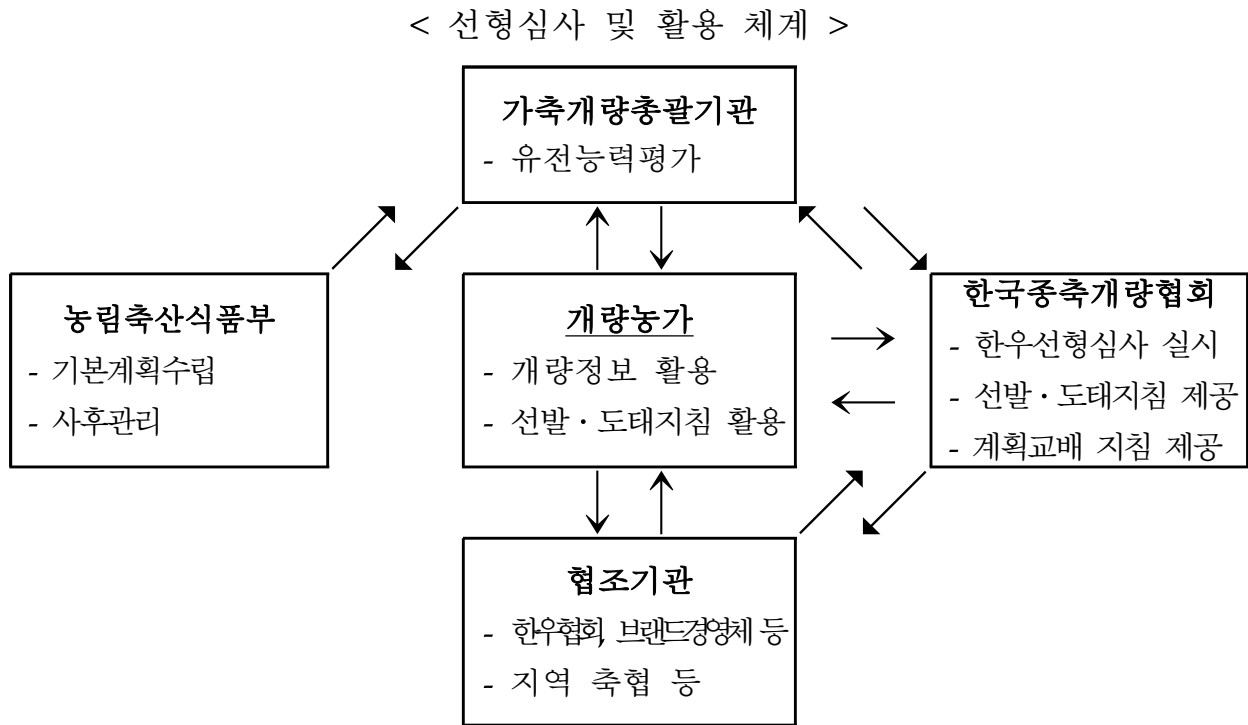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2,229	500	300	300	300
- 보조	1,020	150	150	150	150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1,209	350	150	150	150

### 라. 사업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마. 사업추진체계도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자 : 한우암소검정참여농가 및 번식농가
-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한 농가
-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등록된 가축

###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

###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선형심사비 : 선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라.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형태 : 정액보조

□ 사업내용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www.aiak.or.kr) 공고 및 홍보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지역축협 및 한우농가에 안내
  - 지역축협은 신청농가의 자격기준을 검토 후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한우선형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물량배정
- 사업대상 선정 : 기초등록 이상우로서 한우암소검정 참여농가 및 번식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함
- 심사대상우 : 우군심사(농가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1산차 이상 분만기록이 있는 기초등록 이상인 개체
- 심사형질 : 개체정보, 일반외모, 자질, 전구, 중구, 후구, 지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을 신청한 농가에 방문하여 선형심사를 실시하고, 선형심사 자료를 D/B로 구축
- \*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선형심사 결과표 및 개체별 개량요망부위가 기재된 계획 교배용 씨수소 선정표를 농가에 제공하고 선발·도태의 지침으로 활용

####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한도액 : 5,000원/두
- 지원 범위 : 한우 선형심사비

####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이행점검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진실적 점검 : 반기별 1회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한우선형심사 성적을 분석하여 성적표를 농가, 지역조합에 제공

##### □ 사후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혈통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 대상자는 참여 제한 가능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연1회 이상 선형심사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심사성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

##### □ 결과보고 및 정산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
  - 선형심사 결과에 따른 한우개량 활용도 및 경제성 분석 포함

### 3. 기타사항

####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한우 선형심사 결과보고회 개최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개량부)는 선형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우선형심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축협 및 농가의 개량의욕 고취
- 참여대상 : 해당연도 참여 조합 및 농가
- 평가항목 : 선형심사 실적, 선형형질 19개 형질, 등급형질 6형질
- 환류 :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량성과가 낮은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20년도 사업참여 제한

#### 나. 기타사항

##### □ 2020년 사업예고

- 한우 선형심사사업은 정책자금 지원과 연계하여 농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암소개량 추진

<서식 1>

## 한우선형심사 신청서

조합명 :

사업물량(경산우)

- 농가호수 :

- 신청두수 :

담당자 :

○ 사무실 :

○ 휴대폰 :

○ 팩스 :

심사희망일자

구분	심사희망일	농가호수	두 수	비 고
1차				
2차				
3차				

※1인 1일 심사두수 : 80두 내외(경산우 20두 규모, 4농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귀하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 목 적

- DDA·FTA에 대응하여 선진화된 가축개량 기술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신기술 습득과 기술력 향상
  - 개방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개량, 초음파, 컨설팅 등)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 개량농가·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교육하여 고유 유전자원 보호 및 고급육생산 기반 확충
- 전문화된 농가 지도요원 육성으로 신기술의 보급 효과 확산 및 내실있는 가축개량지원 사업 추진
- 축산분야 R&D 과제의 사전 발굴 및 추진방향 검토를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보급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47조(기금의 용도)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182	210	174	174	174
- 보 조	146	175	145	145	145
- 용 자					
- 지방비					
- 자부담	36	35	29	29	29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가축개량원

- 시행기관 : 농협 가축개량원
- 교육기관 : 농협,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 교육대상 : 한우 및 젃소농가, 전문 검정요원(컨설턴트), 조합 지도원, 개량기관 소속직원, 학계·연구기관·업계 종사직원 등

마. 사업추진체계

구 분	기관명	주요업무	비 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사업 주관기관 세부 기술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배정 ○ 사업 총괄 관리	
주관기관	농협 가축개량원	○ 교육사업 세부 추진계획수립 ○ 교육계획 승인요청 및 자금배정 신청 ○ 교육기관 사업비 배분, 교육계획 변경 검토 및 승인 ○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비 집행 및 교육기관별 정산 ○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	
교육기관	농협, 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 교육 및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 사업비 신청 ○ 교육결과 및 정산 보고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교육기관
  - 가축개량기관 중 관련된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농가 및 지도원 등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신청한 기관

-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축산분야 R&D 추진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로 미래축산포럼을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신청한 기관

○ 교육대상

- 양축농가 : 한우 또는 젓소 사육농가로 교육참석 희망서 제출 농가
- 전문 검정요원(컨설턴트) : 지역축협, 한우조합 등에 근무하면서 검정참여농가 가축 검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검정요원
- 조합 지도원 : 지역축협, 한우조합 등에 근무중인 지도원
- 가축개량 기관 소속직원 : 가축개량기관에 근무중인 직원
- 학계, 연구기관, 축종별 연구회, 관련업계 근무중인 직원
- 기타 : 일반인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사람

## 나. 교육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 수요조사

- 농협 가축개량원은 교육비 집행지침과 교육사업 계획서를 마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수요조사 실시('19.2월)
- 해당 교육기관은 교육비 집행지침과 교육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 가축개량원에 신청('19.2월)

### □ 대상자 선정

- 농협 가축개량원은 각 기관별 교육계획서를 검토하여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19.3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가축개량원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 후 가축개량기술교육을 확정하고 농협 가축개량원에 통보
- 농협 가축개량원은 확정된 교육계획을 교육기관에 통보('19.3월)

##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개량기술교육 신청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제한
- 미래축산포럼 신청기관의 포럼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제한

## 라. 사업량 및 지원조건

### □ 교육비 지원기준

- 농협 가축개량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제출한 “가축개량기술교육 계획서”를 검토하여 교육기관별 가축개량 기술교육비 예산 및 지원기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 교육기관에 통보
  - 교육 인원, 기간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교육비 지원기준 확정

### □ 지원방법

- 농협 가축개량원은 해당 교육기관별 가축개량기술교육비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으로부터 사업비 교부신청을 받아 해당 교육기관의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에 계좌법인 통장으로 교육비 지급

### □ 사업의무

-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에 맞추어 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 수립된 교육계획을 해당 연도에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
- 각 교육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인 농협 가축개량원에서 교육대상 자별로 정한 주요 교육내용을 필히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
- 각 교육기관은 교육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교육결과, 집행내역 및 교육결과의 평가·환류를 위해 교육 및 설문조사 결과를 농협 가축개량원에 보고
- 농협가축개량원은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교육실적을 검토하여 교육실적과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1월)



## 마. 교육과정 및 범위

교육과정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농가교육		○ 한우·젓소 육종농가	○ 암소검정우 유전능력 평가 ○ 계획교배를 통한 계절번식 방향 ○ 후대검정사업의 이해
컨설 턴트 교육	유우군 검정원 기술교육	○ 유우군능력 검정원	○ 계획교배를 위한 정액선택 요령 ○ 검정기록 지침 및 조사방법 교육 ○ 교육을 통한 정확한 검정자료 생성
	한우암소검정 사업단 기술교육	○ 컨설팅기관 ○ 조합지도원 ○ 일반 컨설턴트	○ 한우 암소검정사업 실시 요령 ○ 암소검정 친자확인 교육 및 활용 ○ 암소검정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전문가 교육	가축인공수정사 교육	○ 개업인공수정사	○ 가축개량시책 방향 ○ 가축개량 정보보급 및 계획교배 추진 ○ 가축의 개량효과 ○ 농가 방문시 필요한 방역(질병)관리 교 육
	선형심사교육	○ 한우 및 젓소관련 기관 실무자, 농가	○ 한우 및 젓소 체척 및 심사실습 ○ 한우 및 젓소의 해부학적 이해 및 외 모심사법
	(OPU) 수정란기술교육	○ 수정란이식 기관 관련자 및 희망자	○ 선진화된 수정란 기술 습득 ○ OPU 수정란 생산기술을 활용한 수태 율 증진 방안 ○ 수정란 이식기술 활용방안
축산분 야 R&D	미래축산포럼	○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전문가	○ 축산 기술과제 활용방안 마련 ○ 축산분야 기술개발 및 로드맵 작성 ○ 축산분야 현안사항 논의 및 기술개발과 제 검토(분과별 활동지원) ○ 축산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합 계(7개 과정)			

※ 2018년 교육실적을 감안하여 2019년 세부추진계획 수립

##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 교육기관 사업비 신청

- 교육기관은 기관별 지원한도액에 자부담(20%)을 포함한 교육 계획서를 마련하여 농협 가축개량원에 사업비 지급 신청(1개월 전)
  -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자금집행계획서, 계좌이체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단, 미래축산포럼 운영기관은 자부담(20%) 제외

### □ 자금배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농림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 교육기관 사업비 지급

- 농협 가축개량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및 교육비 지원 기준에 따라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e나라 도움을 통해 해당 교육기관의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에 지급

### □ 교육기관 자금집행

- 교육기관은 농협 가축개량원에 제출한 교육계획서의 항목별 자금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3. 사후관리

### 가.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교육기관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농협 가축개량원은 가축개량기술교육 평가 및 환류계획과 가축 개량기술교육 및 교육비 집행지침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교

## 육기관 담당자 교육실시(19.3월)

### □ 교육기관 사업비 신청서 검토

- 농협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사업비 신청서류에 대해 교육내용 및 사업비 집행기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자금지원

### □ 결과보고 및 정산

#### ○ 교육기관 결과보고

- 각 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
- 각 교육기관은 교육비 정산을 위해 교육종료 후 2주 이내에 교육결과 및 집행내역을 농협 가축개량원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원금과 이자)을 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
- 각 교육기관은 교육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교육결과 및 교육참석자에게 실시한 설문결과(엑셀작성)를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협 가축개량원에 제출

#### ○ 교육 결과의 취합·보고 및 정산

- 농협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별로 취합한 교육결과 및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원금과 이자)을 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
- 농협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별 교육결과, 평가결과, 당해 연도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나.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교육기관별 교육실적 평가

성과지표	목표	산출방법	지표 설정사유
교육 참석율	80%	참석자/계획인원	사업홍보 노력도 평가
교육 만족도	80점	참석자 설문조사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시 평가
학습 성취도	60점	참석자 Quiz 등	학습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교육의 효과를 분석

## □ 교육평가에 따른 환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다음 연도 교육기관 지정 제외. 단, 미래축산포럼은 평가에서 제외
  1. 평가결과 교육 참석율 60% 미만
  2. 교육 만족도 점수 60점 미만
  3. 학습성취도 40점 미만
- 농협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이 제출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교육기관에 통보
- 각 교육기관은 농협 가축개량원에서 통보받은 교육평가 내용을 교육과정(교육내용, 일정, 강사진 등)의 질적 개선에 활용

## 4. 기타사항

### □ 2020년도 사업 수요조사

- 2019년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19.12월에 실시하는 교육 수요조사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 가축개량원에 신청
  - 교육기관은 자부담 20%를 포함한 교육계획서 제출
  - 미래축산포럼은 운영을 교육계획으로 대신하며, 자부담(20%) 제외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 목 적

- 우수 유전자원 발굴 및 개량사업의 성과를 확인·평가
- 고능력우 선발 및 한국형 보증씨수소 생산기반 구축
- 정보교류 및 산업지속성을 위한 후계낙농인 육성
-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추진으로 우수유전자원 홍보 및 수출모색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 다.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220		260		280	-
- 보조		24		30		30	-
- 용 자							
- 지방비							
- 자부담		196		230		230	-

※ '1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

### 라. 사업주관기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시행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2. 2019년 주요 행사내용

### 가.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 제23회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농가

### 나. 대상자 선정

-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출품 농가 선정 등 사업 추진

###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운송비 : 출품축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비 : 30백만원(축발기금)

### 라. 지원형태 및 행사내용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민간경상보조)

□ 지원형태 : 출품축 운송비용중 일부지원

□ 행사내용

#### ○ 시기 및 장소

- '19년 10월 경,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

※ 농업박람회(11.8~11, kintex)연계시 시기 및 장소 변경 가능

#### ○ 참가규모 : 100농가 18개부문 200두, 5천명 참관예정

\* '13년 189두, '15년 156두, '17년 174두

※ (참가자 모집방식/일반국민 관람 가능 여부)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낙농가, 지역축·낙협 및 낙우회에 참가신청접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일반인 단순 관람 가능

## 마. 지원 조건

### 지원기준

- 한국중축개량협회는 품평회장에 출품된 출품우에 한하여 출품 운송비 지원
- 한국중축개량협회는 출품농가의 운송비중 일부를 출품두수에 비례하여 출품농가 통장으로 출품운송비 지급

##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사.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

### 이행점검

- 사업시행기관은 출품운송비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을 출품농가에게 공문으로 제공

### 결과보고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

## 15 한국형젓소 이상모델 구축사업

### 1. 사업개요

####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 추진배경

- 낙농선진국 환경에 맞춰진 국내 젓소체형개량 시스템 개선 필요
  - 국내젓소체형개량 개선을 위한 이상형모델 설정을 위해선 젓소 체형 실측자료와 목장 사육정보 조사 필요
  - \* 국내 젓소체형평가 시스템 도입국가: 미국('84년), 캐나다('09년)
  
- 낙농선진국의 경우 이상형모델 설정을 통한 체형개량 성과 극대화
  - 국내의 경우 이상형모델 설정을 통한 효과적인 체형개량 미흡
  - \* 이상형모델을 기반으로 한 자국환경에 적합한 체형개량 시스템 구축 국가
    - 미국(Ideal Type), 캐나다(True Type), 독일, 일본 등
  - \* 국가별 체형개량에 따른 평균산차 현황
    - 한국 : 2.4산, 캐나다: 2.7산, 미국: 2.7산, 영국: 3.9산
  
- 국가개량목표에 있어 농가의 체형개량 방향의 현실적 인식 부족
  - 국내 환경에 적합한 국가 젓소체형 개량모델 제시로 농가의 개량사업 방향 설정 필요
  - 국내환경에 최적화 된 한국형 씨수소 생산 필요



## □ 목 적

- 한국형 홀스타인 체형개량목표 달성에 적합한 이상형 모델 구축
-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이상형 기준 설정
- 검정자료와의 체형자료의 융복합으로 한국형 젓소의 우수성 확보
- 국내유전자원 수출시 유전능력 신뢰도 제고

##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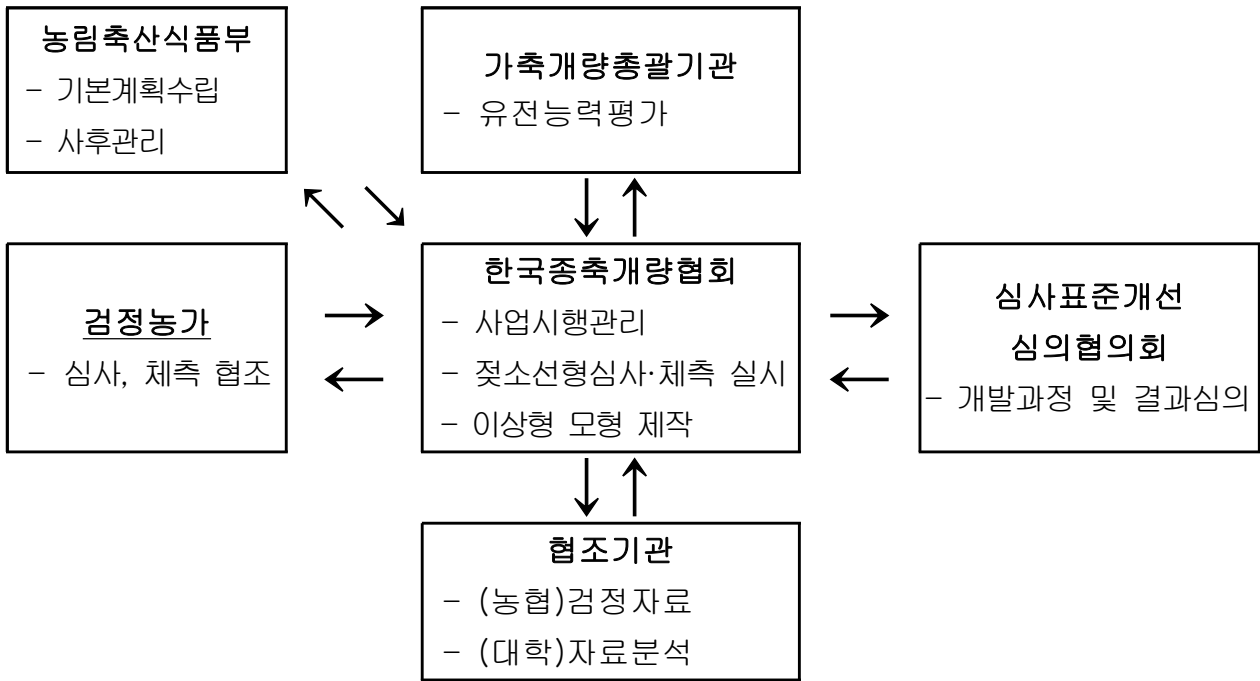
##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까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합 계	-	274	425	552	-
- 보 조	-	274	425	552	-
- 용 자					
- 지방비					
- 자부담	-		-		-

## 라. 사업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마. 사업추진체계도



### 바. 기관별 역할

#### ○ 사업총괄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기본계획을 수립 및 예산지원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 ○ 가축개량총괄기관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자료 제공
- 유전능력평가시스템 개선

#### ○ 사업주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세부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선형심사 및 체측자료, 농가사육정보 수집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이상형 모델 구축사업 시행관리 및 이상형모델 제작 배포

○ 협조기관 : 대학, 연구기관

- 체측자료, 농가사육정보와 검정자료 이용한 생산성 분석
- 구축된 자료를 이용한 기초분석 및 형질별 상관 분석

○ 협조기관 : 농협경제지주

- 유우균 능력검정사업 검정자료 제공 및 사업협조

##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가.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 젓소개량사업 참여농가

□ 지원요건

○ 기초자료 수집비

- 사업주관기관에서 선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형심사와 체측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

○ 자료분석비

- 수집자료와 생산·번식능력의 연관성 분석 및 장수성 분석 필요
- 사업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내대학에 자료분석 의뢰
-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2개 과제를 1년 단위로 수행
- 분석기관은 자료분석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가축육종 분석 분야 5년 이상 경력[관련기관근무기간 또는 논문발표수(5편) 기준]이 있는 자를 보유한 기관으로 지정

### 나. 대상자 선정



- 자료분석 기관(대학)에서는 사육두수와 개량정도에 따라 사업량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농가를 선정 후 시행기관에 내역 제공
  - 자료협조: 국립축산과학원(유전능력평가자료), 농협(검정자료)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농가를 확정
  - 젖소개량사업 참여농가 중 체측 및 자료수집에 협조적인 농가
  - 검정참여 농가 중 혈통등록 비율 60% 이상인 농가
  - 농가별 경산우 두수 20두 이상 보유한 농가
- 사업참여농가가 보유중인 24개월이상 경산우 전두수 자료수집
- 참여 농가의 경산우를 대상으로 개체자료를 수집하고 1산차 개체는 차기년도에 중복하여 3산차까지 자료 수집 가능(총 2만건 내외)

####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자료수집비: 이상모델 구축에 필요한 제반경비(2019~2021) 및 모형(조형물)제작·보급(2021)비용>
  - 자료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분석 컨설팅 비용
  - 선형심사 및 체측, 농가사육정보 수집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출장비, 차량비, 보험료 등)로 집행
  - 조사사례비는 자료수집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급
  - 모형 제작·보급 비용
  - 심사표준개선 심의협의회 운영, 워크숍 및 보고회 운영
- <협의회 운영비>
  -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및 회의운영비
  - 이상모델구축을 위한 외국사례조사를 위한 사업비(항공료, 체제비, 자문료 등)로 집행

- 이상모델 구축완료시 관련기관 및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보고회 경비

○ <자료분석비>

- 자료분석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개발, 장비확보 및 유지비, 인건비, 컨설팅비 등

라.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지원형태 : 전액보조

사업내용

<체형 실측 및 농가 사육정보 조사>

- 사업량 : 약 20,000건
- 사업비 : 844,700천원
- (체형실측) 선정된 농가에 방문하여 해당개체에 대한 체측조사 실시
  - 분석기관으로부터 받은 개체자료(약 4만건) 중 선정된 대상우 실측
  - 체형실측 및 사육정보 조사자 요건 : 축산관련 대학 전공자
- \* 농가 조사사례비 지급: 10천원/두 지급

<표1. 젖소 체측 항목>

체측 형질	개수	기대 효과
뒷유방 너비, 뒷유방 높이, 유두길이, 유방깊이	4	생산성 향상
영덩이 기울기, 영덩이 너비	2	번식 개선
뒷꿈치깊이, 키	2	장수성 향상

\* <별첨1> “젖소 부위별 체측방법”

- (선형심사) 선정된 농가에 방문하여 해당개체에 대한 선형심사 실시
  - 한국종축개량협회 젖소외모심사 기준에 준하여 실시함
  - 선형심사자 요건: 젖소개량업무 3년이상 종사 및 해외선형심사

연수를 이수한 젓소선형심사 자격증 보유자

〈표2. 젓소선형심사 조사대상 항목〉

구분	영덩이	유방	지제	유용강건성
선형형질 (24개)	영덩이기울기	유방깊이	발굽기울기	키
	영덩이너비	유방질	뒷꿈치깊이	전구높이
	허리강건성	정중제인대	뼈 질	가슴너비
		앞유방붙음성	옆본 뒷다리	체심
		앞유두위치	뒤본 뒷다리	예각성
		뒷유방높이	보행성	BCS
		뒷유방너비		
		뒷유두 위치		
		유두길이		
결점형질 (29개)	들어간 항문	경사	발톱기형	얼굴기형
	들어간 미근	역경사	약한발목	약한턱
	꺼진 미근	짧은앞유방	부은비절	얇은앞갈비
	숯은 미근	짧은뒷유방	좁은다리뼈	약한어깨
	꼬리 기형	형태불량	경련	약한등
		분방불균형	곤부위치불량	약한활력
		폐분방	앞발굽외향	몸균형부족
		융합유두		
		앞유두후위		
		뒷유두후위		

\* 〈별첨2〉 축산법시행규칙 제9조 4항 “가축의 등록등”

- (사육정보) 향후 국내젓소개량목표 수립·달성에 필요한 농가사육정보 조사
  - 사료급여방법, 착유방식, 우사형태, 노동력형태, 분뇨처리방법 등

\* 〈별첨3〉 “한국형젓소 이상모델 구축사업 자료조사서”

- (추가자료) 농가 생산성 증대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자료 조사

〈표3. 젓소 추가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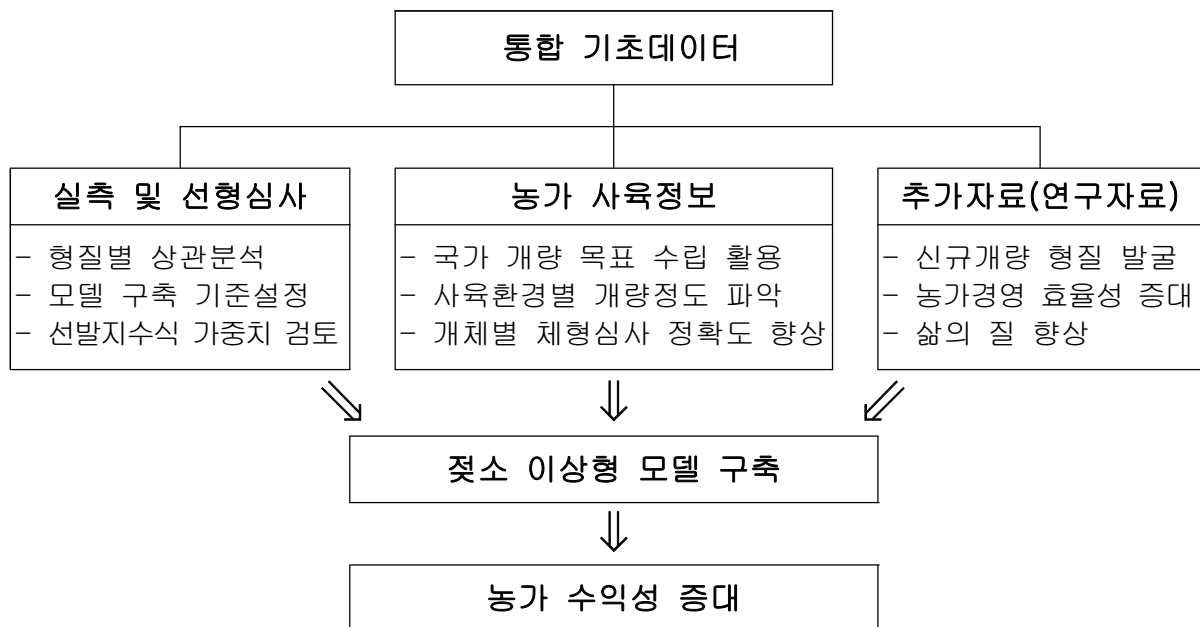
형질	기대 효과
엉덩이 길이	· 엉덩이 골격발달 수준을 확인하여 번식능력 향상
흉위	· 월령에 따른 체중 및 발육 상태를 확인하여 적정 번식월령 및 경향 확인
착유속도	· 작업자의 노동 피로도 감소 및 사양·번식 노동에 집중
유두둘레	· 유두크기 변형 및 기형으로 인한 착유작업 지연 해소

\* <별첨1> “젖소 부위별 체측방법”

○ (자료구축) 통합기초자료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모든 기초자료(체형실측, 심사, 사육정보)는 시행기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
- 향후 통합 관리용 서버구축으로 모든 개량기관이 체형기초자료 활용

○ 조사항목 활용 체계



<자료분석>

- 사업량 : 5회
- 사업비 : 216,000천원

- 개량정도에 따라 향후 업데이트 적용이 가능한 참조집단 구축
-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 및 형질별 상관분석
- 모델 구축을 위한 체형자료의 오류 검증 및 기준설정
- 체형능력종합지수 및 유방종합지수, 지체지수 가중치 검토
- 체형우수 암소의 번식, 경제수명, 비유지속성 분석 및 농가환류
- 자료분석은 1~2개의 국내 대학에서 실시
- 자료분석 세부 계획

(단위 : 천원)

분석연도	분석항목	분석내용	소요예산
2019	대상농가 자료분석	농가단위 개량수준 분석 자료분석 시스템 구축	60,000
2020	선형형질	기초 및 상관분석	34,000
	번식, 경제수명, 비유지속성	검정자료 연관성 규명	34,000
2021	산차, 연령, 유량, 유전능력	분석 검증 및 이상형 모델 기준 설정	44,000
	유대, 생산	경제성분석 및 지수개발	44,000

### - 1차년도 분석 내용(2019)

- ① 이상모델 구축을 위한 분석 방법 및 절차 등 컨설팅(30,000천원)
  - \*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비용 및 컨설팅 비용
- ② 심사 및 실측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농가자료 분석(30,000천원)
  - \* 3,000농가×10천원= 30,000천원

### - 2차년도 분석 내용(2020)

- ① 1차년 수집된 자료의 기초통계분석 및 심사자료와 실측자료 상관분석



- ② 실측자료와 번식형질, 경제수명, 비유지속성간의 연관성 분석
- ③ 심사자 및 환경효과를 고려한 이상 체형 수준 분석

\* 4,000건×32형질(선형24, 체측8)×300원= 38,400천원  
 4,000건×8개실측형질×3개검정형질×300원=28,800천원  
 4,000건×8명×300원=9,600천원

### - 3차년도 분석 내용(2021)

- ① 분석자료 기반 수준, 그룹, 능력별 분석 및 검증
  - ② 형질별 상관 및 연관성 고려한 이상형 모델 수준 분석
  - ③ 유대가격 및 생산수준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체형지수 개발
- \* 20,000건×4형질(산차, 연령, 유량, 유전능력)×500원= 40,000천원  
 20,000건×2형질(유대, 생산형질)×1,000원= 40,000천원  
 체형지수개발 = 40,000천원

### <협의회구성 및 운영>

- 사업량 : 14회
- 사업비 : 74,000천원
- 가칭 심사표준심의협의회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 \* 예) 정부(2인), 개량총괄기관(2인), 한종협(2인), 대학(1인), 농협(2인), 농가(1인)
- 국내환경을 고려한 개량형질 기준변경 및 추가개량형질 발굴 협의
- 낙농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국내이상모델구축에 적용

### <자산취득>

- 사업량 : 체측기, 노트북 및 분석자료 저장장치
- 사업비 : 26,300천원

- 선형심사와 체측자료 수집을 위한 체측기와 태블릿pc구입

<젓소 이상모델 제작 보급>

- 사업량 : 150개
- 사업비 : 90,000천원
- 기준변경 형질 및 추가형질에 대한 가축외모심사기준 변경
- 젓소이상모델을 기반으로 한국형 젓소이상모형을 제작·배포

□ 사업범위

- 국내 젓소체형 개량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내 암소의 기초체형자료 수집 및 국가체형개량모델 분석에 한함
- 체형능력종합지수 및 추가지수 개발 등을 위한 과제는 본사업과 별개로 추진(예산확보 시)

□ 사업수행 최종목표

-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젓소체형개량 시스템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농식품부) 한국형 젓소이상모델 제시로 농가의 개량사업 방향 설정

(개량기관) 한국형젓소 통합자료(체측, 심사, 사육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전능력평가 시스템 개선으로 후대검정사업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젓소선형심사) 실측 모집단을 바탕으로한 각 심사형질별 표준값 조정 검토

(농가) 이상모델을 기반으로하는 농가의 개량사업 참여로 인한 목장환경에 최적화된 씨수소 이용 및 비용 절감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한도액 : 1,251백만원/3년

항 목		세부산출내역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자료 수집	*인건비	○4,000천원×2인×10개월= ○4,000천원×4인×12개월×2년=	80,000	192,000	192,000	464,000
	출장비	○250천원×36주×2인×1년= ○250천원×40주×4인×2년=	18,000	40,000	40,000	98,000
	조사사례비	○10천원×20,000두=	40,000	80,000	80,000	200,000
	차량대여비	○750천원×10개월×1대×1년= ○750천원×12개월×2대×2년=	7,500	18,000	18,000	43,500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200천원×36주×1대×1년= ○200천원×40주×2대×2년=	7,200	16,000	16,000	39,200
소 계			152,700	346,000	346,000	865,000
자료분석비		○5과제	60,000	68,000	88,000	216,000
협 의 회 운 영 비	회의비(수당 등)	○2,000천원×4회×3년=	8,000	8,000	8,000	24,000
	외국사례조사비	○5,000천원×6인×1회=	30,000			30,000
	결과보고회	○20,000천원×1회=			20,000	20,000
소 계			38,000	8,000	28,000	74,000
자 산 취 득 비	체측기	○2,000천원×1대×2년=	2,000	2,000		4,000
	입력용 태블릿PC	○1,000천원×1대×2년=	1,000	1,000		2,000
	자료저장프로그램개발 (저장장치포함)	○20,300천원×1회	20,300			
소 계			23,300	3,000		26,300
모형제작·배포		○600천원×150개=			90,000	90,000
합 계			274,000	425,000	552,000	1,251,000

\* (정)시행기관 전문인력(시행기관) · (부)일용직(축산대학관련 전공자)

□ 지원 범위 :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장비구입 및 인건비, 조사사례비와 자료분석비, 분석시스템 구축비, 컨설팅비, 협의회 운영비, 보고회 소요비용 및 이상모델 제작·보급비용

##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보조금 배정

##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업추진 및 보조금집행 현황 등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연2회 이상 심사표준 심의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료 수집상황을 설명하고 국내환경에 적합한 선형형질 및 등급형질의 배점기준 변경 및 새로운 개량형질을 발굴




### □ 사후관리


- 구축된 이상모델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기관 및 농가의 요구가 있을시 변경 가능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 결과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결과 및 정산보고
- 구축된 이상모델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국형젓소 이상모델구축사업 결과보고회를 실시하고 낙농가의 개량의욕 고취

## 젖소 부위별 체측방법

구분	형질	도구	내 용
기본 체측형질	키	체측기	<p>십자부고에서 지면까지의 수직길이</p> 
	뒷유방 너비	줄자	<p>외측인대가 허벅지에 붙어 있는 지점의 너비</p> 
	뒷유방 높이	줄자	<p>외음부 하단에서부터 뒷유방 유선 조직이 시작되는 부분</p> 

기본 체측형질	유두길이	줄자	<p>유두의 길이</p> 
	유방깊이	줄자	<p>비절단을 기준으로 유방의 가장 처진 부분과의 거리</p> 
	엉덩이 기울기	줄자	<p>요각에서 좌골까지의 경사도</p> 
	엉덩이 너비	줄자	<p>좌골내폭과 곤폭의 너비</p> 
	뒷꿈치깊이	줄자	<p>뒷발굽의 뒷꿈치 깊이</p> 

추가 체측형질	영덩이 길이	체측기	<p>요각에서 좌골까지의 거리</p> 
	흉위(체중)	산정용 줄자	<p>기갑과 흉저를 지나는 둘레(가슴 둘레)</p> 
	유두둘레	줄자	<p>유두의 둘레</p> 

<별첨2>

## 한국형젓소 이상모델 구축사업 자료조사서

목장명 : \_\_\_\_\_ 축주명 : \_\_\_\_\_ 심사일 : \_\_\_\_\_

등록번호 : \_\_\_\_\_ 개체명호 : \_\_\_\_\_

- |                 |                  |
|-----------------|------------------|
| 1. 엉덩이기울기 ( )cm | 2. 엉덩이너비 ( )cm   |
| 3. 유방깊이 ( )cm   | 4. 뒷유방높이 ( )cm   |
| 5. 뒷유방너비 ( )cm  | 6. 유두길이,둘레 ( )cm |
| 7. 뒷꿈치깊이 ( )cm  | 8. 키 ( )cm       |
| 9. 엉덩이길이 ( )cm  | 10. 흉위 ( )cm     |

11. 착유속도

- ① 느림                      ② 보통                      ③ 빠름                      ④ 모름

12. 착유방식

- ① 파이프라인              ② 텐덤                      ③ 헤링본                      ④ 로봇

13. 사료급여형태(배합사료와 조사료)

- ① 조농분리급여                      ② TMR급여

14. 농후사료급여횟수(TMR급여포함)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이상

15. 우사형태

- ① 톱밥(경사)                      ② 톱밥(수평)                      ③ 후리스톨

16. 노동력형태

- ① 가족                      ② 고용 1명                      ③ 고용 2명                      ④ 고용 3명이상

17. 분뇨처리방법

- ① 개별퇴비                      ② 위탁퇴비                      ③ 개별액비                      ④ 위탁액비

\* 조사 필요에 따라 조사서의 내용 변경이 가능